

입법평가 연구 09-16-□□

#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의 입법평가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Changing Insurance Regulation  
Law Related on the Financial Regulation Integration Law

연구자 : 고재종(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Koh, Jae-Jong

류승훈(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Ryu, Seung-Hun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Kang, Hyun-Cheol

2009. 9. 30.

## 국문 요약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 사태로부터 촉발된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찾아왔다. 이에 대하여 선진 각국들은 자본시장의 통합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외견상 국제적인 흐름에 편승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의 재정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의 범위에서 제외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기존 보험시장의 문제점과 더불어 향후 입법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에 대한 입법적 평가를 하여 향후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물론 동 보고서의 입법평가는 아직 보험규제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의 사전적 평가이므로, 구체적인 법조문을 제시하지는 않고 제정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먼저, 보험규제의 국제적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시장 중심의 보험제도를 구축하여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② 업무행위의 규제를 강화하여 공정거래를 확보함으로써 보험소비자보호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③ 보험회사의 건전 경영과 재무자원의 확보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본시장통합법과 보험업법 등의 개정에 있어서 이러한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객관성 여부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비록 외관상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하고 있

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경우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시장통합법에 보험업을 편입시킬 경우에는 보험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키워드 : 보험규제, 입법평가, 금융위기, 보험시장, 자본시장통합법, 보험업법, 금융규제기관, 금융회사의 경영화, 재무건전성, 금융서비스개혁법, 방카슈랑스

## Abstract

Without exception, it is led to the Korea that liquidity risk of international finance market is caused by the sub-prime mortgage lack of the U.S. For solving this problem,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pointed out the problems related on the integration of the capital market and re-examined thoroughly to the such problems.

In case of our country, I think that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capital market's integration is not followed the international flow. Also, the insurance department as well as the bank department excludes from the regulation realm of the integration law about the capital market.

Therefore, I will inquire into the problem of the insurance market and the reform methods when the law will be revised by the legislative evaluation. But the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this report is the preliminary evaluation method before the revision of the several law about the insurance regulation. As the result, I will present the only abstract ideas, not the concrete ideas.

I think that the international trends related the financial regulation consist of the three elements. The first element is the establishment of the insurance system focused on the market and the formation of the competition market of the insurance department. The second is the insurance consumer's protection through the fair transac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regulation and the self-responsibility reinforcement of the insurance consumer. The third is the reinforcement of the sound management and the financial resource in the insurance industry.

Therefore, when we will revise the capital market integration law and insurance business law in our country, we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on the intent of the these international flow. Of course, in case of being included the insurance section into the capital market integration law, we are careful consideration into the specific character of the insurance department.

※ Key Words : Insurance regulation, legislative evaluation, Integration of the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risk, insurance market,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insurance business law, financial regulation organ, Financial Stability, bancassurance etc.

# 입법평가 요약서

# 입법평가 요약서

##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의 입법평가>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보험규제 관련법의 입법 평가       |
| 1. 입법평가의 목적                    | 1. 금융개혁 통합의 방향성에 대한 입법 평가 |
| 2. 입법평가의 방법                    | 2. 금융회사간 겸업 허용 여부에 대한 평가  |
| II. 입법평가기준으로서 보험시장의 환경 분석      | 3. 보험업의 고객 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   |
| III. 입법평가기준으로서 보험 규제 관련법 제도 분석 | V. 맺는 말                   |
| 1. 국내의 보험규제 관련법                |                           |
| 2. 해외 보험규제 관련법                 |                           |

### I. 서 론

#### 1. 입법평가의 목적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 사태로부터 촉발된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는 세계 각국의 공조 하에 추진된 시장안정대책 이후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신홍국의 외환위기와 세계 각국의 금융산업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금융위기의 예외는 아님. 2009년 7월 1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IMF의 “최근 선진국이 신홍국에 미치는 금융스트레스” 보고서에서 18개의 신홍경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선진국 금융스트레스에 따른 동행성 지수가

0.706으로 신흥경제국 평균 0.4~0.5보다 훨씬 높았다고 평가하였음.

- 이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자본시장의 통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여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뿐만 아니라 보험업 등이 자본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다만, 향후 보험 부문은 은행 부문과 더불어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본 보고서는 기존 보험시장의 문제점과 더불어 향후 입법 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에 보험규제 관련법을 포함시킨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하고 그 결과 향후 보험규제의 관련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음.

## 2. 입법평가의 방법

- 입법평가의 방법으로는 통상 법경제학적 분석 내지 비용편익분석의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규범적 분석 또한 매우 중요함. 또한 시기적인 구분 방법으로는 사전적, 사후적 및 병행적 입법평가의 방식이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규범적 분석 및 사전적 평가 방식에 의하여 입법평가를 하고자 함.
- 다만, 입법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관 전문가와 보험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음.
- 그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정책적 분석 단계로 입법평가를 하기 전 단계에서 국내외의 금융시장환경, 즉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으로부터 초래된 금융위기의 문제점 및 각국의 동향 그리고 그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에의 영향, 특히 보험시장의 동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입법평가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참고하고자 하였음.
- 둘째, 규율범위의 분석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보험을 포함한 금융관련법의 최근 변화하는 모습을 고찰하고, 그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에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음.
- 셋째, 규율대안의 개발과 관련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각국의 금융통합법 내지 보험관련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였음.
- 넷째, 만약 이러한 대안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입법평가로서 위에서 설정한 목표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의 판단과 더불어 보험관련 다양한 전문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II. 입법평가기준으로서 보험시장의 환경 분석

-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미국과 유럽 정부는 유동성 공급확대와 예금보호조치, 금리인하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위기를 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즉, 미국은 FRB는 은행권에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하기로 하였으며,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등 유럽 각국 정보도 금융기관에 잇달아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처에 들어갔음.

-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님. 비록 우리나라는 과거 외환위기, 카드 위기와 비교하면 지금의 금융위기는 그 지표가 조금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외채구조의 악화, 자금시장의 구조적 문제, 대외 의존도의 심화, 등 구조적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보험시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님. 즉,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보험회사의 지급능력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물론 2008년 12월의 지급여력은 개선되었는데, 이는 2008년 말 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경우 재투자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가 예상되어 장기적으로는 자산운용과 지급여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급여력비율의 하락 지속은 보험회사의 자본력을 뒷받침하는 수익성 개선이 단기간에 달성되기 힘들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보험시장은 자본시장 변동 가능성이 상존하여 투자영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보험영업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도 크지 않는 상황이므로 자본 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 및 보험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향후 개정할 보험규제 관련법을 사전 평가함으로써 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함.

### Ⅲ. 입법평가기준으로서 보험 규제 관련법 제도 분석

#### 1. 국내의 보험규제 관련법

- 국내의 보험규제 관련법으로는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과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개정중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봄. 나아가,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인한 보험업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음.

(1) 자본시장통합법

- 자본시장통합법, 즉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은 영국의 통합금융법(Financial Service Act)과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 FSRA)을 벤치마킹하여 제정된 것임. 동법의 제정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 첫째,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겸업화와 대형화, 금융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임.
  - 둘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 2. (1) 2)를 참조.
- 자본시장통합법이 보험업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판매 제도의 선진화 도모, 겸영업무의 확대, 소비자 보호 장치의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음.
  - 또한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보험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리스크 감독 정책이 최저 자기자본 규제, 감독기능 강화, 시장규율 강화 등을 기반으로 금융권간·국가간 규제의 수렴, 리스크관리 및 규제 절차의 일관성의 확립 등의 흐름 속에서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양한 겸영업무의 허용, 자산운용 대상의 확대, 보험지주회사 허용 등으로 겸업화와 종합금융서비스 제공될 것으로 전망됨.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보험 판매질서의 선진화를 위해 판매채널의 다양화도 가속화될 것

으로 보이며, 자기자본규제의 글로벌화와 리스크의 통합화 측면에서 Solvency II를 기반으로 하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정책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더불어 민원, 분쟁 등 소비자 관련 금융시장 질서의 선진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장치 관련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여겨짐.

## (2) 보험업법

- 현재 입법예고 중의 보험업법은 07년 8월 재정부에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보험업법 개정자문 TF에서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보험 선진국과 경쟁국의 보험제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동년 12월 개편 방안을 마련한 것임.
- 보험영업 측면에서는 보험사의 취급 상품을 확대하고 상품개발 절차를 자율화함으로써 금융 경영화 진전에 따른 보험사의 상품개발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험판매 플라자 신설 등 보험사의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고, 투자 영업 측면에서는 보험자사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등 보험사의 자산 운용 자율성이 확대됨. 이와 더불어 보험사에 경영 업무로 투자자문·일임업 및 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하여 보험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반면 기존의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생·손보의 경영, 지급결제허용이 무산 혹은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연기됨으로써 단기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는 편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즉, 생·손보 간 업무 영역의 철폐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손해보험이 고유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철회되었고,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한 규제는 완화될 예정이나 금산분

리와의 관련성 등으로 '08년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수립하였으며,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는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된 이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하였음.

-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장 2. (2) 2)를 참조.

## 2. 해외 보험규제 관련법

### (1) 미 국

- 2009년 6월 17일 미국 정부는 재무부 명의의 “새로운 기반 : 금융감독 및 규제의 재확립”(A New Foundation: 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이라는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하였음.
- 그런데 동 금융 개혁에 대하여 동 개혁안에 대하여 미국 대통령은 금융위기 하에서 만들어진 최대 규모의 금융규제체제의 개편 방안이라고 언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정상들도 동조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미국의 금융 개혁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장 3 (1) 2)를 참조.

### (2) 유럽연합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있어서 금융시장의 통합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금융자유화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반복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일국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에 기초한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및 금융감독시스템(financial supervision sys-

tem)을 구축하는 것은 금융정책을 펴는 당국자들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EU의 금융시장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에 의한 단일통화정책과 유로화(euro) 통으로 인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 금융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 3 (2) 2)를 참조.
- (3) 이 외에도 금융 개혁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일본의 금융 개혁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 IV. 보험규제 관련법의 입법 평가

##### 1. 금융개혁 통합의 방향성에 대한 입법 평가

-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통합법은 보험부문과 은행부문을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때 대부분의 금융 선진국은 통합하고 있음. 나아가, 금융규제기관은 단일화 된 금융규제기관을 두는 경우와 이원적 금융규제기관을 두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음.
- 보험업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는 설문조사의 경우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업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보임. 반면, 보험학회 회원의 입장에서는 통합에 긍정적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험업도 자본시장통합법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금융규제기관도 단일화된 금융규제기관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됨.

## 2. 금융회사간 겸업 허용 여부에 대한 평가

- 현행 보험업법의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업무 영역의 확대로 겸영업무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방카슈랑스 허용,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 및 카드 겸업, 유가증권의 인수 등 일부 증권업의 허용(보험은 제한), 변액보험의 투신영역 편입 등 업무영역의 조정은 금융산업에 대한 비중이나 영향력이 큰 은행이나 증권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보험권은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아왔다는 의식이 팽배함.
- 국내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기관의 겸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보험업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 겸업 허용에 대하여 부정적이나, 보험학회의 회원의 경우에는 겸업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경향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금융회사 간의 겸업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3. 보험업의 고객 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

- 자본시장통합법은 고객 보호의 수준을 대폭 강화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의 개정에서도 고객 보호의 수준을 이와 유사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그 내용으로는 신의성실의 의무(제37조), 이해상충의 관리(제44조), 정보교류의 차단(제45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적합성의 원칙(제46조), 설명의무(제47조),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 투자권유준칙의 제정(제50조),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지행위(제52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제54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55조), 약관(제56조), 투자

광고(제57조), 수수료(제58조) 등을 들 수 있음.

- 국내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중의 보험업법 등도 보험업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선진국들의 입장에서는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비교적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보험학회 회원의 경우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개정중에 있는 보험업법의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봄.

## V. 맺는 말

-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정 내용 및 향후 개정 중의 보험업법의 개정 방향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봄.
- 또한 보험업도 자본시장통합법의 범위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고 봄. 다만, 통합할 때에는 보험업의 특징을 최대한 고려하여 신중하게 편입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 또한 단계적으로 편입시킴이 타당하다고 봄.
- 다만, 본 보고서상의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에 대한 이러한 입법평가는 한계가 있음, 즉, 동 주제에 대한 분석은 단지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을 계량화하여 비용-편익 분석의 틀 속에 포함시키는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법 제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인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만을 하였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법평가는 규율 대안에 대한 결과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그에 따른 시행착오의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예상되는 비용의 부담 또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색지삽입

# 목 차

|                                  |    |
|----------------------------------|----|
| 국문요약 .....                       | 3  |
| Abstract .....                   | 5  |
| <br>                             |    |
| 제 1 장 서 론 .....                  | 25 |
| 1. 입법평가의 목적 .....                | 25 |
| 2. 입법평가의 방법 .....                | 27 |
| (1) 입법평가의 방법 .....               | 27 |
| (2) 사전적 입법평가의 방법 .....           | 27 |
| 3. 입법평가 기준 .....                 | 28 |
| (1) 금융 및 보험규제의 현황 .....          | 28 |
| (2) 향후 보험규제의 방향 .....            | 29 |
| (3) 입법평가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 .....       | 30 |
| (4) 입법평가의 객관성 확보 .....           | 31 |
| <br>                             |    |
| 제 2 장 입법평가기준으로 보험시장의 환경 분석 ..... | 35 |
| 1. 세계 경제의 금융위기와 전망 .....         | 35 |
|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 .....           | 35 |
| (2) 글로벌 금융시장의 문제점 및 전망 .....     | 43 |
| 2.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와 전망 .....          | 44 |
| (1) 금융위기 여파와 구조적 심각성 .....       | 44 |
| (2) 실물경제의 동향과 전망 .....           | 46 |
| 3. 국내의 보험시장의 동향과 전망 .....        | 48 |

|                                     |     |
|-------------------------------------|-----|
| (1) 주요 지표 .....                     | 48  |
| (2) 생명보험 .....                      | 50  |
| (3) 손해보험 .....                      | 53  |
| 4. 소 결 .....                        | 60  |
| <br>                                |     |
| 제 3 장 입법평가기준으로 보험 규제 관련법 제도 분석 .... | 63  |
| 1. 서 설 .....                        | 63  |
| 2. 국내의 보험규제 관련법 .....               | 63  |
| (1) 자본시장통합법 .....                   | 63  |
| (2) 보험업법의 개정안 .....                 | 79  |
| 3. 해외 보험규제 관련법 .....                | 86  |
| (1) 미 국 .....                       | 86  |
| (2) 유럽연합 .....                      | 89  |
| (3) 영 국 .....                       | 102 |
| (4) 프랑스의 금융안전법 .....                | 105 |
| (5) 일 본 .....                       | 120 |
| 4. 소 결 .....                        | 130 |
| <br>                                |     |
| 제 4 장 보험규제 관련법의 입법평가 .....          | 131 |
| 1. 서 설 .....                        | 131 |
| 2. 금융규제 통합의 방향성 평가 .....            | 131 |
| (1) 평가의 배경 .....                    | 131 |
| (2) 금융규제기관에 대한 국내 및 각국의 비교 평가 ..... | 132 |
| (3) 입법평가의 요소 .....                  | 136 |
| (4)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성 확보 .....           | 136 |
| (5) 평가 결과 .....                     | 141 |

|                                |     |
|--------------------------------|-----|
| 3. 금융회사간 겸영 허용 여부에 대한 평가 ..... | 141 |
| (1) 평가의 배경 .....               | 141 |
| (2) 겸영화의 이점 .....              | 142 |
| (3) 우리나라의 경우 겸영 현황 .....       | 144 |
| (4) 겸업화 수준의 각국과의 비교 .....      | 146 |
| (5) 각국의 겸업화 현황 .....           | 148 |
| (6)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성 확보 .....      | 151 |
| (7) 평가 결과 .....                | 154 |
| 4. 보험업의 고객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 .....   | 155 |
| (1) 평가의 배경 .....               | 155 |
| (2) 국내 및 각국의 입법 동향 평가 .....    | 155 |
| (3)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성 확보 .....      | 161 |
| (4) 평가 결과 .....                | 167 |
| 제 5 장 입법평가의 대안과 한계 .....       | 169 |
| <참 고 문 헌> .....                | 173 |

**【부 록】**

|  |     |
|--|-----|
|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도의 입법평가<br><보고서> .....   | 179 |
|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도의 입법평가<br><교차분석표> ..... | 233 |

# 제 1 장 서 론

## 1. 입법평가의 목적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 사태로부터 촉발된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는 세계 각국의 공조 하에 추진된 시장안정대책 이후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신흥국 외환위기와 미국 유럽 이외 지역의 금융산업 위기 등으로 확산되고 동시에 기업부실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헝가리, 터키 등으로 외환위기가 확산되어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IMF 구제금융이 결정되었다. 또한 일본도 야마토 생명보험회사가 도산하고, 쿠웨이트와 같은 산유국도 금융파생상품의 손실로 은행의 위기가 발생하였다.<sup>1)</sup>

우리나라도 이러한 금융위기의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고 금융시장이 많이 개방화되어 있어서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들 중 하나에 해당된다. 2009년 7월 1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IMF의 “최근 선진국이 신흥국에 미치는 금융스트레스” 보고서에서 18개의 신흥경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선진국 금융스트레스에 따른 동행성 지수가 0.706으로 신흥경제국 평균 0.4~0.5보다 훨씬 높았다고 한다.<sup>2)</sup> 이는 선진국의 금융위기의 발생이 한국 경제에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sup>3)</sup>

---

1) 전기석 “2009년 금융환경 전망” 『우정정보 75』(우정경영연구소, 2008년 겨울), 51~52쪽.

2) 동행성 지수는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영향을 받는 정도를 0~1까지 측정하는 것으로 ‘1’이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며 ‘0’이면 영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 보고서의 평가지표로는 선진국 금융스트레스, 리보금리, 전세계 경제성장률, 무역거래량, 금융 및 무역개방도, 무역수지, 재정수지,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다.

3) <http://news.donga.com/fbin/output?rss=1&n=200907010203>, 2009. 7. 10.

이러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는 그동안 세계경제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자본시장의 통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세계의 각국은 지금까지의 자본시장의 통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금융위기의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자본시장의 통합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 각국의 추세와는 달리 금융위기가 한창 진행 중인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sup>4)</sup> 뿐만 아니라 동법을 제정한 취지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금회사, 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해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은행업과 보험업 부문을 제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은행업이나 보험업 부문이 이들 부문과 전혀 별개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미국 AIG 보험회사가 미 정부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사태,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메릴린츠의뱅크 어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BoA)에 매각되는 등과 같이 보험이나 은행 부문도 2008년 말의 금융위기 사태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의 재정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서 제외되어 있음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기존 보험시장의 문제점과 더불어 향후 입법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에 대한 입법적 평가를 통하여 향후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

4)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 2. 입법평가의 방법

### (1) 입법평가의 방법

입법평가의 개념은 각국마다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질적으로 우수한 입법을 양산하기 위함이다. 물론 그 방법으로는 통상 법경제학적 분석 내지 비용편익분석의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규범적 분석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입법평가의 방법으로는 사전적, 사후적 및 병행적 입법평가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 세 가지의 방식을 모두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입법평가마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방법 모두를 이용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더불어 위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즉, 하나의 방법을 시행하더라도 입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그 만큼 줄임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입법평가의 대상이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이고, 이는 현재 입법 진행 중이거나 향후 입법하여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하고자 한다.

### (2) 사전적 입법평가의 방법

사전적 입법평가는 법률 초안을 작성하기 이전 단계에서 장래를 향하여 최적의 규율대안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이러한 사전적 입법평가의 통상적인 진행 방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규율범위의 분석, 정치적 목표의 명확화, 규율대

안의 개발, 가상 상황의 설정 및 전문가와 수범자가 참가하여 규율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와 방법의 선택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단계, 둘째, 선택된 여러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규율 대안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는 단계로 이 경우 여러 개의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평가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향상시키고 규율대안의 실질적인 영향을 다양하게 반영시킬 수 있으며, 셋째, 절차의 문서화, 체계적 평가 및 개개 절차와 방법을 이용한 효과 평가 그리고 최적의 규율 대안에 대한 추천이 행해지는 평가단계로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본 주제와 관련한 사전적 입법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입법평가를 하고자 한다.

### 3. 입법평가 기준

본 입법평가의 대상이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도이고 시기적으로 아직 개정 전이므로 사전적 평가와 규범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또한 그 방법은 정성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도 병행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이러한 단순한 기준보다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 (1) 금융 및 보험규제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 부문이 통합된 법제도 하에서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보험산업은 은행 부문과 더불어 금융 산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업의 경우 다른 금융업의 통합과는 달리 보험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통합의 어려움이 있었고, 금융 겸



업화의 진전 단계를 고려한 현실적인 통합 방안의 마련이 요청되어 보험업을 제외하였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보험업 단독에서도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험연구소를 중심으로 학계, 업계, 연구소가 망라된 금융보험정책포럼을 구성하여 2004년 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취지에서 보험업법의 개정도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 중의 보험업법은 2008년 11월 입법예고 되었으며, 금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의 상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 (2) 향후 보험규제의 방향

향후 보험산업은 전통적인 보험환경에 비하여 향후 인구의 고령화와 노후보장과 관련한 민간보험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와 보험 전자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경제의 개방화와 보험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의 심화 및 금융의 겸업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래의 금융시장 또한 은행 중심의 시장에서 자본 시장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의 변화가 예측되며, 개인과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의 역할 증대, 겸업화에 따른 대형 복합금융그룹 중심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며, 개방화에 대응한 금융의 국제화가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험규제는 시장 중심의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 수의 적정화를 통한 유효한 경쟁 상태를 확보하여야 하며, 정보의 비대칭성의 완화, 거래비용의 최소화, 자기책임의 원칙 확립, 퇴출의 원활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행위 규제의 강화를 통한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여야 하며, 정보비대칭성의 완화를 전제로

보험소비자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의 건전 경영과 충분한 재무 자원의 확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재무건전성의 규제를 강화하고 사전적 리스크 관리 중심의 규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업무영역의 규제 완화, 자산운용의 규제를 완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보험규제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예로 ① 실제로 시장이 실패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 때, ② 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경제가 심각하게 비효율적일 경우, ③ 정부의 개입으로 이 비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을 때 등에 한정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 (3) 입법평가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

먼저, 정책적 분석 단계로 입법평가를 하기 전 단계에서 국내외의 금융시장환경, 즉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으로부터 초래된 금융위기의 문제점 및 각국의 동향 그리고 그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에의 영향, 특히 보험시장의 동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입법평가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참고하고자 하였다.

둘째, 규율범위의 분석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보험을 포함한 금융관련법의 최근 변화하는 모습을 고찰하고, 그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에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셋째, 규율대안의 개발과 관련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각국의 금융통합법 내지 보험관련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였다.

넷째, 만약 이러한 대안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입법평가로서 위에서 설정한 목표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의 판단과 더불어 보험관련 다양한 전문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시행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4) 입법평가의 객관성 확보

금융규제 통합으로 인한 보험규제 법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유관 전문가와 보험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입법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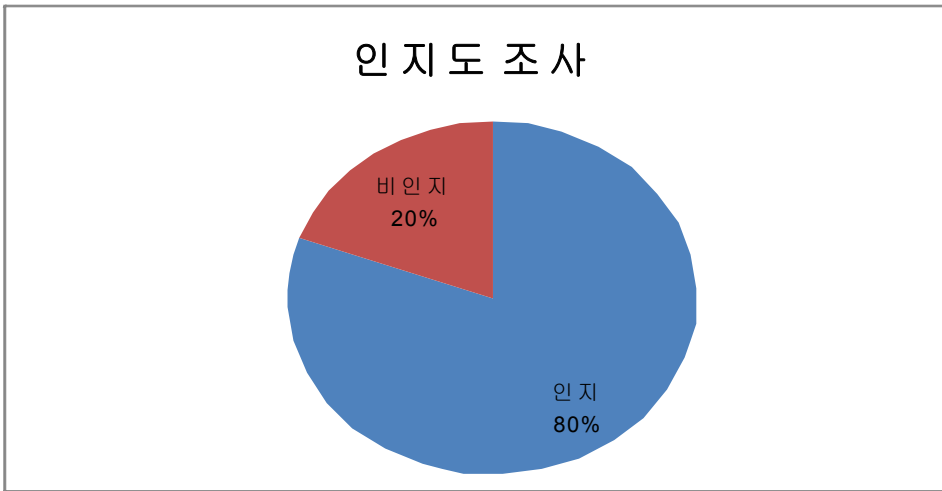
설문조사는 2009년 7월 14일부터 24일(약 11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 디시알폴에서 온라인 및 팩스를 통하여 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항 목    | 세 부 내 용                          |
|--------|----------------------------------|
| 조사대상   | 보험학회원 및 보험업 종사자                  |
| 표본수    | 200명<br>(보험학회원 50명, 보험업 종사자150명) |
| 표본추출방법 | 리스트에 기반한 무작위추출                   |
| 표본오차   | 해당사항 없음(유의표집)                    |
| 조사방법   | 온라인, 팩스 및 대면면접을 이용한 조사           |
| 조사기간   | 2009년 7월 14~24일(11일간)            |
| 조사수행   | (주)디시알폴                          |

나아가,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 금융시장 통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인지도, 인지경로 및 관심도를 조사하여 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최근 실시한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보았

제1장 서론

다. 그 결과 설문조사 참가자 중에 약 80.5%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시장 통합과 관련한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잘 알고 있다’가 8.0%,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약 72.5%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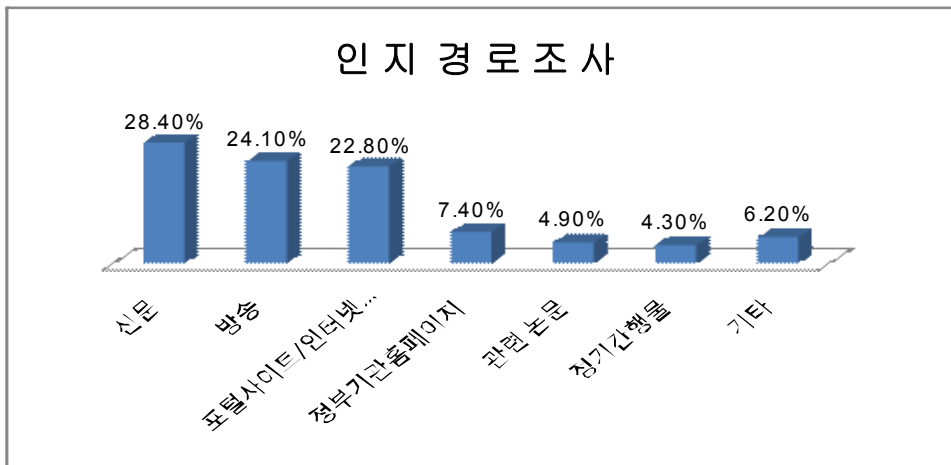
그 구성원으로 보험학회 회원 및 보험업 종사자 모두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성원별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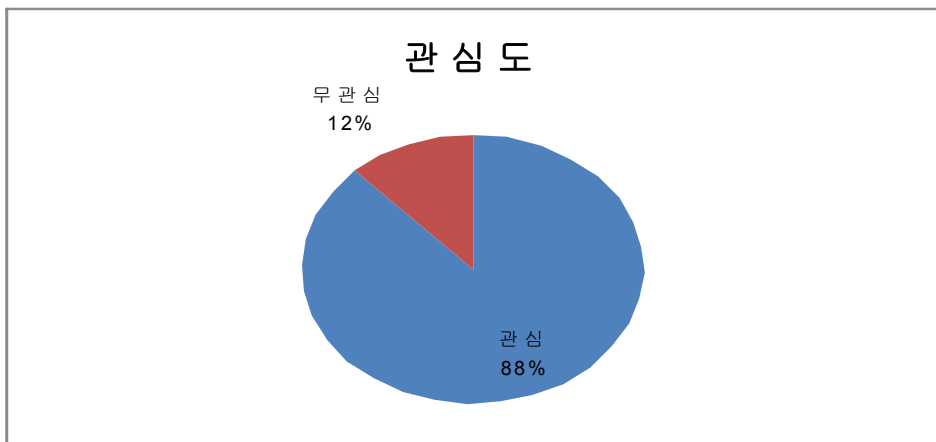
| 회 원 별  | 전체인지도 비율 | 세부적 인지도     | 비 율   |
|--------|----------|-------------|-------|
| 보험학회원  | 86%      | 매우 잘 알고 있다  | 12%   |
|        |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74%   |
| 보험업종사자 | 78.7%    | 매우 잘 알고 있다  | 6.7%  |
|        |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72.0% |

### 3. 입법평가 기준

이러한 금융시장의 통합 및 자본시장 통합법을 알게 된 경로 또한 조사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신문 28.4%, 방송 24.1%, 포털사이트/인터넷뉴스 22.8%, 정부기관 홈페이지 7.4%, 관련 논문 4.9%, 정기간행물 4.3%, 기타 6.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시장 통합에 대한 관심도도 조사하여 보았다. 전체적으로는 조사 대상 중 약 88.0%가 관심을 보였다.



제1장 서론

구체적으로는 보험학회 회원의 경우 매우 관심이 있다가 44.0%,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가 50.0%로 약 94%에 해당하는 거의 대부분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는 매우 관심이 있다가 22.0%,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가 64.0%로 전체 약 86.0%에 해당하는 자가 관심을 갖고 있었다.

| 회 원 별  | 전체관심도비율 | 세부적 관심도     | 비 율 |
|--------|---------|-------------|-----|
| 보험학회회원 | 94%     | 매우 잘 알고 있다  | 44% |
|        |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50% |
| 보험업종사자 | 86%     | 매우 잘 알고 있다  | 22% |
|        |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64% |

아마 이러한 결과는 보험학회 회원 및 보험업 종사자 등 보험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높은 관심도를 보인 것으로 보이며, 보험학회 회원 약 94%, 보험업 종사자 약 86%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은 약 88.0%로 나타난 것은 학회 회원수(150명)와 보험업 종사자(51명) 수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지도, 인지경로 및 관심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것은 보험관련 법제도의 입법평가시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함이며, 동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자들은 대부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자들이므로 그들의 판단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고 그들의 평가 결과를 신뢰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 제 2 장 입법평가기준으로 보험시장의 환경 분석

### 1. 세계 경제의 금융위기와 전망

####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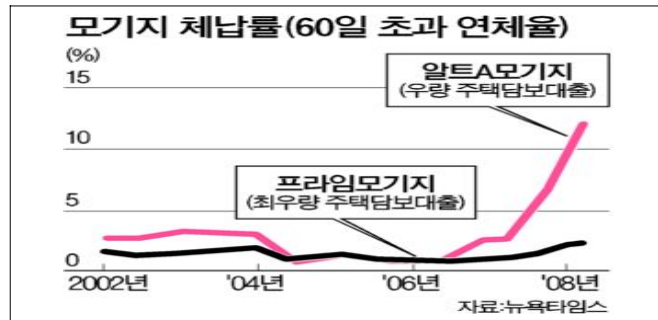
##### 1) 미국 금융위기의 발생원인 및 경과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sub-prime mortgage loan)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이란 통상 미국에서는 신용등급이 가장 좋은 사람들에게 제공한 주택담보대출을 우량주택담보대출인 ‘프라임 모기지 론(prime mortgage loan)<sup>5)</sup>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 ‘아래’라는 의미의 ‘서브(Sub)’가 결합한 데에서 출발한다. 즉, 미국에서 신용이 좋은 자뿐만 아니라 신용력이 낮은 자들에게까지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02~06년까지 미국 전체 대출액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는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sup>6)</sup> 각국의 금융위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 이를 알트A라고도 한다. 알트는 얼터너티브(Alternative)의 약자로, 서브프라임(비우량) 이상 프라임(우량) 미만의 신용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다. 상환능력을 문서로 증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했다. 금융사들은 신용이 좋은 만큼 소득증명 없이도 대출을 해줬다[한국경제 09. 7. 22].

6) <http://www.investopedia.com/terms/s/subprimeloan.asp>, 2007. 7. 8.



(그림 1) 모기지 체납률

먼저, 미국의 금융위기를 살펴보기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과 관련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자. 미국의 주택 보유자가 은행에 주택 구입자금 1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미국 은행은 돈을 한 번 더 굴리기 위해 대출금 상환을 기다리지 않고 대출자산을 토대로 1억원 상당의 주택저당채권(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 RMBS)을 발행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한다. 채권투자기관은 주택저당채권인 RMBS를 토대로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CDO)을 발행해 다시 시장에 내다 팔고, 이를 매입한 투자은행·펀드들은 2차 증권인 CDO를 발행해 다수 투자자들에게 또 분할 매각한다. 채권 발행인들은 2-3차 유동화(流動化) 과정에서 투기 등급이 낮은 채권을 투자적격 등급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기초자산에 우량 회사채 등을 적당히 섞어 넣는다. 이런 과정을 2-3단계 거치다 보면 원래 기초자산(서브프라임모기지)이 어디에 얼마나 섞여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sup>7)</sup>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주택 론(loan)의 취급은 상업은행이나 저축금융기관, 모기지 회사 등이 하게 된다. 그런데 동 회사

7) 김납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그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한국소비자원, 2008. 3. 20), 5쪽.



들은 일반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주택담보대출금의 상환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택 대출을 한 이후 일차 대출자(originator, 자산양도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토대로 주택 론 채권을 발생하여 증권화 상품을 조성한 다음 투자자에게 판매하게 된다.<sup>8)</sup>

그런데 주택 론을 담보로 하는 주택저당채권(RMBS) 가운데, 미국 양대 모기지업체의 하나인 패니메이(Fannie Mae)<sup>9)</sup> 등이 발행하는 채권은 투자자들의 구입이 매우 높은 편이다. 왜냐하면 동회사는 프레디 맥(Freddie Mac)과 함께 정부후원기관(GSE)으로 이들이 발행한 채권은 미국 정부의 본드와 같이 안정된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대형투자기관 등에 의하여 조성된 서브 프라임 론을 보증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RMBS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원리금 지급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트란시(tranches)<sup>10)</sup>로 나누게 된다. 이중 가장 순위가 높은 것을 시니어(senior)채, 다음이 메자닌(Mezzanine)채,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을 에퀴티(equity)채라고 한다. 시니어(Senior)채는 통상 신용등급회사에 의해 트리플A의 등급이 부여되어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판매되었고,<sup>11)</sup> 메자닌(Mezzanine)채는 소비자 금융이나 상업용 부동산 론 등의 채권을 더한 이차적 증권화 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이 조성되어 판매되었다. 그 결과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을 포함한 증권화 상품의 시장규모가 매우 확대되었다.

8) 통상적으로 자산 양도자(originator)에게는 은행으로부터 담보 용자를 받기 어려운 자신의 자산을 분리, 양도(담보제공)하여 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 주고, 투자자에게는 자산 양도자의 전체적인 신용도와 분리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SPV)의 확정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주게 되어 보다 안정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자산유통화라고 하며 최근의 선진 금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9)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309060.html>, 2009. 7. 5.

10) 트란시(tranches)란, 우선 하위구조를 가지는 증권화를 실시하는 경우에, 리스크에 응해 나눌 수 있었던 계층을 말한다. 프랑스어로 1조각의 의미.

11) 원리금 지불의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에퀴티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구입 요구가 낮기 때문에 투자은행 등이 포함되는지, 적극적으로 리스트레이크하는 헤지펀드 등에 판매되었다.

<CDO채의 발행 구조12>



통상 투자은행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은 SIV(Structured Investment Vehicle, 자산 운용을 위하여 설립한 일종의 특별목적회사)<sup>13)</sup>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증권화 상품의 운용을 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자금조달은 증권화 상품을 담보로 하는 코머셜 페이퍼(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이하 「ABCP」라고 한다)<sup>14)</sup>를 발행을 하거나, 은행이 직접 유동성을 보완<sup>15)</sup>하기도 한다. 또한 RMBS나 CDO의 디폴트 헷지(default hedge)

12) 신용상·구본성·하준경·이규복·송재은·이윤석,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분석과 전망』(한국금융연구원, 2007), 81쪽.

13) 미국 상업은행, 보험회사,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이 장기고수익자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한 투자전문 자회사를 말한다. 동 회사는 모회사인 은행으로부터 우량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근거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하여 단기자금을 조달한다. 이 자금으로 모기지증권 등 고수익 장기채권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SIV는 자금조달은 단기인 반면 투자는 장기로 이루어져 ABCP 발행이 안될 경우 유동성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나아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SIV의 경우 헤지펀드와 마찬가지로 감독과 규제가 거의 미치지 않고 금융기관의 BIS비율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결국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가네코 마사루와 앤드류 드윅은 “세계의 금융위기”라는 소책자에서 ‘그림자금융시스템’이라고 하였다.

14) ABCP란 CP(commercial paper)어음의 일종이다. 그런데 통상 기업어음은 물건은 매개되지 않고 기업의 신용만으로 돈을 빌려주는 어음으로 기간은 보통 60일 정도의 단기어음이라고 한다면, ABCP는 비록 CP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신용에 따른 어음 발행이 아니라 자산을 담보로 한 기업어음이라고 할 수 있다. ABCP가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은 설립 당시 모회사가 출자한 자본금으로 모회사가 출자한 매출채권, 오토론, 회사채 등이며, 이를 통하여 모집한 자금으로는 MBS, CDO 등 고수익 장기상품을 매입하게 된다.

15) 유동성 보완이란, SIV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빠졌을 경우에 은행이 자금을 공

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파산스왑(Credit Default Swap : CDS)<sup>16)</sup>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CDS거래는 거래상대방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과 관련하여 06년 후반 무렵부터 급격히 상승한 연체율이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연체율의 상승 이 외에도 시중 금리의 상승이나 주택 가격의 하락 등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07년 이후 연체율의 상승은 신용등급회사로 하여금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을 포함한 증권화 상품의 등급을 큰 폭으로 저하시키고, 증권화 상품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07년 여름 무렵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엄청난 금액의 손실 계상을 하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증권화 상품의 가격하락은 금융기관의 손실 계상에 직접적인 이유로 시가회계의 보급<sup>17)</sup>을 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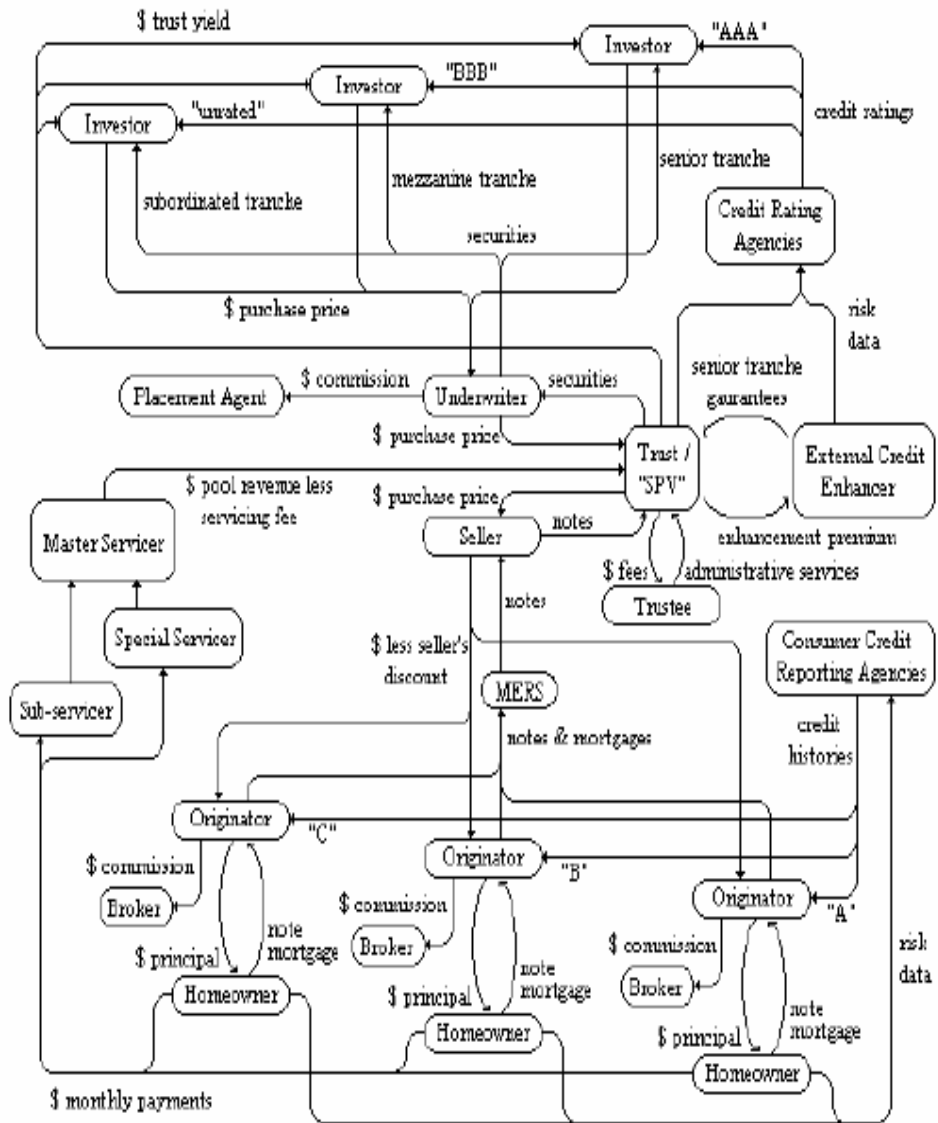
---

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일정한 용자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16) 신용파산스왑(Credit Default Swap, CDS)이란 신용파생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채권이나 대출금 등 기초자산의 신용위험(credit risk)을 전가하고자 하는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가 일정한 수수료(premium)를 지급하는 대가로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credit event) 발생시 신용위험을 떠안은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로부터 손실액 또는 일정금액을 보전 받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채권을 보유한 주체가 동 채권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일종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신용파산스왑은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커버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 CDS 약정시 보장매입자가 신용위험을 이전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상승한다. 즉,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 발행주체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각국의 정부가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CDS 프리미엄을 해당 국가의 신용등급이 반영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269095>, 2009. 7. 5].

17) 미국에서는, 06년에 FASB(2(2) b참조)가 공정 가치의 측정을 정한 SFAS157호가 도입되어, 대형 금융기관은 07년 1월부터 적용되었다. IASB(2(2) b참조)도, 시가회계의 적용을 강화하는 IFRS7호를 07년 1월부터 도입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흐름도18>



18) Peterson, Christopher L., "Predatory Structured Finance". Cardozo Law Review, Vol. 28, No. 5, 2007, p.2208 Figure A.

그런데 증권화 상품의 가격하락이 진행되면, SIV의 자금조달 수단인 ABCP의 발행이 더욱 어려워져, 유동성 보완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은행은 이를 대신할 금전 용자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SIV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스폰서였던 금융기관이 SIV가 운용하고 있는 증권화 상품을 인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금융기관의 손실을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증권화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던 대형 투자은행이나 증권화 상품을 다량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이 미국이나 유럽에 많았는데, 이러한 금융기관의 손실이 표면화되면서 레포 시장<sup>19)</sup> 등의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의 지장을 초래하고,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되는 사례를 보이며, CDS 거래에 있어서도 거래 상대방 위험인 카운터파티(counterparty) 리스크의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sup>20)</sup>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FRB나 유럽중앙은행인 ECB는 연쇄적 파산인 시스템릭 리스크(systemic risk)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자금 공급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금융기관은 손실계상에 따라서 자기자본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대출도 신중하게 함으로써 신용수축의 움직임이 확장되게 된다. 이는 결국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물경제가 악화되면, 소비자 론이나 상업용 부동산 론 등도 연체가 확산되어, CDO 등의 증권화 상품의 자산 악화가 더욱 진행된다. 이처럼 미국의 서브프라임 론 문제와 관련한 영향은,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실물 경제 전체에 확산되어 세

19) 레포거래(Sale & Repurchase Agreement : RP)란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기간 자금을 조달하거나 또는 자금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차입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전자의 거래형태는 단기자금시장(Money Market)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후자의 거래형태는 유가증권대차시장(Securities Loans)을 대체 또는 보완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레포시장이라고 한다.

20) 카운터 파티 리스크란 거래 상대방의 경영 악화 등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질 때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게 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계적인 주가 하락이나 급격한 자본 이동 등을 통해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에 파급되었다.

## 2)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전세계 금융시장의 동향

우선, 미국을 보면 2008년 기준 미국경제는 금융위기의 심화로 인하여 소비 위축이 본격화되어 경제성장률이 1.4% 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즉 2008년 상반기 미국 정부의 세금 환급에 따라 소비가 약간 증가하고 달러화의 약세에 의존하여 수출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심화된 금융위기는 소비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타격을 미침으로써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경기 침체에 진입하게 되었다. 나아가 2009년에는 연방준비은행과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금융패닉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금융불안의 지속에 따라 신용공급 축소와 자산의 가격하락이 소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활동을 위축시켜 낮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심지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둘째, 중국 경제를 보면, 중국은 수출 둔화와 자산가격의 하락 등 불안 요인이 부각하여 성장 둔화 조짐이 뚜렷한 가운데 2008년 경제성장률은 9.5% 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되는 반면 외수 시장의 위축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투자와 제조업 투자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출 둔화에 기반을 둔 성장 둔화가 점차 내수와 수출 모두 위축되는 단계로 접어들어 경착륙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인하여 2009년 경제성장률은 약 8%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셋째, 유로 지역과 관련해서는 2008년도 가계구매력 위축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이 하락하여 2/4분기 이후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위축에 따른 수출 수요 둔화 지속으로 4/4분기 경제성장

률이 대폭 둔화되면서 연간 1.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유로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총투자 및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어 2009년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하반기 이후에나 완만한 수준의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넷째, 일본과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수출둔화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며 설비투자가 감소되는 가운데 실질소득의 감소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어 0.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본 정부가 구조적 경기 둔화를 우려하여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일본 경제는 2009년도에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설비투자 감소, 민간소비 부진 지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나 하반기 이후 수출 여건이 개선되어 점진적인 회복이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제유가는 2008년도에 성수기 진입과 OPEC의 감산 정책에 불구하고 선진국으로부터 초래된 금융 불안이 전세계적인 실물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원유수요의 증가가 매우 제한적인데다가 달러화 강세까지 겹쳐 4/4분기 평균 배럴당 60달러 내외의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2009년의 국제유가는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OPEC의 계속되는 추가 감산, 한계유전의 생산비용, OPEC의 균형예산 유가수준, 석유사의 개발프로젝트 연기 및 철회 등으로 공급능력이 위축되면서 추가적 유가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9년 7월 기준 약 65달러 후반에 위치하고 있다.

## (2) 글로벌 금융시장의 문제점 및 전망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 위기가 진원지인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것은 금융기술의 진전에 따라 리스크 분산을 가능하게 한 증권화 상품의 존재를 지적하였다. 둘째, 증권화 상품 관련 증권화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Originate to Distribute Model)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비우량 담보에 대한 대출과 그를 토대로 한 채권화하는 과정에서, 낮은 신용의 담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용으로 평가되어 채권이 발생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를 하게 만드는 모기지 회사 등 오리지네이터(originator)의 장밋빛 심사를 통한 모델 헤저드의 문제, 신용등급기관이 부여한 등급의 신뢰성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셋째로, 금융 위기의 확대 스피드가 매우 빠르는데, 증권화 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회계상의 시가회계의 보급 및 정보공시제도의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규제 등 제도적인 요인이 위기를 증폭시키는 증폭효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국 등 각국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미국과 유럽 정부는 유동성 공급확대와 예금보호조치, 금리인하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위기를 진화하려고 할 것이다. FRB는 은행권에 유동성 공급 규모를 2009년 말까지 9천 9억 달러로 증가하기로 발표하였고 유럽 각국 정부도 금융기관에 잇달아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독일·아일랜드·그리스 등은 고객 예금보호조치에 들어갔다. 또 지난 10월 8일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 공조에 나섰다.

## 2.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와 전망

### (1) 금융위기 여파와 구조적 심각성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의 경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즉, 주식시장, 외환시장, 금융시장이 극심하게 변동하면서 주식가격의 폭



락 원화환율의 급등 금리 스프레드가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주식가격은 KOSPI가 2008년 10월말 기준으로 2007년말 대비 41.3%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동 기간 37.5%가 증가하였으며, 회사채(3년 AA-)와 국고채(3년) 간의 금리 스프레드는 동 기간 중 103bp에서 366bp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2008년 9월 이후에만 3차례(10월 9일 0.25%, 10월 27일 0.75%, 11월 7일 0.25%p)에 걸쳐 1.25%p를 인하는 등 기준금리의 지속적 인하, 미연준(FRB)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등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실물경제의 침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지출 11조원과 세제지원 3조원 등 총 14조원 규모의 재정정책 강화를 통한 실물경제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는 한국의 위기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더욱 확대되고 국내 외환 및 자금 시장에서 달러화뿐만 아니라 원화의 유동성 부족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과거 외환위기, 카드위기의 발생시기와 지금의 금융위기 상황을 비교하여 보면, 지금의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외채구조의 악화, 자금시장의 구조적 문제, 대외의존도의 심화 등 구조적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국가의 대외적 건전성을 의미하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의 비율, 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기업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전산업)과 부도율(금액 기준 전자결제 포함), 가계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은행대출금, 연체율 등은 외환위기와 카드위기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총외채 중 단기외채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 48%에서 25%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계속 높아져 2008년 2/4분기 현재 40%대에 이르고 있어 외채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외

환위기 직전 30%수준이던 총유동성(금융기관유동성, Lf) 대비 가계대출의 비율이 2000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최근에는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예금은행의 총예금 대비 총대출금 비율이 외환위기 직전 100%대에서 2000년에 70%후반까지 낮아진 이후 2008년 2분기 현재 140%까지 높아져 자금시장의 구조적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실질가격 기준 GDP 대비 총수출과 총수입 합 의 비율로 측정한 대외의존도는 1997년 60%대에서 2008년 중반에는 110%대로 높아져 해외경기 변화에 더욱 민감한 경제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 외환시장                          | 단기금융시장                          | 채권시장                             | 주식시장                     |
|--------|-------------------------------|---------------------------------|----------------------------------|--------------------------|
| 단기적 변화 | 원화 약세 압력<br>환율 변동성<br>확대      | 정책대응에<br>따른 등락<br>단기금리 상승<br>압력 | 장기금리 하락<br>압력<br>외평채 가산금<br>리 상승 | 주가 하락 압력<br>주가 변동성<br>확대 |
| 장기적 변화 | 엔화 강세<br>달러화 약세               | 신용스프레드<br>확대                    | 신용스프레드<br>확대                     | 상당 기간 조정                 |
| 주요 변수  | 엔캐리 청산<br>속도<br>미국 경제의<br>성장세 | 국내 경기<br>금리정책                   | 국내 경기<br>금리정책                    | 국내 경기<br>외국인 투자<br>자금    |

(2) 실물경제의 동향과 전망

2008년 우리나라 국내 경제는 1/4분기 5.8%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수출의 호조에 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

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 경제활동별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내수 부진으로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금융보험업은 금융시장의 불안 가중으로 성장률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출항목별로는 세계경제의 둔화, 유가의 급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대외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물가상승, 금융불안의 가중 등으로 소비 및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되면서 내수 전체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09년에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이 실물경제의 침체로 가시화되면서 수출둔화와 내수부진의 지속으로 실질GDP성장률은 2008년의 4.1%보다도 낮은 3.1%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민간소비는 유가 안정 등에 따른 물가상승 둔화로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세계경제의 불투명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악화와 소득 둔화 등으로 2008년의 1.7%에서 1.6%로 더욱 둔화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심화, 신용경색의 지속 등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되어 2008년의 2.3%에서 2.1%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며, 건설투자는 SOC 확충, 주택부문의 규제완화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이나, 미분양 주택의 물량 적체, 소비둔화로 인한 비주거용 건설의 회복 지연, 금융시장의 불안 등에 의한 민간부문의 부진으로 1.4%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2008년에는 서비스수지의 대폭적인 적자로 인해 1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나, 2009년에는 1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3. 국내의 보험시장의 동향과 전망

#### (1) 주요 지표

그 동안 보험산업은 3년 연속 두 자리 성장률을 유지하여 왔으나, 2008년 초래된 금융위기 이후 2008년 1.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09년도도 약 3.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주식시장 및 실물경제의 침체로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신계약이 대폭 감소하고 해약률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을 보인다. 손해보험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비록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 확대로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손해보험은 고성장을 지속하겠지만, 자동차보험은 요율 인하와 신차등록대수 감소, 온라인 채널의 시장점유율의 확대에 의한 가격 경쟁 심화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다음과 같다.

####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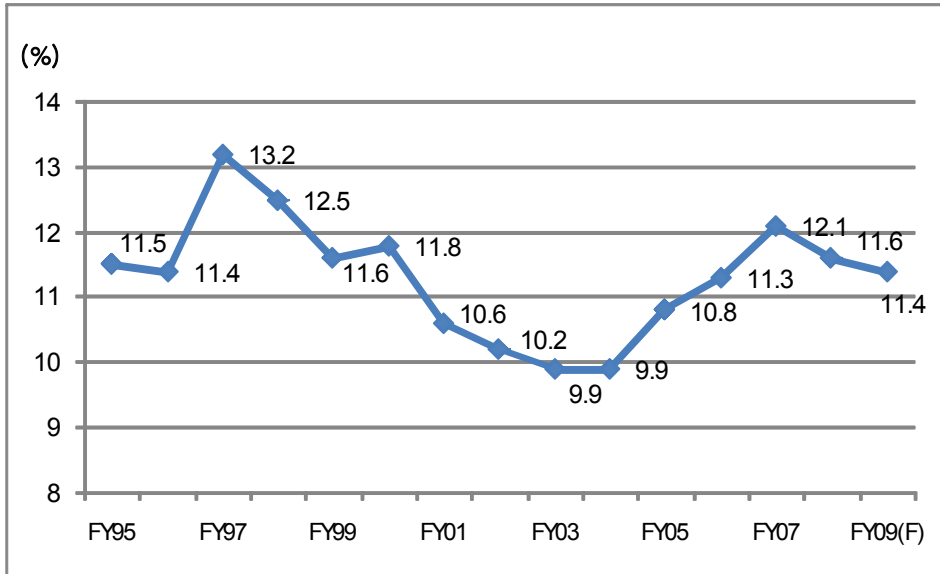
|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생명보험 | 61.5(14.4) | 66.5(8.1)  | 75.1(13.0)  | 73.2(-2.5) | 74.2(1.3)  |
| 손해보험 | 25.7(10.8) | 29.6(15.0) | 34.0(14.9)  | 37.3(9.6)  | 40.4(8.3)  |
| 전 체  | 87.2(13.3) | 96.0(10.1) | 109.1(13.6) | 110.4(1.3) | 114.5(3.7) |

\* ( )안은 전년대비 억단위 증가율이며,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경상 GDP 대비 수입보험료인 보험침투도는 2008년부터 수입보험료의 상승이 경상GDP 성장률을 하회할 것이어서 11.6%, 11.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3. 국내의 보험시장의 동향과 전망

<보험침투도 추이>



보험산업의 전체 총자산은 수입보험료 성장 둔화와 투자 여건의 악화로 2009년에 전년 대비 6.9%가 증가한 426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보험산업 총자산 전망>

(단위 : 조원, %)

|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생명보험 | 239.4(13.1) | 273.1(14.1) | 305.4(11.8) | 325.4(6.5) | 345.7(6.2) |
| 손해보험 | 49.3(13.6)  | 57.0(15.6)  | 66.0(15.9)  | 73.3(11.1) | 80.6(10.0) |
| 전 체  | 288.0(13.2) | 330.1(14.4) | 371.4(12.5) | 398.7(7.4) | 426.3(6.9) |

## (2)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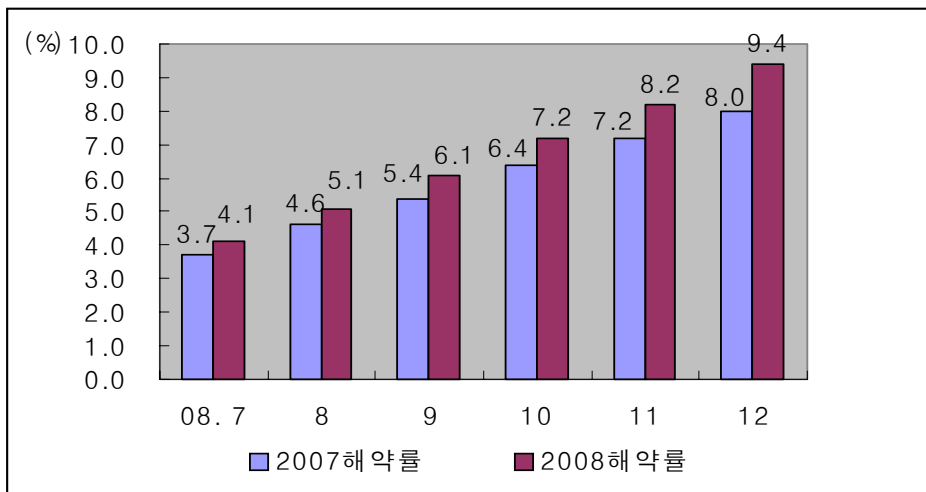
### 1) 수입보험료

2008년도 3/4분기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 종목에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변액보험에서의 성장 둔화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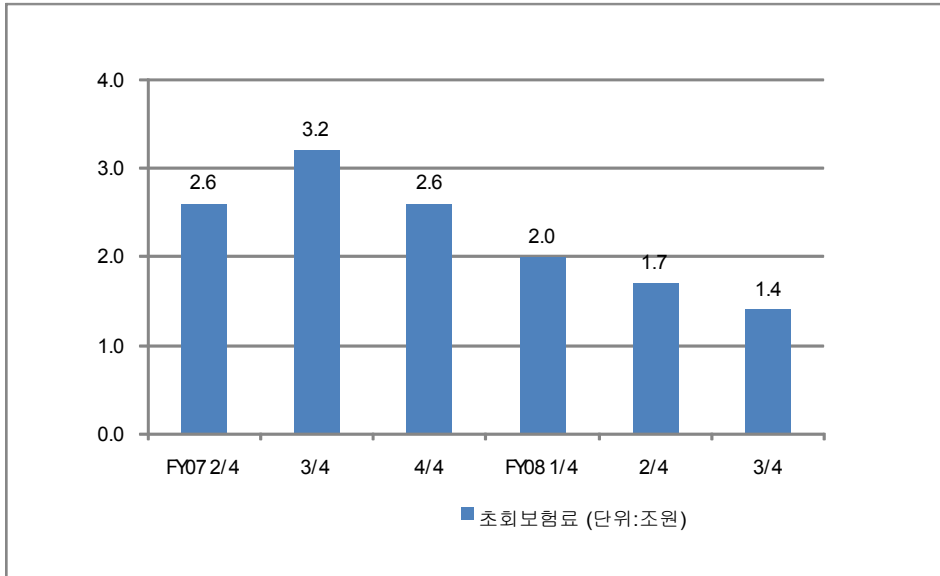
첫째,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크게 증가하였던 일시납 수입보험료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12.3%가 감소하였고, 일반 계정 개인보험 또한 신규 보험가입의 감소와 보험 해약의 증가 등으로 성장률이 악화되었다.

둘째,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3/4분기(12월)에 대부분 거수됨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되었다. 이외 생명보험의 전체 해약률을 보면 전년에 비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월 이후 증가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생명보험 해약률 추이>



<초회보험료 추이>



이처럼 금융시장의 불안, 실물경제의 침체 영향으로 향후 생명보험 산업은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8년의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2009년도도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전년에 비하여 소폭 상승한 1.3%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이 또한 2008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성장세의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셋째, 개인보험의 경우이다. 개인보험도 예외가 아니어서,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한 수요 둔화와 해약률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9년 1.4%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넷째, 사망보험의 경우는 종신보험의 구조적 저성장세와 질병보험 판매의 지속적 축소 등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으며, 특히 최근 사망보험의 주성장요인이었던 유지율 제고 효과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2009년에는 0%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종신보험

의 제1회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계속보험료 성장률마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흐름은 200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질병보험 또한 마이너스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생사혼합보험으로 변액유니버설 보험<sup>21)</sup>의 저성장세와 저금리의 환경에 따른 일반생사 혼합보험의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인하여 2.3%의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 수익성

2008년 3/4분기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면서 180억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즉, 지급보험금의 증가에 의하여 보험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험영업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고, 투자영업수지의 경우에는 환율 상승에 의하여 국내사를 중심으로 통화과생상품의 손실이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익의 증가로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손실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 증가로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전체 투자영업수지가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2009년 경영수지는 해약 등에 의한 보험영업수지의 적자 지속과 채권 금리 하락으로 인한 투자영업이익 축소 등으로 인하여 상반기 기준 중심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 수입은 신규가입 금감과 해약 증가로 감소세가 불가피하며 해약 증가로 인한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보험영업비용이 상승하면서 보험영업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 하반기 신용경색으로 상승했던 채권금리는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2009년부터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자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자영업이익은 악화될 전망이고, 투자영

21) 변액유니버설 보험은 변액연금보험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일시납 보험의 비중이 변액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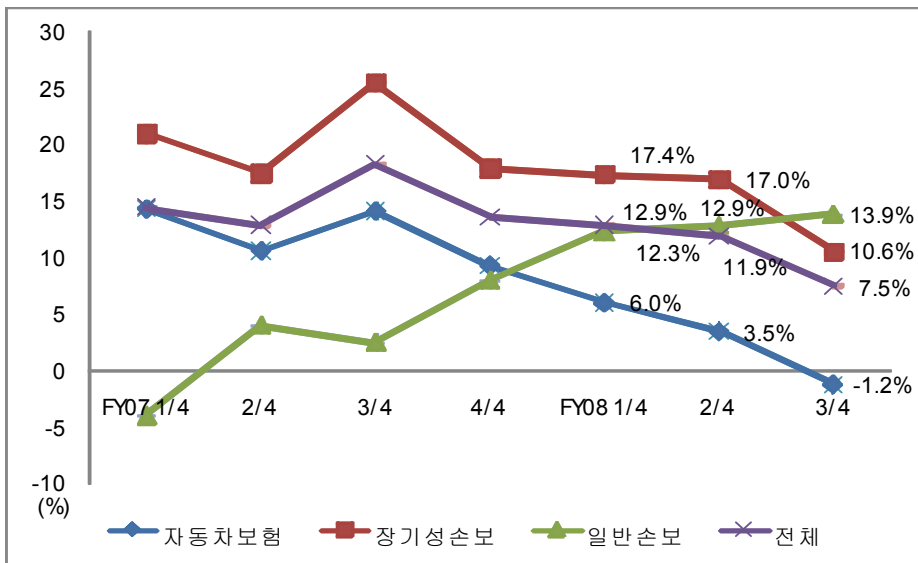


업비용은 2008년 하반기 환율 급등과 함께 통화 관련 파생상품 손실이 대폭 늘어나면서 악화되었으며 2009년 하반기부터 환율이 점차 안정되면서 투자영업비용도 개선될 전망이다.

### (3) 손해보험

#### 1) 원수보험료

2008년 4-12월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3/4분기에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자동차보험 시장이 침체에 접어들었으며, 장기성 손해 보험의 성장세도 다소 둔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주) 장기성손보는 장기성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연금)을 포함하며, 일반손보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보험을 포함함.

첫째, 자동차보험은 손해율의 개선으로 인한 요율 인하와 경기 침체로 인한 신차등록대수의 감소, 가격 경쟁이 심한 온라인 채널의 시장 점유율의 확대로 2008년 성장률이 급감하였다. 손해보험의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이러한 현상을 잘 파악할 수 있다.

| 구 분   | 2007년 |       |       |       | 2008년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화재보험  | -1.8  | -5.2  | -2.6  | 2.3   | -5.7  | -6.9  | -9.8  | -7.6  |
| 해상보험  | -17.4 | 11.2  | 13.9  | 15.2  | 24.9  | 7.2   | 72.6  | 32.7  |
| 자동차보험 | 14.3  | 10.6  | 14.1  | 9.3   | 6.0   | 3.5   | -1.2  | 2.7   |
| 보증보험  | -18.4 | -12.2 | -15.3 | -5.3  | 16.1  | 25.1  | 8.4   | 16.2  |
| 특종보험  | 7.5   | 9.7   | 9.3   | 13.3  | 9.7   | 12.1  | 7.1   | 9.6   |
| 장기보험  | 22.4  | 19.5  | 19.6  | 16.8  | 16.1  | 16.3  | 14.4  | 15.6  |
| 개인연금  | 23.4  | 26.8  | 24.0  | 27.0  | 28.3  | 30.0  | 29.1  | 29.2  |
| 퇴직보험  | -31.7 | 52.4  | 48.6  | -8.1  | -32.4 | -19.7 | -21.1 | -22.2 |
| 퇴직연금  | 971.8 | -79.3 | 758.8 | 308.1 | 495.5 | 81.6  | -1.5  | 49.2  |
| 전 체   | 14.5  | 12.9  | 18.3  | 13.6  | 12.9  | 11.9  | 7.5   | 10.6  |

나아가, 2009년에는 -3.5%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한 원인으로서는 첫째, 경기침체로 자동차 등록대수 및 고급차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채널의 비중 확대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들 수 있다. 둘째, 2008년 중반 고유가로 인한 운행거래의 단축과 사고율의 감소로 보험료가 인하되었고 할인대상 차량이 증가하였다는 점도 자동차보험 역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손해율의 상승 추세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자동차보험 성장률은 다소 회복될 수는 있겠으나, 그 영향은 2009년보다는 2010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기손해보험의 경우로 종 보험은 상해, 질병, 통합형 보험의 높은 성장세와 저축성 보험의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2008년 15.2%,

2009년 14.5%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초회 보험료가 2008년 4-12월에 2006년 이후 최대 폭인 전년동기 대비 10.8%로 성장하여 성장잠재력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장기손해보험은 당분간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장기보험 해약률을 보면 2008년 4-12월에 12.9%로 전년동기 대비 0.4%p증가에 그쳤으나 11월 이후 해약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해약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이 지속적인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상, 특종, 보증보험의 높은 성장세로 인하여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2008년 4/4분기 이후 성장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화재보험은 일반물건의 보험료 인하, 민간부문의 투자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 등 부정적 영향에 따라 역성장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상보험도 조선 건조량 및 고가 선박 증가 추세, 환율상승에 따른 보험료 환차익 등으로 2008년에는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나 2009년에는 수출입 물동량이 감소와 함께 선박 및 항공기의 항로 통합과 계선 증가 등 수요 감소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넷째, 기타 특종보험은 민간부문의 투자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로 기술보험과 종합보험 등 기업성 보험이 부진을 보이는 반면, 사해보험 등 가계성 보험의 고성장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며, 개인연금도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09년에도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퇴직 관련 보험시장은 퇴직 연금 활성화 정책으로 퇴직연금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겠지만, 퇴직보험 해약액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 수익성

### ① 손해율 및 사업비율

2008년 4-12월 손해보험 전체 손해율은 75.5%로 전년대비 0.2% 개선되었으나 향후 손해율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08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환율상승으로 해외여행수요가 국내여행수요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운행거리가 증가하여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11월 이후 72-73%대로 상승하고 있으며, 보증보험의 손해율도 경기침체로 인한 불량물건 증가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비 증가로 전년대비 0.5%p 증가한 24.0%로 상승하였으며 향후에도 장기손해보험 신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약률도 상승할 것이 예상되므로 24%대의 사업비율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 <손해보험 종목별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 구 분  |       | FY2005 | FY2006 | FY2007 | FY2008(E) | FY2009(F) |
|------|-------|--------|--------|--------|-----------|-----------|
| 손해율  | 화재보험  | 40.9   | 39.6   | 44.2   | 42.3      | 45.0      |
|      | 해상보험  | 52.0   | 52.1   | 57.7   | 65.3      | 54.3      |
|      | 자동차보험 | 76.6   | 79.0   | 73.0   | 70.1      | 73.4      |
|      | 보증보험  | 2.9    | 23.4   | 19.5   | 43.4      | 54.8      |
|      | 특종보험  | 51.6   | 55.3   | 60.4   | 62.7      | 63.3      |
|      | 해외원보험 | 52.4   | 44.7   | 34.6   | 45.1      | 43.3      |
|      | 장기보험  | 86.4   | 83.9   | 80.7   | 80.1      | 79.8      |
|      | 개인연금  | 125.9  | 125.4  | 121.7  | 116.2     | 115.7     |
| 전체   | 전체    | 77.9   | 78.6   | 75.7   | 75.8      | 77.8      |
| 사업비율 |       | 23.2   | 23.8   | 23.5   | 24.1      | 24.3      |
| 합산비율 |       | 101.1  | 102.3  | 99.2   | 99.9      | 102.1     |

주 :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된 일반계정 실적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② 자산운용수익률

2008년 12월말 자산운용률은 83.1%로 고정자산이나 보험미수금 등의 비운용자산의 증가로 2007년에 비하여 1.1%p 감소하였다. 나아가, 한국은행은 2009년 2월 기준금리를 2.0%로 낮추는 등 시중금리의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향후 손해보험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을 전망되고 있다.

만약 운용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 기존 확정금리 상품의 역마진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급격한 금리인하로 공시이율 하락 속도보다 신규 편입 채권수익률이 빠르게 하락하여 금리 연동형 상품에서도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시이율이 떨어지는 경우 저축성 보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장기손해보험의 성장률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

③ 수지차

2008년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은 손해율 및 사업비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다소 악화될 것으로 추정되며, 2009년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더욱 상승하여 악화 폭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2008년 손해보험사 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 및 보증보험의 손해율 상승과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다소 악화될 것이며, 2009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투자영업이익도 시중금리 하락과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투자환경악화로 2008년 전년 대비 다소 악화될 것으로 추정되며, 2009년에는 시중금리 하락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투자영업이익이 상당 수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보험회사의 지급능력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동

안 보험 산업 전체적으로 지급여력 비율은 생명보험이 매분기마다 평균 4.8%씩 하락하고, 손해보험은 평균 1.5%씩 하락하였다. 이처럼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에서 지급여력비율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난 데에는 자본시장 변동에 취약한 생명보험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다만, 2008년 12월의 지급여력 개선은 2008년 말 금리 인하에 다른 채권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경우 채투자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자산운용과 지급여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보험 회사의 지급여력 비율은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없을 경우 하락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시장 지급여력 비율의 최근 4분기 추이>

|       | 2008년 |       |       |       | 증가율(1-12월) |
|-------|-------|-------|-------|-------|------------|
|       | 3월    | 6월    | 9월    | 12월   |            |
| 생명보험  | 237.7 | 208.5 | 184.4 | 204.1 | -4.8%      |
| 손해보험* | 247.5 | 244.6 | 229.8 | 236.7 | -1.5%      |

\* 손해보험은 재보험회사 및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함

이처럼 지급여력비율의 하락 지속은 보험회사의 자본력을 뒷받침하는 수익성 개선이 단기간에 달성되기 힘들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영향은 먼저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투자손익(손익계산서)과 기타 포괄손익(대차대조표)의 축소라는 투자영업 실적의 악화로 나타난다. 물론 2008년 12월 금리 인하에 따른 평가이익이 늘어나면서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금리 인하 추이를 고려할 때 투자영업이익의 감소 추이를 고려할 때 투자영업이익의 감소 추세가 반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투자영업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억원, %)

|          |              | 2007  |       | 2008년 |       |       |       |                |
|----------|--------------|-------|-------|-------|-------|-------|-------|----------------|
|          |              | 9월    | 12월   | 3월    | 6월    | 9월    | 12월   | 증가율<br>(1-12월) |
| 생명<br>보험 | 투자손익<br>증가율* | 20.3  | 14.4  | 12.2  | -1.9  | -5.9  | -6.6  |                |
|          | 기타포괄**       | 7,922 | 6,861 | 8,087 | 5,200 | 2,443 | 4,415 | -11.0          |
| 손해<br>보험 | 투자수익<br>증가율  | 51.1  | 42.3  | 19.2  | 8.6   | -8.3  | -10.7 |                |
|          | 기타포괄         | 1,175 | 898   | 1,114 | 656   | 168   | 324   | -22.7          |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자본계정의 기타 포괄손익과 부채계정의 계약자지분조정 합산

더욱이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신계약 감소와 보유 계약의 해약을 상승으로 보험 영업의 수익 구조도 악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영업에서는 투자 영업과 달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생명보험은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경기 활동 축소에 따른 손해율 개선으로 오히려 영업 이익률이 개선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2008년 12월에는 손해보험에서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였다.

<보험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

|      | FY2004 | FY2005 | FY2006 | FY2007 | 2008.09* | 2008.12** |
|------|--------|--------|--------|--------|----------|-----------|
| 생명보험 | 27.3   | 24.5   | 25.5   | 23.0   | 17.4     | 4.1       |
| 손해보험 | 12.6   | 12.3   | 13.5   | 16.0   | 17.4     | 13.5      |

\* 준비금적립 이전 영업이익률 = (보험손익+준비금증가액)/수입보험료

\*\* 분기이익률은 연간 환산치 적용

향후 자본시장 변동 가능성이 상존하여 투자영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보험영업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도 크지 않는 상황이므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 4.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 정부는 유동성 공급확대와 예금보호조치, 금리인하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위기를 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미국은 FRB는 은행권에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하기로 하였으며,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등 유럽 각국 정보도 금융기관에 잇달아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과거 외환위기, 신용카드 위기와 비교하면 2008년 3/4분기부터 초래된 금융위기는 그 지표가 조금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외채구조의 악화, 자금시장의 구조적 문제, 대외 의존도의 심화, 등 구조적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시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즉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보험회사의 지급능력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2008년 12월의 지급여력은 개선되었는데 이는 2008년 말 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경우 채투자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가 예상되어 장기적으로는 자산운용과 지급여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지급여력비율의 하락 지속은 보험회사의 자본력을 뒷받침하는 수익성 개선이 단기간에 달성되기 힘들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험시장은 자본시장 변동 가능성이 상존하여 투자영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보험영업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도 크지 않는 상황이므로 자본 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하다고 하겠다.

## 제 3 장 입법평가기준으로 보험 규제 관련법 제도 분석

### 1. 서 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시장 또한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험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보험 관련 입법에 대한 재평가를 하여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전적 입법평가의 기준으로서 본장에서는 국내외의 보험관련 법제도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국내의 보험규제 관련법

#### (1) 자본시장통합법

##### 1) 제정 배경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8월 3일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공포하고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sup>22)</sup> 동법은 영국이 1980년대 처음 금융법을 통합하여 통합금융법(Financial Service Act)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과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 FSRA)을 벤치마킹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의 제정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는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겸

---

22)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등록 및 통합협회 설립 등은 자통법 전면 시행 6개월 앞선 2008년 8월 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업화와 대형화, 금융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구체적인 내용

### ①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경영 허용

#### (가)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현행 법령 체계는 금융투자업을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 상호 간에는 겸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도 법령에 열거하고 있어 부수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그 동안 업무의 확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였다. 즉,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매매업 등 6개 업종<sup>23)</sup>으로 분류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겸업을 허용하였다. 또한 영위 가능한 부수 업무를 법률에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를 취급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sup>24)</sup>

이러한 조치에 따라 금융업의 경우 향후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간 경쟁구조가 심화되어 상대적으로 고객층이 두텁고 자본력이 큰 증권사들이 자산운용사나 선물회사 등을 인수하여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

23) 매매업, 증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자산보관관리업의 6개 업종을 말한다.

24) 금융투자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부수되거나 고유재산의 자산운용(헷지, 투자)을 위해 행하는 외국환 거래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허용하게 되었다.

된다. 반면, 자금이나 판매에서 증권사에 비해 열위에 있는 자산운용사와 선물회사는 주도적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워 특정 분야에 특화하지 못할 경우 생존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한다.<sup>25)</sup>

다른 한편으로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이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권역별 영향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위험을 전가하려는 주체에 비해 위험을 부담하고자 하는 주체가 부족한 실정인데, 겸영이 가능한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과 헤지 수단을 제공할 경우, 은행은 신용 위험 전가가 용이해지고, 보험회사도 위험 헤지나 자산운용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자산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은행계 금융지주회사도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 (나) 이해상충의 문제

금융투자업을 단일의 형태로 영위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고유계정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복수의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경우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금융투자업을 단일의 형태로 하는 경우보다 더욱 커진다. 예를 들면, 특정 금융투자업의 투자자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 금융투자업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

25) 이에 대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더라도 자산운용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대형화와 겸업화를 주도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들은 대부분 이미 자산운용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고, 합병시 매매업과 자산 운용업간 방어벽 구축과 유지가 쉽지 않아 별개 법인 형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조직 분리, 임직원 겸직 제한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방화벽(Chinese Wall)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지고 자본시장 전체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의 철저한 검사와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②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기능 부여

지급결제기능은 그 동안 증권회사들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으로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증권회사는 금융결제원의 소액 결제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증권계좌를 통해 투자, 결제, 송금, 수시입출금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운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일부 증권사는 은행과 펌뱅킹(Firm Banking)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이체, CD/ATM 입출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계좌이체가 영업시간 내로 제한되어 있고, CD/ATM를 통한 입금이나 은행 창구를 통한 출금, 카드·지로 결제, 급여이체 등이 되지 않는 등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금융투자회사 계좌에 지급결제기능이 부여되어 은행 등과 별도의 펌뱅킹 계약을 하지 않고 대표 금융기관-대행은행을 통하여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고객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증권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할 경우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금계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은행의 공공성도 위축되어 자신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결국 기업대출의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왜냐하면

은행은 통상 조달비율이 낮은 저원가성 예금으로 기업 등에 대출을 하여 수익을 얻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지급결제기능을 증권회사에 인정하게 되면 그 동안 해왔던 은행의 역할을 증권회사에게 일부 이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수익률의 감소를 초래하여 은행의 공공적 기능에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은행의 전통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지금의 은행은 기존 은행업무뿐만 아니라 비은행부문의 경쟁력도 강화하여 왔다. 따라서 만약 은행들이 기존의 고객 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금융투자회사들의 신상품을 판매할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는 증권회사에게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여 잃은 손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 ③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허용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cross-border supply)이란 한 나라에 위치한 금융회사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두지 않고도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국내 지점이나 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에 의한 인가를 받도록 하되, 법인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거주자의 주문에 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국내 고객들이 인터넷으로 외국 금융회사의 본점과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국인이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현지의 증권사를 통하여 매도

내지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각국 WTO 협상 양허안에서는 해상보험, 항공보험, 재보험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상(FTA)에서는 주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물론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는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금융서비스 선택권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개방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를 개방할 경우 외국의 금융회사에 의한 독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바라는 신규고용 창출이나 노하우 이전 등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조차도 거둘 수 없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개방은 국내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보호의 감독 기능을 강화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 ④ 투자금융회사 파산시 투자자 보호

##### (가) 엄격한 투자권유제도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투자권유 규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설명의무제도(Product Guidance)이다. 설명의무제이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설명의무제도가 선물·자산운용·부동산투자회사에만 있고, 투자자문·투자일임·선박투자회사에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만, 증권회사·신탁회사·창투회사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에는 이러한 설명의무제도를 모든 금융투자회사에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하거나 설명 누락을 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투자자는 해당 금융투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투자자는 원본 결손액을 금융투자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여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그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권리구제를 대폭 강화시켰다.

#### (나) 금융투자회사 파산시 투자자 보호문제

마지막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위법이나 설명의무위반 등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게 손실에 대한 배상능력이 있다면 그것에 의하여 투자자는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손실배상 능력이 없다면 투자자는 자신의 손실을 구제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말 IMF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증권회사가 자금의 부실화 등으로 퇴출된 적이 있으며, 이번 금융위기 이후 인수보증업무와 고유계정 관련 손실, 모회사 부도 등으로 인하여 6개의 증권회사<sup>26)</sup>가 인가취소나 자진 해산한 바 있다. 또한 신탁자산의 비효율적 투자·운용과 주식시장의 침체의 지속 등으로 2개의 투자신탁증권이 부실화되어, 약 9.3조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된 바 있다. 호주증권거래보증기구(SEGC)의 2002-03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1988년 이후 9개 회원사의 부도로 인해 총 5,554명의 투자자에게 2,137만 호주달러를 지급한 예도 있다. 물론 증권회사가 파산할 확률은 낮지만 파산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와 관련 자본시장이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투자자 보상제도(Investor Protection Scheme)를 두고 있어 투자자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투

26) 고려증권, 동서증권, 동방페레그린증권, 장은증권, 한남투자증권, 산업증권을 말한다.



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금융투자회사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이다.

### 3) 자본시장통합법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 ① 제도 변화의 기본방향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은 보험업에 대하여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판매 제도의 선진화 도모, 경영업무의 확대, 소비자 보호 장치의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보험을 포함한 금융 산업의 리스크 감독 정책이 최저 자기자본 규제, 감독기능 강화, 시장규율 강화 등을 기반으로 금융권간·국가간 규제의 수렴, 리스크관리 및 규제 절차의 일관성의 확립 등의 흐름 속에서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양한 경영업무의 허용, 자산운용 대상의 확대, 보험지주회사 허용 등으로 겸업화와 종합금융서비스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보험 산업의 제관분리에 부응하며 보험판매질서의 선진화를 위해 판매채널의 다양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자기자본규제의 글로벌화와 리스크의 통합화 측면에서 Solvency II를 기반으로 하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정책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민원, 분쟁 등 소비자 관련 금융시장 질서의 선진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장치 관련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② 제도변화 방향의 주요내용

(가) 보험 산업의 겸업화·종합화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보험 분야에 있어서도 보험 산업의 겸업화 내지 종합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보험회사들은 겸업화를 통해 통합금융서비스 기능을 확보하여 타업권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 회사 방식 등을 활용한 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 즉, 세계적으로 금융의 겸업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국내적으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추진되면서 통합된 종합금융서비스의 요청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시장의 포화상태 도달로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개인 소득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종합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둘째,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실시 및 보험업법 개정 등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투자자문업·일임업의 겸영허용, 지급결제 허용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업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체계에 맞추어 개별 보험회사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의 업무가 허용되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해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하면서,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상의 차단벽(fire-wall)을 갖추고 등록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산운용관련 규제를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대상이 광범위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자회사가 유형에 관계없이 허용되도

록 자회사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파생상품도 총액한도는 축소되나 유형의 구분없이 투자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며, 부동산 소유도 총액한도 내에서 유형에 관계없이 소유하도록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겸업화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지주회사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험회사는 자회사 형태의 소유만 가능하며, 생손보간 자회사 및 증손회사 관계 등 손자회사 형태의 지배는 배제된다. 또한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도 보험업법의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만을 적용받고, 별도 규정은 배제된다.

#### (나) 판매채널의 다양화

2000년 이후 보험 산업에 있어서 보험판매제도는 온라인전업사, 방카슈랑스 및 홈쇼핑, 설계사 교차모집제도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 왔다. 이처럼 다양한 판매 채널의 도입은 재판분리의 추세에 대응하고 기존 판매관행을 선진화할 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 전체의 유통구조를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향후 보험업법의 개정안에서는 이와 관련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의 신설, 법인대리점제도 및 기타판매채널 제도의 정비 등 판매 채널을 더욱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에 한함)로 정의되는데, 기존 법인대리점에 비해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이러한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중개

---

27)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인가요건 및 이해상충 방지 장치 구축을 전제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겸영과 더불어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영위도 허용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일정 범위 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고 있다. 또한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배상책임 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출액에 비례하여 영업보증금을 금감원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완전 판매율 및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정기적인 금감원 검사·감

사제도와 대리점제도를 결합한 성격이 강하나 기능면에서는 중개사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기존 보험중개사보다 권한은 더 커지나, 기능 및 역할이 상당 부분 기존 모집조직과 중첩되어 모집조직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모집조직간 권한 비교<sup>28)</sup>>

| 구 분      | 보험판매<br>전문회사 | 보 험<br>설계사 | 전속대리점 | 독립대리점 | 보험중개사                |
|----------|--------------|------------|-------|-------|----------------------|
| 요율 협상권   | ○            | ×          | ×     | ×     | ○                    |
| 보험료수령권   | ×            | ×          | ○     | ○     | ×                    |
| 계약체결대리권  | ×            | ×          | △     | △     | ×                    |
| 고지의무수령권  | ×            | ×          | ○     | ○     | ×                    |
| 보험금지급대행  | 소액에<br>한정    | ×          | ×     | ×     | 사전계약으<br>로 소액에<br>한정 |
| 배상책임소재   | 보험판매<br>전문회사 | 보험회사       | 보험회사  | 보험회사  | 보험중개사                |
| 행위의 목적   | 계약자          | 보험회사       | 보험회사  | 보험회사  | 계약자                  |
| 보험사와의 관계 | 독립           | 종속         | 종속    | 독립    | 독립                   |

△ : 보험업법 상에는 권리가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음

둘째, 법인대리점과 관련해서는 법인대리점이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하여 법적 제재를 받았을 경우 그 대리점에 소속한 임원은 그 제재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대리점의 임원 등으로 등록할 수 없

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8) 오영수, “보험제도 선진화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정책연구자료 2008-4)”, 2008.38쪽.

도록 위반대리점 소속 임원·모집사용인에 대한 제재 근거조항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법인대리점의 판매책임의 강화를 위하여 불완전 판매율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기타 판매 채널과 관련해서는 삼진아웃제, 설계사 교육의무, 모집사용인과 보험설계사의 통합 등 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다) 건전성 및 리스크 중심의 감독 강화

금융의 통합화와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은행권의 신BIS협약 적용,<sup>29)</sup> 보험권의 Solvency II 추진<sup>30)</sup> 등 리스크 중심 감독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RBS: Risk Based Supervision)는 보험회사의 제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노출된 리스크 및 이의 통제능력을 체계적·상시적으로 평가하여 취약부문에 감독자원을 집중·배분하는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감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31)</sup>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정량화하여 감독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인 RBS는 최저자기자본 규제를 위해 리스크기준 자본금(RBC: Risk Based Capital)을 첫 번째 축으로 하고, 리스크중심의 경영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리스크중심 평가제도(RAA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를 두 번째 축으로, 그리고 보험회사의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공시제도를 세 번째 축으로 설계하고 있다.

---

29) 신BIS 규제는 리스크관리의 선진화 및 자본충실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최저자기 자본규제, 감독기능 강화, 시장규율 강화 등 3개축(pillar)의 리스크 감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BIS는 이의 실현을 위하여 금융권간·국가간 규제체도의 수렴 경향, 리스크관리 및 규제절차의 일관성 확립 경향 속에서 국제적 범금융권 제도로 확산시키고 있다.

30) EU Solvency II 는 자기자본규제의 글로벌화와 리스크의 통합화 측면에서 신바젤 협약(New Basel Capital Accord)의 “pillar method”를 보험권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31) 류건식(2008), “보험회사의 리스크중심 경영전략”, [http://www.kidi.or.kr/about/about\\_press\\_Content.asp?no=209&s\\_kw=&select2=0](http://www.kidi.or.kr/about/about_press_Content.asp?no=209&s_kw=&select2=0), 2009. 9. 10.

## &lt;리스크 중심 보험감독 체계&gt;

| 신BIS규제(pillar별)            | 리스크감독 체제 구조 | 리스크감독 체제 목적          |
|----------------------------|-------------|----------------------|
| [pillar I] 최저자기자본 규제       | RBC제도       | 보험회사 경영의 건전성과 자율성 확보 |
| [pillar II] 리스크 중심 경영관리 유도 | RAAS        |                      |
| [pillar III] 시장규율 강화       | 리스크 공시      |                      |

우리나라의 보험감독정책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리스크에 의한 손실의 현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조치하는 예방적, 선제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EU Solvency II를 기반으로 하는 리스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RBC제도가 2009년 4월부터 도입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RAAS와 RBC추가자본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2011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더불어 리스크공시제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 &lt;리스크 중심 보험감독 체계의 도입 관련 로드맵&gt;

| 년 도  | 제도 도입 및 운영              | 로드맵 주요 내용  |
|------|-------------------------|--|
| 2009 | RBC 제도 도입               | - 표준모형에 의한 RBC비율 산출 및 연착륙 유도<br>- 내부모형의 승인제도를 위한 감독 기본 요건 및 보험회사 준비사항 제시                       |
| 2010 | RBC 제도 본격 운영            | -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방법 도입<br>- RAAS와 RBC 추가자본 연계   |
| 2011 | 국제회계기준 도입<br>리스크공시제도 도입 | - 내부모형의 승인제도 시행(금리 및 보험 리스크)<br>-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RBC기준 일부 수정<br>- 자본 및 리스크 규모에 대한 질적 및 양적 정보 공시 |

(라) 소비자 보호의 강화

마지막으로 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 판매채널의 복합화, 금융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하여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소비자 관련 보험시장의 질서 선진화는 보험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도 적합성의 원칙,<sup>32)</sup> 보호 차등화,<sup>33)</sup> 상품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 강화,<sup>34)</sup>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sup>35)</sup>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에 대비하여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초래되는 보험사기에 의한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험사기 조사 및 사실 확인 요청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며,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금융위의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단체에 대해 진료여부 등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다.

---

32) 적합성의 원칙이란 보험상품 판매권유시 소비자 소득, 보험계약 목적, 과거 보험 계약 경험 등을 파악하여 서면확인을 받도록 하는 ‘now-Your-Customer-Rule’을 도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33) 금융소비자를 전문소비자(금융기관, 상장기업 등)와 일반소비자로 구분하여 일반 소비자에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보다 두터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전문소비자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4) 보험판매를 권유할 때에는 상품내용 및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상품의 핵심사항에 대한 설명시 보험계약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3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내용을 적용하되, 보험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사항 등 광고기준을 법제화하여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험산업 관련 규제 환경의 변화>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종합화·겸업<br>화의 진전  | <input type="checkbox"/> 업무영역의 확대<br><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업·일임업 겸업 허용, 지급결제 허용, 부수 업무 허용범위의 네가티브 방식 도입<br><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 대상의 확대<br><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 자산운용 규제 완화, 부동산 소유규제 완화<br><input type="checkbox"/> 보험지주회사 허용  |
| 판매채널<br>다양화      | <input type="checkbox"/>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br><input type="checkbox"/> 업무범위 확대, 배상책임 도입, 영업보증 개선<br><input type="checkbox"/> 법인대리점 제도 정비<br><input type="checkbox"/> 등록제도와 제재조치 개선, 공시·보고의무 신설<br><input type="checkbox"/> 판매채널 자격 및 책임 강화<br><input type="checkbox"/> 삼진아웃제, 설계사 교육의무, 모집사용인과 보험설계사의 통합 |
| 건전성·리스크<br>중심 감독 | <input type="checkbox"/> RBC 도입 등 Solvency II 중심의 건전성 감독 강화<br><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 금융기관 차입투자 등에 대한 감독 강화  |
| 소비자보호<br>강화      | <input type="checkbox"/> 소비자보호 관련 장치의 강화<br><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도입, 일반소비자 보호 차등화, 상품 설명 의무 강화<br><input type="checkbox"/> 보험사기 조사 강화<br><input type="checkbox"/> 보험사기의 정의 및 사실확인 요청권한 신설   |
| 기 타              | <input type="checkbox"/> 상품 확인 및 보험업 허가 절차의 간소화<br><input type="checkbox"/> 사업비 후취제도<br><input type="checkbox"/> 현금흐름방식의 도입  |

위에서 살펴본 금융위기에 대하여 보험 산업의 경우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AIG가 미국 정부에 대하여 긴급자금을 요청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보험 산업도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금융 산업의 통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 산업의 통합화(integrated financial services)란 금융전업주의에서 금융겸업주의로 금융 산업이 변해가는 현상을 말하며 은행 증권 보험 간의 상호 업무 영역의 확대와 결합을 의미한다. 즉 금융의 개방화, 자율화 및 대형화 등의 시장 환경과 인구의 노령화 및 수익의 증대에 따른 소비자의 다양한 금융 상품 수요 증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각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의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영역의 확대 및 금융서비스의 다각화 현상을 말한다.

특히,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금융 산업의 통합화 현상을 흔히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내지 어슈어뱅크(assurbank)라고 한다. 양자의 차이로는 방카슈랑스가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상품을 은행의 판매채널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면, 어슈어뱅크는 이와는 반대로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의 상품을 보험회사의 판매채널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이처럼 금융을 통합하여 겸업화하는 경우 장점 및 단점은 다음과 같다.

<금융겸업화의 장점과 단점>

| 장 점  | 단 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달성</li> <li>· 연계복합상품 및 서비스 개발로 이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 결제제도의 안전성 저해</li> <li>· 금융의 독과점 내지 집중 현상 초래</li> </ul> |

36) 이경룡, “종합금융화의 세계적 추세와 보험산업의 대응방안”, 『보험학회지』(97. 3), 65쪽; Alan Leach(1996)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란 “은행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의해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판매방식이며 단순히 은행창구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방카슈랑스라 할 수 없다”고 했으며, Morgan Sturdy, Daniel과 Knights(1994)는 방카슈랑스 형태를 “은행이 보험회사를 소유한 형태, 보험회사의 전속대리점 역할을 하는 은행의 형태, 독립대리점 역할을 하는 은행의 형태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방카슈랑스를 은행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 장 점  | 단 점  |
|--|--|
| 자의 편익 제고<br>• 금융거래 비용의 절감<br>•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통일적인 브랜드제공 가능<br>• 금융기관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분산<br>• 고객확보가 용이 | • 금융업종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존재<br>•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br>• 상이한 기업문화 통합의 곤란 |

## (2) 보험업법의 개정안

### 1) 개 요

최근 재경부는 07년 8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보험업법 개정자문 TF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보험 선진국과 경쟁국 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동년 12월, 보험업법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예·적금 판매 허용 등 주요 사안이 누락되고 보험개발원 권한 강화에 대한 감독 당국, 업계의 의견 차이로 개정 작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동 보험제도의 개편방안은 대형화 종합화를 통한 글로벌 보험사의 육성이라는 개편 배경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영업과 투자 영업의 양 부문에서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보험영업 측면에서는 보험사의 취급 상품을 확대하고 상품개발 절차를 자율화함으로써 금융 겸영화 진전에 따른 보험사의 상품개발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험판매 플라자 신설 등 보험사의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고 투자 영업 측면에서는 보험자사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등 보험사의 자산 운용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보험사에 겸영 업무로

투자자문·일임업 및 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하여 보험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기존의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생·손보의 겸영, 보험지주회사의 설립, 지급결제허용이 무산 혹은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연기됨으로써 단기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는 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즉, 생·손보 간 업무 영역의 철폐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손해보험이 고유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철회되었고,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한 규제는 완화될 예정이나 금산분리와의 관련성 등으로 '08년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수립하였으며,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는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된 이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하였다. 현재 동법과 관련하여 일부 관련 조항은 이미 시행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조항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2) 구체적인 내용

### ① 보험사의 투자자문·일임업 겸영 허용

현행 업무 영역 제한으로 고객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업 이외에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당해 보험사 보유자산에 한함), 신탁업에 한정하여 겸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이해 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상의 fire-wall을 갖추고 등록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하도록 허용할 경우 고객은 지급받는 보험금의 보험사에서 바로 투자컨설팅을 받게 되어 one-stop service 제공이 용이하며 종신보험과 같은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장기간 거래 관계를 형성하므로 신뢰성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은행·증권사와는 달리 장기자산 운용의 know-how를 살려 고객의 평생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투자컨설팅이 가능하므로 은행의 PB고객과 고소득 계약자가 보험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대하게 된다.

### ② 보험사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현행 보험사의 다양한 자산운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즉, 자회사 소유 대상 업종을 positive 방식으로 열거하고 지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업종을 제한하고 있어 벤처 펀드 등 새로운 유형의 자회사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저해하며, 보험사가 자산 운용의 수단으로 취급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유형을 열거하고, 파생상품의 거래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다양한 파생상품 출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자유로운 자산운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자회사 소유구조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사의 건전성 및 계약자이 보호에 문제가 없는 한 허용되도록 하고,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유형을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CDS(Credit Default Swap)이나 기상파생상품 등 일부 파생상품의 취급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투자영업 수익원이 다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즉, 보험사가 소유 가능한 자회사가 증가하고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파생상품까지 확대되면서 보험사의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보다 공격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 ③ 보험상품 정의 신설 및 상품개발 절차 자율화

현행 보험사의 자유로운 상품개발은 매우 제한적이다. 즉,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 별도로 없어 금융상품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범

위가 매우 불명확하며, 특히 자본시장 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이 포괄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보험 상품에 대한 3중 확인 절차 및 불명확한 보험상품 구분 및 심사기준으로 인하여 보험사의 신속한 상품 개발을 저해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취급상품 확대 및 상품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즉, 보험 상품의 정의 신설을 통하여 ‘보험상품 정의’와 ‘금융업 정의’를 구분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체계와 일관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상품과 금융의 장외파생상품의 구분이 모호한 신용 상품에 대해 체계적인 판단준거를 마련하고 보험 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 장외파생상품중 신용, 날씨, 파생상품 등 보험 상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품에 한해 보험사 겸영 업무로 허용하여야 하며, 상품심사 규제를 전면 개편하여 신고 상품 및 자율 상품 체계로 이원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파생상품까지 확대되면서 보험사의 다양한 파생상품의 제공이 가능해져 보험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기여하고 상품설계를 통하여 원금이 보전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 예금상품과 경쟁이 가능해지는 등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 개발은 금융 겸업화와 맞물려 금융회사 간 치열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 ④ 판매채널 제도 혁신

현행 보험 설계 및 대리점 중심의 판매 채널 제도는 일본의 판매채널 제도를 수용함에 따라 설계사와 (전속)대리점 중심으로 형성·발전되어 왔다. 그에 따라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공급자 중심의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판매채널은 이를 단순히 소

비자에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보험판매 플라자 제도를 신설하고 생·손보 교차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주는 보험판매 플라자 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되 영업보증금 및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책임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설계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08. 8월 예정된 교차모집제도를 시행하여 설계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설계사의 수익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설계사 대리점 등 현재의 판매채널들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데 반해 판매전문회사인 보험판매 플라자의 신설로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보험사간 가격경쟁을 유발해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생·손보 교차판매등 채널별로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판매 채널의 다양성을 제고 타금융권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보험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

#### ⑤ 보험사의 지급결제기능 허용

현행 방카슈랑스제도 시행과는 달리 보험사의 어슈어뱅크는 금지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 중인 방카슈랑스 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사에 어슈어뱅크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따라 증권사의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된 데 따라 보험사의 지급결제기능이 허용에 대한 요구가 큰 편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고객에게 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업권간 공정한 경쟁 기반 마련을 위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09.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 이후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 추진 경과를 보아 가

며 보험사에도 허용할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계좌를 만들어 월급을 이체하거나 송금, 신용카드대금, 지로결제, 입출금 등 소액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보험료도 은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험 계좌에서 직접 인출이 가능하게 되고, 보험권에서는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공과금 납입등 부가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고 다른 금융업종과 경쟁할 수 있는 유통 기반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험상품 특성상 만기가 길고 입출금이 빈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영업점이 은행 점포처럼 많지 않아 단기적으로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보험업법 개편방안 요약>

| 개정방향                | 세부 항목                   | 주요 내용  |
|---------------------|-------------------------|--|
| 보험사의 대형화·종합화·중합화·유도 | ■ 비은행지주회사 규제 완화 방안 검토   | ■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소유 규제를 완화하되, 비은행지주회사의 은행 소유금지, 계열사 간 출자구조의 단순·투명화 자회사간 부당한 내부거래 통제 등의 원칙을 적용 |
|                     | ■ 합병시 자회사 주식소유 비율 규제 완화 | ■ 보험사간 M&A를 통한 대형화 유도의 걸림돌 제거  |
|                     | ■ 겸영업무 확대               | ■ 투자자문/일임업무, 지급결제업무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
|                     | ■ 부수업무 포괄적 허용           | ■ 부수업무의 범위를 포괄주의로 전환   |
| 보험사업무 자율성 확대        | ■ 자회사 소유규제 개편           | ■ 자회사 소유규제를 포괄주의로 전환   |
|                     | ■ 외화자산 운용규제 완화          | ■ 지급보험금과 동일한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은 외환자산 운용비율(30%) 규제에서 제외   |
|                     | ■ 파생상품 자산운용 규제 완화       | ■ 총자산 3%의 거래한도를 유지하되, 투자유형의 제한을 철폐하고, CDS 등 일부상품 거래 허용   |

| 개정방향                |  | 세부 항목   | 주요 내용  |
|---------------------|--|---|--|
| 확대                  |  | ■ 부동산 자산운용 법적 근거 명확화  | ■ 부동산 취득/이용을 자산운용의 일환으로 규정                                 |
|                     |  | ■ 특별계정 자금차입 허용 확대   | ■ 일반계정으로부터 단기자금차입 허용                                       |
|                     |  | ■ 겸영/부수업무 구분계리 의무 명확화   | ■ 의무기준을 수입보험료 0.1% 또는 매출 10억원 이상에서 수입보험료 일정비율 적용           |
|                     | 상품 정의 신설   | ■ 보험상품 정의 신설  | ■ 보험의 기능적 요소를 기초로 포괄적 정의 규정 마련                             |
|                     |  | ■ 장외파생상품 제한적 취급 허용  | ■ 보험상품에서 제외되는 것 중 보험상품과 직접 관련있는 상품은 허용 (신용, 날씨파생상품)        |
|                     | 상품 개발 절차 자율화                                     | ■ 신고상품, 자율상품으로 이원화  | ■ 현행 심사체계가 유지되는 상품과 자율적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분류하고 신고상품 외에는 모두 자율화 |
| 판매채널 제도 혁신          | ■ 판매채널 제도 혁신                                     | ■ 보험판매플라자제도 신설  |  |
|                     | ■ 방카슈랑스 제도 보완                                    | ■ 방카슈랑스 4단계 및 교차판매제도 예정대로 시행  |  |
|                     |  | - 방카슈랑스 상품의 경우 입증책임과 배상책임을 판매 금융기관에게 부담, 판매대상 제한 규정 신설, 청구판매 임/직원수 제한 유지 준수 의무의 추가 및 위반행위 처벌 강화 |  |
|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제도 개선 | ■ 개인대리점 200만원, 법인대리점 500만원 규정을 1억원 한도에서 쌍방 자율 결정 |   |  |
| 소비자 보호 강화 장치        | ■ 적합성 원칙 도입                                      | ■ 일반투자자 대상 변액보험 판매권유시 적용  |  |
|                     | ■ 상품 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 강화                             | ■ 상품판매 시 주요 내용 설명 및 확인 의무 신설  |  |
|                     | ■ 소비자 구분에 따른 보호 차등화                              | ■ 자통법과 마찬가지로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지식 및 분석력 여부에 따라 보호 수준 차등화   |  |



| 개정방향       | 세부 항목  | 주요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과장광고 규제 근거 마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과장 광고 금지 규정 신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서류 준수 의무 신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 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제재조치 신설 및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장금제도 신설 범위만 사실 공포,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담당 임직원 제재조치 강화</li> </ul> |
| 제도 인프라 선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 정의 및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위의 보험건강공단 심사평가원 등 공공단체에 자료 요청권 신설</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보험 감독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유사보험에 보험업법 적용 추진</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기관 기능 재조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손보 협회, 보험개발원 기능 조정</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간 상호협정 관련 규제완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간 상호협정 시 사안에 따라 금감위 신고로 같음</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정보의 보호 및 이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법상 보인의 사전동의 조항에 대해 완화 요건을 보험업법에 제한적으로 열거</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형 재물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자격을 추가</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 재보험사의 손해사정사 확보의무 면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확보의무 예외를 명확하게 규정</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업 법령·규제 체계 명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임근거 및 의무이행기간의 명확화</li> </ul>                              |

### 3. 해외 보험규제 관련법

#### (1) 미 국

##### 1) 서 설

2009년 6월 17일 미국 정부는 재무부 명의의 “새로운 기반 : 금융감독 및 규제의 재확립”(A New Foundation: Rebuilding Financial Super-

vision and Regulation)이라는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동 개혁안에 대하여 미국 대통령은 금융위기 하에서 만들어진 최대 규모의 금융규제체제의 개편 방안이라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금융 개혁과 관련하여 동월 18-19일 양일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의 회원국 정상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역내 금융규제개혁(범유럽 금융감독기구 설립을 포함)에 논의가 되고 있다. 향후 미국의 이러한 개혁안은 미국뿐만 아니라 EU를 포함 전 세계의 금융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 미국 정부의 개혁안의 주요 내용

미국 오바마 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i) 금융회사에 대한 견고한 감독 및 규제의 촉진, ii) 금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체계의 확립, iii) 금융폐해(financial abuse)로부터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iv) 금융위기 관리에 필요한 수단을 정부에 제공, v) 국제적 규제기준 강화 및 국제적 공조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금융회사에 대한 견고한 감독 및 규제의 촉진”과 관련하여 미국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FRB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BCH) 외에도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금융회사, 즉 “Tier 1 FHCs”(Financial Holding Companies)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게 된다. “Tier 1 FHC”란 해당 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금융회사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금융회사의 규모, 레버리지, 상호연관성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FRB가 판단하게 된다. 여기에는 금융지주회사 이외에도 AIG 같은 보험회사, 대형 헤지펀드 및 PEF도 “Tier 1 FHC”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Tier 1 FHC”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경직된 규칙 중심이 아닌 유연한 원칙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와 함께 강화된 자본 및 건전성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나아가, “금융회사에 대한 견고한 감독 및 규제의 촉진”을 위해,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Financia Services Oversight Council: 이하 FSOC), 전국은행감독청(National Bank Supervisor: 이하NBS), 연방보험감독청(Office of Nationa l Insurance: 이하 ONI)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ONI는 연방정부 차원의 보험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부 산하에 설립될 예정이다. ONI는 금융시장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보험회사가 Tier 1 FHC에 포함되도록 FRB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시스템 리스크 관리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헤지펀드, PEF 등)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의 운영자는 투자자문업법(Investment Advisor Act of 1940) 상의 투자자문업자로서 SEC에 등록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며 SEC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FRB와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FRB가 해당 펀드가 Tier 1 FHC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적절히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한다.

둘째, “금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체계의 확립”을 위해 (자산유동화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장외파생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체계의 확립, FRB에 지급·청산·결제에 관한 새로운 권한 부여, 선물과 증권규제에 있어 SEC와 CFTC의 감독권한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금융폐해(financial abuse)로부터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및 금융투자상품의 투명성, 공정성, 적합성을 높이는 규제가 강화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이하 CFPA)이 신설되어 금융시장의 불공정·기망·남용행위로부터 금융상품(모기지나 신용카드 등) 소비자 보호에 힘쓰게 된다. SEC와

CFTC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에 관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며 기존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넷째, “금융위기 관리에 필요한 수단을 정부에 제공”하기 위해 FRB의 긴급대출 권한을 정비한다. FRB의 긴급대출에 대해 재무부 장관이 승인권을 가짐으로써 FRB와 재무당국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게 된다. 또한 은행지주회사 혹은 “Tier 1 FHC”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다섯째, “국제적 규제기준 강화 및 국제적 공조의 개선”을 위해 바젤II와 같은 국제적 자기자본규제의 틀을 강화하고,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개선하며, 국제적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공조를 높이고, 국제적 위기관리 수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 재무장관인 가이트너는 동년 6월 18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하여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금융혁신의 촉진, 위기관리 수단 강화의 순서로 금융규제 개혁을 시도할 것이라고 하였다.

## (2) 유럽연합

### 1) 서 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있어서 금융시장의 통합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금융자유화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반복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일국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에 기초한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및 금융감독시스템(financial supervision system)을 구축하는 것은 금융정책을 펴는 당국자들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EU의 금융시장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에 의한 단일통화정책과 유로화(euro) 통으로 인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미시경제적 효율성은 상승한 반면 거시경제적 측면의 불안정성의 가능성도 그 만큼 커졌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EU의 금융시장의 특징과 더불어 EU의 금융감독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EU금융시장의 특징

### ①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의 출현과 은행중심적 구조의 잔존

EU는 개별회원국 차원에서의 금융자유화를 기반으로 국가별 기준의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및 지침(directives)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통합을 추구하여 왔는데, 이는 1999년 ECB를 출범케 하였고 유로화를 도입하게 하였다. 그 결과 EU는 금융시장에 있어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통합은 급속도로 진전되었으며 금융시장 자체도 뚜렷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EU의 금융시장의 구조는 여전히 은행 중심의 시장(bank-based)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EU의 화폐금융 통합으로 인한 탈규제화 및 자유화 세계화는 개별 금융자산의 수익과 리스크를 수렴시키고 구채 및 회사채와 다양한 주식의 보유를 하는 기관투자자들을 증가시켰으며, 기업들의 주식발행을 통하여 직접 자금조달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은행간 경쟁과 통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중심적 금융구조는 지속되고 지역시장에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및 협동조합은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② 신규회원국의 자국 금융시스템의 미성숙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통합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EU의 통합에서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다수의 상이한 국가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서 시장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신규회원국들의 금융시장은 은행부문의 낙후성과 자본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신규 회원국들의 EU금융시장에로의 편입을 하게 될 경우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신규회원국들의 금융시장이 미성숙하게 된 원인은 신규회원국의 자국의 시장발전의 역사가 짧아 국내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손쉬운 방법인 외국자본을 유입시킴으로써 국내주식시장의 중요성 등을 간과하였고, 또한 몇몇 국가는 자국이 계획경제의 붕괴로 인한 반복적인 경기침체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외국자본의 유입이 EU의 신규 회원국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자산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선진적인 노하우가 전수되고, 자국내 은행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국제기준에 맞는 은행업의 양성, 경쟁촉진 등을 통한 금융시장의 성공을 유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국의 금융시장이 외국인투자자들 본국의 규제기관과 모회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선진적인 외국인 소유 은행들의 존재 그 자체가 자국의 은행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회원국들은 자국의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함께 외국 자본의 투기적 이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정립하여야 하였다.

## ③ EU의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감독의 중요성

금융시장의 급속한 통합이나 은행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 등은 시스템 리스크의 실현을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 판단에 의한 시장 참가자들의 완벽한 자기 감시와 책임이 전제되어야 하며 투명한 회계 제도 및 충실한 공시 제도를 통하여 상세하고 투명하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항상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시장참가자들은 금융기관의 부실화 징후에 대하여 과잉 반응을 하거나 다른 경제 주체의 투자행위를 모방하여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 금융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시장 규율의 효율적 작동을 위하여 금융시장에의 개입 여부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칙과 유인을 정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금융감독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EU차원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EU이 강화는 국가간 거래량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의 발원지가 매우 중요하다 즉, 리스크가 본점 내지 EU금융기관들의 본국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아니면 상호 인정 하에 운영되는 다른 회원국들 내에 있는 EU금융기관의 자회사나 지점에서 발생했는지, 또는 호스트(host) 국가에 의하여 규제되는 EU금융기관의 자회사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명백하게 구분하여 정책을 수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어떤 형태의 리스크가 발생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EU의 제도적 구조와 연관되는 문제로, 예를 들면, 유동성 위기는 호스트 국가에 의하여 신용시장 또는 지급능력과 관련된 리스크는 본국에서 은행간 청산 및 지불결제시스템의 리스크는 ECB와 각 중앙은행들이 국제금융거래의 관행에 따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EU의 특성에 적합한 금융감독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EU금융감독 시스템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그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3) 현행 EU금융감독시스템

EU의 금융감독 및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는 보조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에 근거하여 은행과 금융감독의 임무는 각 회원국에게 부여되고 건전성 규제 정책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조화(harmonization)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의 두 축은 국가별 규제기관들 간의 상호인정과 본국 통제의 원리이다.

각 회원국들의 감독구조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사업 영역에 따라 분리된 관할기구를 가지는 유형으로 그리스,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스페인 스로베니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등이 포함된다. 핀란드와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증권업과 은행업 감독에 대한 책임은 하나의 기관이 그리고 분리된 다른 기관이 보험감독을 담당한다. 둘째 단일한 금융감독기관을 설립한 유형으로는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몰타,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이 있다. 셋째 사업 영역을 구별하지 않고 목적에 따라 감독과 관련된 책임성을 할당하는 국가들이다. 즉, 기능에 따라 두 개의 조직으로 구분하여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른 기관은 투명성을 강화시키면서 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네델란드와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증권업 및 보험업이 하나의 감독기구에 의하여 감독되고 있다.

각 회원국들의 금융감독 시스템의 특징은 첫째 감독기구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신규 회원국들의 금융감독시스템도 EU의 기존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감독구조의 통합화가 진전되어 부문별 접근에서 포괄적 감독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은행 감독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금융시스템의 감독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연루되어 있다. 즉, 중앙은행은 감



독기관의 관리나 금융 감독에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관련된 특정한 감독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의 축적 및 공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금융 안정에 기여하는 담당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정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의 금융감독시스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U 25개 회원국의 금융감독시스템<sup>37)</sup>>

| 국 가   | 은 행 업   | 증 권 업  | 보 험 업  |
|-------|---|--|--|
| 그리스   | 중앙은행  | Capital Market Commission                    | Directorate of Insurance Enterprises and Actuaries |
| 네덜란드  | 중앙은행  | 중앙은행,<br>Authority for the Financial Markets | Pension and 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        |
| 덴마크   | 단일감독기관(Danish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  |  |
| 독일    | 단일감독기관(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  |  |
| 라트비아  | 단일감독기관(Finance and Capital Market Commission)       |  |  |
| 룩셈부르크 | Financial Sector Supervisory Commission             |  | Insurance Commission                               |
| 리투아니아 | 중앙은행  | Lithuanian Securities Commission             | State 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              |
| 몰타    | 단일감독기관(Malt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  |
| 벨기에   | 단일감독기관(Banking, Financial and Insurance Commission) |  |  |
| 사이프러스 | 중앙은행  | Cypr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Insurance Companies Control Service                |
| 스웨덴   | 단일감독기관(Swedish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  |  |

37) European Central Bank, “Developments in National Supervisory Structures,”(2003), pp. 6-18.

3. 해외 보험규제 관련법

| 국 가   | 은 행 업   | 증 권 업   | 보 험 업   |
|-------|---|---|---|
| 스페인   | 중앙은행  | National Securities Market Commission   | Ministry of the Economy's Directorate-General Insurance and Pension Funds |
| 슬로바키아 | 중앙은행  | Slovakian Financial   | Market Authority  |
| 슬로베니아 | 중앙은행  | Securities Market Agency  | Insurance Supervisory Agency  |
| 아일랜드  | 단일감독기관(Irish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 |   |   |
| 에스토니아 | 단일감독기관(Estonia Financial Supervision Authority)       |   |   |
| 영국    | 단일감독기관(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   |
| 오스트리아 | 단일감독기관(Financial Market Authority)                    |   |   |
| 이탈리아  | 중앙은행  | 중앙은행 Securities Commission  | Insurance Supervisory Institute   |
| 체코    | 중앙은행  | Securities Commission   | Czech Office of Insurance   |
| 포르투갈  | 중앙은행  | 중앙은행 Securities Commission  | Insurance Institute   |
| 폴란드   | Commission of Banking Supervision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Insurance and Pension Funds Supervisory Commission                        |
| 프랑스   | Banking Commission <sup>38)</sup>                     | Securities Commission, Financial Market Council, Financial Discipline Council | Insurance Supervision Commission,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
| 핀란드   | Finnish Financial Supervision Authority               |   | Insurance Supervision Authority   |
| 헝가리   | 단일감독기관(Hungari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   |   |

38)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Credit Institutions and Investment Companies, Committee on Banking and Financial Regulation 등이 은행업 감독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음.

#### 4) EU 금융감독시스템의 개혁 방향

##### ① 배 경

EU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를 금융 감독의 실패를 들고 있다. 즉, 금융위기를 통해 헤지펀드와 같은 특정 부문의 감독 실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감독시스템의 운영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현재의 EU금융감독체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국가간 금융거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협력·조정·일관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EU금융시스템 감독 관련 개혁방안은 2009년 2월에 발표된 ‘EU금융감독시스템 관련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2009년 3월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작성되었으며, 2009년 6월 EU정상회담에 상정되었고, 동년 9월 23일 그 개편안이 확정되었다.

##### ② 금융감독시스템 개혁의 기본 방향

EU 금융감독 시스템의 개혁은 거시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EU시스템 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Council, ESRC)와 미시적 금융 감독 업무를 수행할 EU금융감독기구(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 ESFS)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가) EU 시스템 리스크 위원회(ESRC)

EU는 전 세계 금융시스템 감독의 실패는 거시적 금융 감독 실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있다. 즉, 거시적 금융시스템 감독 실패 원인을 ‘신용 확장에 따른 초과 신용 급등하는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금융리스크 저평가’ 등을 조기 발견하지 못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G20과 미국은 이러한 거시적 금융 감독의 실패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융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감독기구의 창설을 준비하였다. G20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안정화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를 설립하여, IMF와 공동으로 글로벌 거시 금융리스크에 대한 조기 경고를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도 자국의 금융시스템의 거시적 감독을 강력하게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기관 설립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EU 또한 G20, 미국, 제3국의 유사 감독기구와 공조하는 ESRC를 신설하여 거시적 금융 감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ESRC가 금융위기로 인하여 직면하게 될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목표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 문 제 점                               | 운 영 목 표                           | 실행계획  |       |       |
|-------------------------------------|-----------------------------------|-------|-------|-------|
|                                     |                                   | 평가 체계 | 조기 경고 | 실행 여부 |
| 현재의 EU감독체계는 미시적 감독에 치중              | EU의 거시적 리스크 파악, 개별 금융감독기관의 연계성 분석 | ○     | ○     | -     |
| 감독자, 중앙은행, 재무부간이 정보교환에 법적·실무적 장벽 존재 | 거시적 리스크 관련 정보 공유 절차 확립            | ○     | ○     | -     |
| 적정한 EU수준의 조기경보체계의 부재                | 동인별 조기경보 발효, 행동지침 명령              | ○     | ○     | ○     |
| 거시적 리스크 조기경보를 실행 단계화하는 주무부서 부재      | 조기경보와 행동지침에 대한 실행 여부 확인           | ○     | ○     | ○     |
| 거시적 가목 체계에 대한 국제적 협력 부족             | 국제기구와의 효과적인 협력                    | ○     | ○     | ○     |

ESRC의 위원은 현재 거시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ECB, EU금융감독청장, 각국 중앙은행장의 선출권을 갖는 등 ESRC의 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ESRC가 거시적 금융감독을 수행하지

만 미시적 금융감독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ESFS 산하의 3개 EU금융감독청장을 ESRC의 일원으로 포함시켜 보완하기로 하였다.

<ESRC의 구성>

| 정규회원                    | 참관회원(옵저버)       |
|-------------------------|-----------------|
| 의장:ECB총재(미확정)           | 27개 회원국 금융감독 대표 |
| 부의장:非유로지역에서 선출(미확정)     | EFC의 의장         |
| 27개 회원국의 중앙은행장          | -               |
| ECB부총재                  | -               |
| ESFS산하 3개 EU금융감독청장      | -               |
| European Commission의 회원 | -               |

이에 따라 각국 은행들은 ECB와 연계한 거시적 금융감독 수행을 위해 중앙은행장들이 ESRC의 일원으로 참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향후 중앙은행장들이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 대표자를 참관회원(옵저버) 형식으로 참석시키는 1+1의 형식이 예상된다. 또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스템리스크 분석을 위해 각국의 재무부장관은 ESRC 구성원에게 배제하기로 했으나,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조치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EU경제·재정위원회 의장을 ESRC 참관회원으로 참석시키기로 하였다.

ESRC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금융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각국에 대한 ESRC의 경고 및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나 구제금융 조치는 6월 정상회담에서 예외사항으로 분류된다.

(나) EU금융감독기구(ESFS)

국제공조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위기대처는 동일한 규정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U 전체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기 때문에 ESFS를 설립하고 동기관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적 금융감독을 수행하며 특히 다국적 금융기관 감독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EU금융감독위원회는 업무범위와 권한이 확대된 EU금융감독청으로 전환되어 ESFS에 소속되며,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간 금융감독 분쟁을 해결할 예정이다. 즉, 기존의 3개 은행·보험·증권 감독위원회는 EU은행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 EU보험퇴직연금감독청(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EU증권감독청(ESA: European Securities Authority)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비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가 감독권을 행사하지만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 감독자 협의체에 EU금융감독청이 참가하여 제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SFS가 금융위기로 인해 직면하게 될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목표 및 구체적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ESFS의 운영목표 및 실행계획>

| 문 제 점           | 운영 목표                      | 실행계획                 |                 |          |                       |
|-----------------|----------------------------|----------------------|-----------------|----------|-----------------------|
|                 |                            | 모자<br>국가<br>감독<br>균형 | 감독<br>수준<br>평준화 | 위기<br>방지 | 피감<br>기관<br>비용<br>효율성 |
| 국가 간 감시 및 감독 실패 | 다국적 금융기관과 母<br>子국가 감독균형 확립 | ○                    | ○               | -        | -                     |
| 국제공조 부족         | 구속력 있는 규정 제정               | -                    | ○               | ○        | ○                     |

제 3 장 입법평가기준으로 보험 규제 관련법 제도 분석

| 문 제 점                        | 운영 목표                      | 실행계획                 |                 |          |                       |
|------------------------------|----------------------------|----------------------|-----------------|----------|-----------------------|
|                              |                            | 모자<br>국가<br>감독<br>균형 | 감독<br>수준<br>평준화 | 위기<br>방지 | 피감<br>기관<br>비용<br>효율성 |
| 감독관행 격차                      | 감독관행의 일관성 제고               | ○                    | ○               | ○        | ○                     |
| 동일 금융회사 감독책임소재 모호            | 감독자 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 보장        | ○                    | -               | ○        | ○                     |
| 국가별로 분산된 감독시스템               | 피감독기관 정보공유기관 설립            | -                    | ○               | ○        | -                     |
|                              | EU수준의 국가간 M&A 평가           |                      |                 |          |                       |
|                              | 위기상황시 조정권 강화               |                      |                 |          |                       |
|                              | 제3국가와의 협력 강화               |                      |                 |          |                       |
| 특수 금융기관(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 부재 | EU 금융기관 허가 감독권을 새로운 조직에 이양 |                      |                 |          |                       |

이러한 ESFS는 EU금융감독청장과 EU위원회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ESFS의 최상위 의결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ESFS의 구성>

|  |
|--|
| I. 조정위원회(최고 의결기구) : 3개 EU금융감독청장 및 EU위원회    |
| II. 3개 EU금융감독청                             |
| - EU금융감독청 이사회: 3개 EU금융감독청장 및 회원국 금융감독청장    |
| - EU금융감독청 운영위원회: 회원국 금융감독청 대표자, EU위원회 대표   |
| -참관회원: EU위원회 대표, ESRC 대표, 기타 비회원국 금융감독청 대표 |
| III. 개별 국가 금융감독청                           |

나아가, EU금융감독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EU내 단일 감독 규정 마련, 일관성 있는 법규 적용, 국가간 감독 공조문화 정착 충분한 감독권 이양, 조정능력 및 세부 감독정보 수집권 부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과 관련해 국가간 의견 대립시에는 우선 EU금융감독청의 조정 절차를 거치며 조정이 실패할 경우 EU금융감독청 직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간 감독 공조문화 정착을 위해 EU금융감독청은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원국 감독자 모임에 참관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EU금융감독청은 향후 EU지역 내 신용평가기관과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정산소(clearing house)의 인허가, 현장 감독권, 금융기관 간 M&A 평가 및 공매도 금지와 같은 비상조치권도 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 정보 수집을 위해 EU금융감독청의 관리를 받는 EU중앙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며, 취합된 정보는 각국의 금융감독청과 ESRC에 전달될 예정이다. EU금융감독청의 권한은 EU 조약 226조와 228조(회원국 간의 상호 책임을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예정이며 법적 구속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 5) 유럽정상, 금융개혁 방안 합의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009년 6월 18~19일 정상회의를 갖고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EU는 2010년부터 위에서 이미 언급한 ESRC와 ESFS를 설립하여 거시적·미시적 금융감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금번 정상회담에서는 영국의 반대로 EU의 상정(안)과는 달리 ESRC의 구제금융 의사결정에 제한을 두기로 합의하여, 회원국 정부 재정에 대한 간섭 불가 원칙을 합의문에 명시하였다. 이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 미국의 금융시스템 감독개혁안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향후 새로 설립될 EU시스템리스크위원회 의



장도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 (3) 영 국

#### 1) 서 설

영국에서는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Markets Act 2000; 이하 FSMA)을 제정한 이래 소비자의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중에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투자형 상품 판매에 관한 규칙(COB: Conduct of Business)’ 이외에 2005년 1월 ‘보장성상품판매에 관한 규칙(ICOB:Insurance Conduct of Business)’을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일단락되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 작업은 2005년 영국 금융감독청(FSA)을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개선 실행계획(Better Regulation Action Plan)을 마련하였다.

위의 계획의 개선 방향으로는 ①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하며 공정한 시장 형성, ② 소매 고객의 공정한 거래 지원, ③ 감독의 효율성 추구를 제시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청은 2006년도 연간계획에서 규제비용 절감 및 규칙간소화를 위한 ‘원칙적 감독방식(principles-based regulation)’을 제시하였다. 원칙적 감독방식이란 규제 제정이 필요한 경우는 대원칙만 정하고 대신 내부통제체제를 확립하고 시니어 매니저에게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상품 개발이나 양질의 고객 서비스의 제공을 지향하는 것으로, 기존의 규제 위에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서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는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통한 효율성 강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 2) 규제비용 절감

영국은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청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비용대비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 대표로 구성된 영국 금융감독청의 자문기관인 실무자 패널이 격년제로 실시하는 업계조사(응답회사 4,000개사 이상)에 따르면, 2004년 조사 및 2006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내부통제비용이 과다’하며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물론 이러한 분석에 대하여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을 과소평가한 반면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금융감독청은 2008년말까지 현재 규제비용의 80%를 차지하는 활동들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2005년부터 회계사무소, 컨설팅회사 등 복수의 외부기관에 관련 조사를 위탁, 진행하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금융감독청에 대한 보고 비용’과 ‘제3자(주로 소매고객)에 대한 정보공개 비용<sup>39)</sup>’의 측면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2006년 6월 발표된 컨설팅회사 Deloitte사의 ‘소매투자·연금 어드바이스 관련 규제비용 조사(The cost of Regulation study : Commissioned b the FSA and the Financial Services Practitioner Panel)에 따르면, 규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상위 20개 규칙 중 11개가 ‘어드바이스와 판매’와 관련되어 있으며, 1위는 ‘적합성 레터의 작성’으로 2위 이하 규제와의 비용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12월 발표된 컨설팅회사 Real Assurance Risk Management의 ‘제3자(특히 소매고객)에 대한 정보공시에 따른 비용’<sup>40)</sup>조사에 따르면, 투자형 보험·연금의 경우 정보공시에

39) 판매중인 입장에서의 공시 및 판매시 상품설명자료, 판매 후 고객에 대한 정기 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0) Estimation of FSA third party administrative burdens. 5개 시장(투자형보험·연금, 투자신탁, 모기지,보장성보험, 주식브로킹)에서 샘플회사를 추출하여, 상품설명자료(판매중개자의 입장 및 상품내용을 표시하는 자료)의 준비 비용, 니드확인서 및 계

필요한 추가시간비용이, 보장성 상품의 경우 상품설명자료 준비비용 및 정보공시를 위해 필요한 추가시간비용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3) 규제 간소화(원칙적 감독방식 추진)

위에서 언급한 원칙적 감독방식을 통한 규제간소화는 영국 금융감독청이 설립 당시부터 지향하고 있는 목표였으나 실제로는 빈번한 규칙 개정으로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면, ‘투자형 상품 판매에 관한 규칙’의 경우 금융시장서비스법 제정 이전부터 있었던 자율규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판매(mis-selling) 및 부적절한 구입(mis-buying)으로 인한 빈번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규제만 복잡해져 오히려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세계 적격개인연금 판매규칙, 판매시 고객에 대한 정보공시, 권유행위(financial promotion) 규칙 등의 간소화가 추진되고 있다. ‘세계 적격개인연금 판매규칙’의 경우, 세계 적격 개인연금에 대한 과거 부적절한 판매행위로 인해 판매시 의향확인서 및 적합성 판단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후 판매가 부진하면서, 현재 국민저축률 향상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또한 판매시 고객에 대한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보장성 상품의 경우 상품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계약개요(Policy Summary)의 도입, ‘투자형 상품 판매에 관한 규칙’에서 권유행위(financial promotion)규칙은 상품별로 시행세칙이 마련되어 있고, 각 상품별로 판매자료에 기재할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등 판매중개업자에게 보다 많은 내용을 공개하도

---

약서 준비와 법령준수확인비용, 거래확인비용, 고객에 대한 정보공시에 필요한 추가시간비용(판매프로세스의 장기화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비용), 고개에 대한 정기 보고비용 등을 측정한다.

록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정보량이 너무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시행세칙을 정리하고 권유행위 규칙에서는 원칙적인 내용만을 기술하는 한편 회사들이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 (4) 프랑스의 금융안전법

##### 1) 서 설

프랑스에서는 2003년 7월 17일에 「금융 안전에 관한 법률」(Loi de sécurité financière) (이하 「금융 안전법」이라 함)이 국회의회에서 가결 성립하고, 8월 1일에 공포된 것이다. 동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1장 금융 규제 감독기관의 통합과 재편(Modernisation des autorités de contrôle 금융 감독기관의 현대화), 제2장 금융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의 강화(Sécurité des épargnants et des assurés 투자가와 보험계약자의 안전), 제3장 회계감사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 통치의 개선(Modernisation du contrôle légal des comptes et transparence 회계의 법적 규제의 현대화 및 투명성)으로 대별된다. 다만, 법전체는 통화금융 법전, 보험 법전, 상법전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개개의 조문의 내용도 극히 다방면에 걸쳐 있어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2) 금융안전법의 주된 내용

금융안전법에서 실현된 금융 규제 감독기관의 재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된 것은 증권·투자서비스 분야에 있어서의 규제 감독을 일원화하고 또한 보험 분야에서의 감독기관의 통일을 하고자 함이다. 그 전모는 금융안전법 이전과 이후 금융 전영역의 규제 감독기관

의 업무분담을 보면 알 수 있다.

<프랑스 금융규제 감독기관>

- 금융안전법 시행 이전

|                    | 상호보험<br>조직                               | 보험회사                                   | 여신기관   | 투자<br>서비스<br>회사   | 금융<br>시장   | 자산관리회사  |
|--------------------|--|--|--|---|--|---|
| 규 제                | 사 회 문<br>제 · 고<br>용 · 연<br>대 성 (連<br>帶省) | 재무성                                    | 은 행금<br>용<br>규 제위<br>원<br>회(CRBF)                                      | 증 권거<br>래위<br>원<br>회<br>(COB)<br><br>증 권거<br>래위<br>원<br>회<br>(COB)/금<br>용시<br>장<br>평<br>의<br>회(CMF)       |  | 증 권거<br>래위<br>원<br>회(COB)   |
| 자문사항<br>에 관한<br>심의 | 상호보험<br>조직고<br>등 평 의<br>회<br>(CSM)       | 전국보험<br>평 의 회<br>(CNA)/보<br>험자문위<br>원회 | 은 행금<br>용<br>규 제위<br>원<br>회(CRBF)/<br>신용 · 증<br>권 전국<br>평<br>의회(CNCT)  | 증 권거<br>래위<br>원<br>회<br>(COB)/금<br>용시<br>장<br>평<br>의<br>회(CMF)  |  | 증 권거<br>래위<br>원<br>회(COB)/재<br>무<br>관<br>리<br>규<br>율<br>평<br>의<br>회(CDGF) |
| 양식적<br>행동규범        | 상호보험<br>조 직 ·<br>공제조합                    | 보험감독<br>위 원 회<br>(CCA)                 | 은 행 위<br>원<br>회(CB)  | 금<br>용시<br>장<br>평<br>의<br>회<br>(CMF)  |  |   |
| 경영건전<br>성감독        | 감독위원<br>회(CCMP)                          |  |  |   |  |   |
| 면허교부               | 사 회 문<br>제 · 고<br>용 · 연<br>대 성 (連<br>帶省) | 재무성                                    | 여 신 기<br>관 · 투<br>자<br>서<br>비<br>스<br>회<br>사<br>위<br>원<br>회<br>(CECEI) | 여신기<br>관 · 투<br>자<br>서<br>비<br>스<br>회<br>사<br>위<br>원<br>회<br>(CECEI)<br>/금<br>용시<br>장<br>평<br>의<br>회(CMF) | 여신기<br>관 · 투<br>자<br>서<br>비<br>스<br>회<br>사<br>위<br>원<br>회<br>(CECEI) | 증 권거<br>래위<br>원<br>회(COB)   |

- 금융안전법 시행 이후

|                              | 상호보험<br>조직                                   | 보험회사                                      | 여신기관                         | 투자서비<br>스회사     | 금융시장 | 자산관리<br>회사 |
|------------------------------|--|---|------------------------------|-----------------|------|------------|
| 규 제                          | 사 회 문<br>제 · 고<br>용 · 연대<br>성(連帶省)           | 재무성                                       |                              | 금융시장<br>기구(AMF) |      |            |
| 자문사항<br>에 관한<br>심의           | 상호보험<br>조직고등<br>평 의 회<br>(CSM)               | 금융법규제자문위원<br>회(CCLRF)/금융부문<br>자문위원회(CCSF) |                              |                 |      |            |
| 양 식 적<br>행동규범<br>경영건전<br>성감독 | 보 험 회 사 · 상 호 보<br>험 · 공제조합감독위<br>원회(CCAMIP) |   | 은행위원회(CB)                    |                 |      |            |
| 면허교부                         | 사 회 문<br>제 · 고<br>용 · 연대<br>성(連帶省)           | 보 험 회 사<br>위 원 회<br>(CEA)                 | 여신기관 · 투자서비스회사위원<br>회(CECEI) |                 |      |            |

① 증권 규제 감독기관의 통합 - AMF 의 설립

(가) 조 직

증권 분야의 규제 감독 업무의 원칙적인 일원화는 새로이 설립되는 금융시장기구(AMF)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동법의 제정 전까지는 증권 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 기능은 3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투자 상품의 안전성 확보, 투자자에게 대한 정보 제공, 시장의 안정 유지라고 하는 감독업무를 실시하는 독립 행정 기관(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인 증권거래위원회(COB), 시장 운영의 일반 원칙의 책정이나 투자 서비스 회사에 대한 규제 등 주로 증권시장 관계업자에 대한 규제나 감시를 담당하는 업계내 기구(민법상의 조직)인

금융시장평의회(CMF), 그리고 OPCVM (투자신탁) 등 자산관리업에 대한 제재 기능을 가지는 재무관리 규율 평의회(CDGF)의 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AMF는 이러한 3개의 금융조직을 통합하여 업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MF는 총재,<sup>41)</sup> 참사회(collège)<sup>42)</sup>와 징계별이나 행정별 등 제재 권한에 관한 심의를 담당한 상설위원회로서 제재위원회<sup>43)</sup> 및 필요에 의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 (나) 업무와 권한

첫째, AMF는 업무를 집행하고 일반규칙을 제정한다. 재무대신의 인가를 거쳐 제정된 일반규칙 속에는 주식의 공개나 금융상품 거래에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직업적 실무규칙, AMF의 감독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이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양식적 행동규범, 기타 투자 서비스 회사나 자산관리 회사에 대한 규범, 주식 공개 취득에 관한 규범 등이 포함된다(동법 제8조).

둘째, 증권거래가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지, 시장 참가자가 직업상의 의무를 존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또한 필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인 등의 외부 조직에 대하여 감독행위 내지 조사를 위탁할 수도 있다. 반면 조사받는 자는 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조사거부를 할 수 없다(동법 제 11조). 한편 긴급시에는, AMF는 대심 재판소에 청구해 자산 가처분이

---

41) 총재는 임기 5년에 재선 불가하며 다른 공직을 겸할 수 없다.

42) 참사회는 16명으로 구성되고, 구체적으로는 총재, 국무원 평정관, 파훼원(破毀院) 재판관, 회계원재판관, 프랑스 은행 대표, 국가 회계 평의회 위원장, 원로원 의장·국민의회 의장·경제사회 평의회 의장에 의해 그 직업적 견식·경험에 근거해 임명되는 유식자 각 1명, 주식 공개 회사(35)와 증권업계의 대표 6명, 종업원 주주 대표 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43) 제재 위원회는, 국무원 평정관 2명, 파훼원 재판관 2명, 주식 공개 회사와 증권업계의 대표 6명, 증권회사 종업원 2명의 12명으로부터 구성된다. 이 또한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다.

나 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도 한다(동법 제12조). 이 외 위법 행위를 정지시키기 위한 직접 명령권을 발동하거나, 파리 대심재판소에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동법 제13조).

셋째, AMF 가 가지는 권한으로는 증권관계업자가 직업상의 의무에 반했을 경우의 징계벌이나 투자가의 이익이나 시장 운영에 손해를 준 행위에 대한 행정벌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동법 제14조).

#### (다) AMF 이외의 증권 감독기관

동법이 제정되기 전 투자 서비스 회사나 시장 관계업자에 대한 경영 건전성의 감독 업무는 은행 위원회(CB)가, 면허교부업무는 여신기관·투자서비스회사위원회(Comité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et des Entreprises d'Investissement : 이하 CECEI라 한다)가 행하고 있었다. 금융안전법에서는 양 기관의 소관 영역은 기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AMF에 의한 증권 분야의 규제 감독 업무 일원화에 관한 예외 부분이 남아 있었다. 또한 투자서비스회사에 대한 면허 교부의 전제로서, 업무 계획을 금융시장 평의회(CMF)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이 규정은 자산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폐지되었다(동법 제40조).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CMF와 CECEI가 관할하던 투자서비스 회에 대한 면허교부업무가 CECEI에 일원화된 것이다.

#### ② 보험 감독기관의 통합과 재편

##### (가) 보험회사와 상호보험 조직과의 감독기관 통합 - CCAMIP의 설립

프랑스에서 보험업무를 행하는 조직의 형태로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더불어 상호보험 조직이나 공제 조합이 있다. 감독기관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 감독 위원회(CCA), 상호보험 조직·공제 조합에 대해서는 상호보험조직·공제 조합 감독 위원회(Commission de Contrôle des Mutuelles et des Institutions de Prévoyance ; 이하 CCMIP라 한다)



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금융안전법의 제정에 따라 양자가 통합되어 새로이 보험회사·상호보험 조직·공제 조합감독위원회(Commission de Contrôle des Assurances des Mutuelles et des Institutions de Prévoyance ; 이하 CCAMIP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동 기관의 조직으로는 AMF와 공통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CCAMIP는 법인격을 가지는 독립 공적 기관이며, 감독대상조직으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하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사적인 측면에서는 공법에 근거한 직원과 민법에 근거한 종업원이 병존하는 것으로 유연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30조). 또한 CCAMIP는 위원장 이외 프랑스은행총재, 국무원 평정관, 과월원 재판관, 회계원재판관, 전문가 4명의 합계 9명으로부터 구성되고,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재무성국고 국장과 사회 문제·고용·연대성(連帶省)사회 보장 국장이, 표결권이 없는 정부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3조).

이 외에도 CCAMIP는 법령의 준수나 경영 건전성의 확보 등의 관점에서 보험회사 등 대상 조직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동법 제30조), 또한 적절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발표하는 것 외, 법령위반이나 경영 건전성에 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발동할 수도 있다(동법 제32조). 다만, 업무나 권한의 관점에서 이번 조직통합은 양 기관의 권한을 하나로 통일한 것일 뿐 새로운 요소가 더해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 (나) 보험면허 교부기관의 설립

보험 분야에서는, 동법이 제정되기 전 재무성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보험회사의 면허 교부나 자산이전에 관한 업무가, 보험회사 위원회(Comité des Entreprises d'Assurance; 이하 CEA라 한다)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었다(동법 제29조). 이것은 은행이나 증권의 분야에서 면허

교부를 전문에 소장하는 여신 기관·투자 서비스 회사 위원회(CECEI)가 있는데, 이를 모방하여 제도 개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호보험조직이나 공제조합의 면허 교부에 대해서는 사회문제·고용·연대성이 계속하여 권한을 갖는다.

(다) 기타 규제 감독기관 재편

가) 자문기관의 정리 통합 - CSF, CCLRF의 설립

방카슈랑스라고 표현되는 여신 기관(은행 등) 분야와 보험 분야의 상호참가에 대한 대응책은, 금융안전법에서 검토대상으로 하였던 것 중의 하나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문에 응해 여러 문제에 관한 심의를 실시하는 기관이 양분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도록 동법에서 정하고 있다. 우선, 주로 금융기관과 그 이용자와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심의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증권 전국 평의회(Conseil National du Crédit et du Titre; 이하 CNCT라 한다)와 보험자문위원회(Commission Consultative de l'Assurance)를 통합해, 금융 부문 자문위원회(Comité Consultatif du Secteur Financier; 이하 CCSF라 한다)를 설립되었다(동법 제22조). 한편 법령, 유럽 공동체 규칙이나 지령 등 금융관계 법규를 초안 단계에서 검토하는 기관으로서, 은행 금융 규제 위원회(Comité de la Réglementation Bancaire et Financière; 이하 CRBF라 한다)와 전국 보험 평의회(Conseil National des Assurances; 이하 CNA라 한다)를 통합해, 금융 법제 규제 자문위원회(Comité Consultatif de la Législation et de la Réglementation Financières; 이하 CCLRF라 한다)를 창설하였다(동법 제26조).

금융안전법에서는, 경영 건전성의 감독이나 면허교부 등의 영역에서는 여신 기관 분야와 보험 분야의 감독기관의 통합은 행해지지 않았지만, 양 기관들이 협력하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은행위원회(CB)와 보험회사·상호보험 조직·공제 조합 감독 위원회(CCAMIP)

에 붙여, 위원장이 각각 다른 위원회의 멤버가 되는 것, 임기를 양 위원회 모두 5년으로 한 점, 정기적으로 합동 회합을 개최하는 것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동법 제30조 제34조). 또한 CRBF가 CCLRF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종래 CRBF가 관할하고 있던 여신 기관에 관한 규제 권한이 재무성에 이관되었다(동법 제28조).

#### 나) 금융기관의 합병에 관한 감독 권한

2003년, 프랑스 대형 은행인 크레 디·아구 리콜이 같은 대형 은행인 크레 디·리요네를 매수했는데, 이때 합병 행위에 대한 감독·인가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이미 전술의 여신 기관·투자서비스 회사위원회(CECEI)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논란의 과정 속에서 입법이 된 금융안전법에서는 이에 대한 권한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다.

우선, 재무성에서 합병 등의 기업 집중 안건이 경쟁 평의회(Conseil de la Concurrence)에 상정된 것과 관련하여, 동 안건이 여신 기관이나 투자서비스 회사에 속한 것인 경우에는 경쟁 평의회는 CECEI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하여야 하고, 반면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위원회(CEA)에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또한 CECEI(보험회사에 대해서는 CEA)는 본래의 감독 대상인 경영 건전성의 관점으로부터, 기업 집중을 가져오는 거래에 대한 인가 권한도 갖는다(동법 제25조).

#### ③ 금융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의 강화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등에게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규정의 정비, 금융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국제화·정보화,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복잡화, 일반의 소비자에 의한 금융거래의 활발화 등이 진전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금융안전법은 제2

장에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소비자보호의 제과제를 다루고 있다. 다만 이러한 영역을 전면에 제시한 법률이 아닌 것도 존재하므로 여기에서는 몇 개의 테마만을 단편적으로 다룬다.

#### (가) 거래권유에 관한 제 원칙

금융 안전법으로 말하는 거래 권유(démarchage)란 금융기관 등의 측에서 고객에게 콘타쿠트를 취해, 증권이나 투자신탁 등(보험은 제외)의 금융거래를 권유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지만, 이 법률에서는 예를 들면, 전자 메일을 개인의 메일 주소에 송신해 상품을 소개하는 것 같은 사례도 거래 권유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번 입법에서는 지금까지 단편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온 거래 권유에 관한 법제를 정리 통합해, 정보화 등의 동향으로 대응하고 규제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거래 권유를 실시하려는 금융관은 실제로 권유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이 권유원(勸誘員)은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 권유원이 이 업무를 행할 때에는 먼저, AMF나 여신투자서비스 회사위원회(CECEI)라고 하는 감독 당국에 등록을 하여 권유 시에는 등록번호를 고객에게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감독 당국은 권유원의 정보를 수집하여 전자 파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권유원은 반드시 민사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권유와 관련해서는 권유원은 고객의 가계(家計) 상황이나 금융상품에 관한 지식의 유무의 고려를 전제로, 고객의 판단에 이익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원본을 모두 잃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의 상품에 대해서는 권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 금융상품계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7일간의 쿨링오프기간이 14일 간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유원이 고객을 방문해 주식이나 투

자신탁인 어떤 매매를 할 경우에는 48시간의 검토시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50조).

(나) 금융투자고문업자에 대한 규제

지금까지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자산 관리 고문업자로 불리는 업종에 대해, 금융안전법은 「금융 투자고문업자」(conseillers en investissements financiers)라고 하는 규정을 새롭게 둬으로써 직업의 공인과 함께,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부터 이 업종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였다. 금융 투자고문업자는, 투자나 금융거래에 관한 조언을 업(業)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주로 자산가를 고객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조언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단지 거래의 중개만을 하는 위에서 언급한 권유원과는 구별된다. 금융투자고문업자는 거래의 권유원과 같이 민사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자율 규제를 행하는 직업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직업단체는 AMF로부터 인가를 받고 직업윤리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동법 제55조).

(다)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 서비스 가운데로 보험에 관한 소비자보호로서, 금융 안전법은 두 가지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손해보험 중 자동차 등의 의무적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손해보험회사가 만일 파탄을 했을 경우 계약자보호제도가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무보험자 등이 야기한 교통사고나 수렵사고와 관련하여 그 손해를 부담해온 교통·수렵재해보증기금을 새로운 의무적 손해보험보증기금(Fonds de Garantie des Assurances Obligatoires de dommage; 이하 FGAO라 한다)으로 개편하여 회사 파탄시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체제로 정비되었다(동법 제81조).

또한 생명보험의 계약자에 대해서는 정보공시에 관한 개혁이 도모되었다. 보험가입을 할 때에 지금까지 계약 당초 8년 내에 해약을 했을 경우 반환액이 견적서에 기대되어 있었으나, 향후는 보험료 불입액이 병기되어 해약조건의 평가가 이전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특히, 보험투자 대상이 되었던 OPCVM(투자신탁)의 운용 상황에 관한 정보도, 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화하였다(동법 제85조).

(라) 소비자금융에 있어서 과잉여신의 방지

금융안전법에는 프랑스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 채무 문제에 관한 대응책도 몇 가지 포함된다. 우선, 소비자 금융의 광고에 있어서는 가게의 사정에 대해 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론(loan)을 받는 것도 가능해지고, 론을 편성할 때 금전상의 대가를 없게 하여 자금에 여유가 생기는 것 등을 시사하는 문언은 금지된다. 또한 소비자 금융업자로부터 론 계약의 갱신시 계약 내용의 변경이 제안되어도 차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7조).

위에서 언급한 것이 과잉 여신에 대한 예방적 대응인 것에 대하여 이미 과잉채무에 빠져 있는 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융안전법과 같은 2003년 8월 1일에 공포된 『도시와 도시 재생을 위한 프로그램화에 관한 법률』에 반제불능(返濟不能)이 된 채무자의 재생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④ 기업통치의 개선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 통치에 관한 혁신이 이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된 논점이며, 의회에서도 각 항목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하면, 회계감사인 제도에 관한 것(회계감사인 고등 평의회의 창설 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이사회 기능이나 기업 임원의 정보개시의무 등 기업 통치의 본질에 관련

되는 중요한 점도 있다.

(가) 기업회계제도의 개선

첫째, 회계감사인 감독기관의 신설-회계감사인 고등평의회(Haut Conseil du Commissariat aux Comptes : 이하 HCCC라 한다)의 설립을 들 수 있다. HCCC는 회계감사인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법무성의 부속 기관으로 회장인 파훼원(破毀院)재판관 외, 회계원 재판관을 포함한 사법관 2명, AMF 총재 혹은 그 대리인, 재무성 대표, 대학교수 1명, 경제·재무 관계의 전문가 3명, 회계감사인 3명의 합계 12명으로 구성된다. HCCC 의 임무는 우선, 회계감사인의 양식적인 직무 실천을 추천하고, 직업단체에서 회계감사인 전국 협회가 책정하는 직업 수행 기준에 대해서, 법무성에 의한 인가 이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며 또한 감사인에 대하여 정기고사(定期考査)를 기획 입안해, 회계감사인 전국협회 또는 회계감사인 지방협회(각 지방마다 설치되어 있다)에 실시되었다. HCCC는 특히 회계감사인의 등록이 적절히 행하여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방협회와 공동으로 감시하고, 감사업무와 컨설팅·서비스 업무를 분리하여 평가한다(동법 제100조).

둘째,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제규정으로 감사 대상 기업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은 동일 기업을 6년 초과하여 감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규정은 연속 감사의 제한을 7년까지 하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COB)의 권고 취지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감사법인 등이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감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금지규정은 피감사 기업의 모회사 내지 자회사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 감사법인 중에 또 다른 인간이 있는 기업에 감사와 컨설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도 해당한다(동법 제104조). 감사 체제의 충실과 감

사인 간의 상호체크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동감사제도는 아직까지 연결결산서를 작성하는 기업에서는 의무로 할 수 있는데, 본 법률에서는 더 한층 강화하여 이러한 기업의 감사를 담당하는 2명 이상의 감사인은 다른 방식을 이용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조하여 검토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동법 제105조).

#### (나) 기업내부통제의 강화

회계 서류의 신뢰성 확보나 내부 감사라고 하는 기업이 실시하는 일련의 내부 통제는 효율적이며 유효한 회계감사의 전제 조건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금융안전법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또한 이사회(2층형의 기업 통치방식을 채용한 경우에는 집행이사회)의 임무 수행 방식에 관해서, 이사회 회장(또는 집행이사회 의장)이 주주 총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는 연차계산서류 및 연결계산서류로서 공표되는 이 규정은 2003년 기업실적에 관한 회계보고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17조). 한편 회계감사인도 피감사 기업의 내부 통제 과정에 대해 회계·재무 정보를 취급하는 방식에 특히 유의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작성은 회계감사인이 이미 책정된 회계서류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회계서류 작성의 전단계에 있는 내부통제의 방법에 관하여 검토를 행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되고 있다(동법 제120조).

#### (다) 정보공시의 강화 및 완화

회사 임원의 자사주(自社株) 거래에 관한 정보개·공시의무인 인사 이더 거래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주식공개회사는 이사회, 회장 등 임원(회사수임자 mandataire social) 내지는 임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정령에서 규정된 자가 행한 자사주의 취득, 양도, 예약, 교환 등의 거



래 혹은 선물거래에 대하여 AMF 및 주주 총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동법 제122조).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자사주 거래에 대한 규제는 지금까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증권거래위원회(COB)에 의하여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의하고 있다.

또한 회사 임원의 보수액 공시제도를 완화하고 있다. 금융안전법은 이미 언급한 신경제규제법(2001년)에 도입된 회사 임원의 개별 보수액 공시의무 중 비상장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상장기업의 자회사인 비상장기업은 변경없음). 이 규제 완화는 경영자 측에서 강한 요구를 한 것이지만, 전정권이 제정한 신경제규제법으로부터 후퇴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동법 제138조).

(라) 투자가 행동에 관한 제개혁

이에 대하여는 크게 ① 자산관리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보고 의무, ② 투자가 옹호 단체에 관한 규제완화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자산관리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보고 의무로 투자자의 위탁에 의해 OPCVM (투자신탁)의 운용을 하는 자산관리 회사는 관리하고 있는 주식에 부여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투자자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리 포기가 감소하여 개인투자자의 의향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이해가 주주총회에 표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동법 제66조).

둘째, 투자가 옹호 단체에 관한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주로 소수과 주주의 옹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투자가 옹호 단체가 공적 인가를 얻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향후 200명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 6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을 가진 단체가 인가대상으로 되도록 하였다(동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2년이상, 1,000명 이상이 요건인). 또한 리

단체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회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심재판소 혹은 상사재판소의 허가를 얻은 다음 지금까지 금지되어 있는 텔레비전·라디오의 광고, 포스터나 전단지, 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호소할 수 있다(동법 제126조).

(마) 회계기준에 관한 개혁

엔론이나 월드 컴 등에 의한 기업 불상사 그리고 세계적으로 표면화한 기업 회계에 관한 문제점은 회계기준과 회계감사의 2개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회계기준과 관련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의 검토나 유럽이사회에서의 토의의 대상이 되어, 일국 수준을 넘는 대응이 지배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국내법인 금융안전법에 회계기준의 문제를 직접 취급한 규정은 적고, 다만 그 예외로서 연결결산의 대상을 재검토하고 있을 뿐이다.

즉, 지금까지 주식 등의 지분이나 의결권이라는 측면에서 기업 간 지배관계를 파악하고 있던 것을 계약상 관계 등 보다 실질적인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혁에 따라 엔론 사건으로 주목받은 부외 거래 등을 이용한 부정회계에의 대응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동법 제133조).

(바) 금융애널리스트 및 신용등급회사에 대한 규제

금융 애널리스트에 대한 규제로 금융안전법에서는 기업 통치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아니지만, 미국의 기업 불상사에 관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한 금융 애널리스트나 등급설정 회사에 관련하여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는 주식공개회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그 회사에 관한 평가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그 행위에 관한 규제나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 애널리스트의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애널리스티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왜곡하여 그 기업이나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또한 AMF가 금융 애널리스트의 규제 감독기관이 되어 직무 수행기준이나 양식적 행동 규범을 책정함과 함께 애널리스트가 직업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동법 제42조).

둘째, 등급설정회사에 대한 감시와 관련한 규정은 강제도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등급설정회사는 그 업무 수행의 준비로서 작성한 모든 서류를 3년간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서 AMF의 열람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이 규정은 금융 애널리스트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AMF는, 등급 설정 회사의 역할, 직업윤리규범, 수법의 투명성, 증권발행자나 금융시장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매년 보고서를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AMF에서는 간접적으로 등급설정회사에 대한 감시 기능을 발휘하도록 요구되고 있다고 말한다(동법 제42조).

## (5) 일 본

### 1) 서 설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동경을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국제금융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융 빅뱅을 단행하였다. 금융 빅뱅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지만, 그 핵심은 자본시장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모두 당시 가계의 금융자산보유나 기업 금융에서의 은행의 예금·적금 및 은행의 차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상업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체제였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였다. 이에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였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자본시장의 육성과 활성화가 21세기 일본 경제를 이끌어 갈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공동의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다시 재차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빅뱅을 시도하였다. 특히, 2006년 일본 정부는 자본시장의 활성화, 특히 동경증권거래소를 아시아거래소로서의 중심 역할의 수행이라는 원대한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일본판 자본시장통합법<sup>44)</sup>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을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고이즈미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일본의 최대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정공사 우편저축을 2017년까지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게 된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가계저축률 및 국민저축률이 8~90년대에는 비하면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 경제 속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매우 높은 상태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금융자산이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주식이나 채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예금 내지 적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은행에 대한 예금 내지 적금은 지난 5~60년대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일본 경제가 불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고 향후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은 2000년 대 이후 이러한 자본은 일본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가계저축 등으로 인하여 은행은 풍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1980년대 이후 대출 비율을 상대적으로 꾸준히 감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의 그들이 수익을 위하여 자본을 대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대출이 점차 곤란

44) 일본판 SOX법(Sarbanes-Oxley Act)이라고도 불리운다.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은행 간의 경쟁 또한 치열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대출이자율의 감소란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와 관련한 리스크의 증가 또한 은행이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은행은 이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금융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 즉 금융 빅뱅을 착수하게 된 것이다. 그 내용은 주로 가계의 금융자산을 자본시장의 다양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분산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4년말 기준 우체국 예금을 포함한 일본가계의 현금 및 예금·적금의 비율이 50%를 넘었던 것에 비하여 주식 및 채권 보유 비율은 각각 8%, 3%에 불과하였다. 이를 미국과 비교하여 보면, 당시 미국은 가계의 주식 보유가 33% 채권 보유가 9%, 현금 및 예금·적금 보유 비율이 13%로 일본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일본의 90년대의 빅뱅은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본은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제2의 금융 빅뱅을 시도하였다. 그 내용은 90년대의 개혁에 비하여 광범위한 부분에서 금융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자본시장 중심의 시장지향적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포괄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 기업의 공시제도의 강화 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화, 상장에 따른 지배구조 체제의 개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90년대 일본 버블경제의 붕괴와 금융재생프로그램

199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의 붕괴의 여파는 주택전문 금융회사인 주전에 한정되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공적 자금의 투입 이후 주택전문 금융회사인 주전이 파탄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신용이 더욱 불안해졌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NPL)이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위험이 더욱 고조되었던 것이다.

이에 일본 대장성은 1998년 2월 금융기능의 안정화 조기 건전화법에 의하여 은행의 예금자보호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하여 각각 17조 1엔과 13조 1엔을 배정하여 모두 30조 3엔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의 자금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각 은행들은 공적자금의 신청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여 각각 10조 1엔씩 균등하게 요구하였다.

그런데 각 은행마다 부실채권의 규모도 다르고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 내지 은행의 경영개선의 노력도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요구하는 것은 효율적인 지원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적을 한 이 이후 1999년 3월 제2차 공적자금의 투입에서야 비로소 각 은행들이 요구하는 공적자금이 현실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6월 일본의 장기신용은행이 파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이 은행을 스미토모신탁은행과의 합병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던 중 그 해 가을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였고 그에 따라 정부의 스미토모은행과의 합병의 추진도 좌절되었다. 나아가, 장기신용은행은 1998년 10월 1일에 제정된 금융재생법에 기초하여 국유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외에도 1998년 12월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공적기구로 금융재생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99년 4월에는 주택금융채권관리기구와 정리회수은행을 개편하여 부실채권매입기능을 가진 정리회수기구를 설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0년 5월에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공적자금규모를 70조엔으로 확충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 부실금융기관정리를 위한 공적자금 규모를 기존의 17

조엔에서 27조엔으로 증가시켰다.

한편 금융청은 2001년 11월1부터 2002년 3월 3까지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02년4월 발표하였는데, 금융청은 은행의 부실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추가적인 공적 자금의 투입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2001년 9월 금융청에서 부실 정도를 ‘요주의’로 분류하였던 은행이 파산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금융청의 위의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공적 자금의 지속적인 투입을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었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파산과 신용질서의 불안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2002년 10월 30일 다케나카(竹中 平藏) 금융상이 법적 종료시한이 2005년 3월 말로 정해져 있는 금융재생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금융재생프로그램이란 은행에 초점을 두고 거대은행의 부실채권의 처리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고, 은행의 자기자본 사정을 엄격하게 하고 2년 내에 부실채권을 반으로 줄이려는 계획을 말한다.

그 결과 2005년 부실채권 규모가 반으로 줄어들긴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은행들의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경기회복이나 주기회복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거대은행의 부실채권 감축에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자본증권시장의 활성화와 관련된 조치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고, 투자자의 보호 범위 또한 제한적이었으며 투자자 보호 방법도 기존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다. 특히 증권거래법의 시장성 증권에 등록되지 않는 신금융상품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러한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2006년 6월에 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대폭 보완하게 된다.

## 3) 금융빅뱅 이후 빅뱅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과 우정공사의 민영화

다케나카(竹中 平藏) 후임으로 취임한 금융청의 이토오(伊藤) 금융상이 2004년 12월 금융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伊藤 플랜). 다만, 2005년 3월 금융재생 프로그램은 발표 당시부터 한시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후속조치가 필요하였는데, 바로 이토 플랜이 후속조치로 체계화된 것이다.

동 플랜은 금융서비스 입국으로서의 진입을 목표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금융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특히, 1,500조엔의 개인 금융자산을 은행이나 우편예적금보다는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왜냐하면 1996년 금융빅뱅 이후 개인의 금융자산에서 주식, 채권 등의 비중을 높이고자 했지만 이러한 노력이 전혀 결실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원래 2001년 종료하기로 되었던 금융빅뱅은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2006년 6월에 입안된 금융상품거래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우정공사의 민영화법안은 고이즈미 수상의 구조개혁의 핵심과제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 빅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금융빅뱅은 2006년 말까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 당국은 뒤늦게 기존의 허술한 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 체제로는 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득하였다.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위험도 높은 금융자산에 투자를 권유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금융 당국으로서 금융서비스 이용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기존의 증권거래법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새로운 거래 형태, 즉 신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체제를 확립하고 보완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따라서 은행 부문에 초점을 두었던 금융재상 프로그램과 달리 금융개혁 프로그램은 보험, 증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금융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은행 본체의 투신 창구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부터 증권 중개업의 도입, 은행의 신탁대리점의 형태로 다른 업무영역의 일부를 영위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었다. 마지막으로 은행 본체에 의한 보험상품의 판매까지 그 업무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었다. 기타 금융행정이 투명하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금융행정개혁도 시도하였다.

어쨌든 금융개혁 프로그램은 향후 급속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지주회사 복합 금융 집단에 대한 법·제도의 마련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금융개혁 프로그램의 핵심은 증권업 부문에 있다고 하겠다.

#### 4)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

##### ① 제정 경위

금융상품에 대해 포괄적이고 횡단적인 규제를 위한 법률(금융서비스법)은 1986년에 제정된 영국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에서 유래된 것으로 1999년에 비로소 제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2000년에 제정된 것으로 은행·보험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적용되었지만, 금융상품의 개발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권유의 측면이란 일부분만 커버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법률의 내용도 업자에게 원금손실리스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권유 기준의 책정·공표를 요구하는 정도의 범위로 한정됨으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서비스법』이라고 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벤처기업의 육성이나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정부의 정책하에서 각종 펀드나 외환증거금거래와 같이 종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금융상품이 등장함으로써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즉, 예금·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금융서비스법의 제정은 장래로 미루고, 우선 예금·보험 이외의 『투자상품』에 한하는 『투자서비스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금융심의회는 2003년 가을부터 투자서비스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2005년 7월에 중간정리가 나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처음의 의도와는 다른 판매·권유의 원칙에 대해서는 투자상품의 틀을 넘어, 예금·보험을 포함한 금융상품까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은행업계·보험업계의 완강한 저항이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법의 구상은 좌절되었다.

그 후, 2005년 12월에 금융심의회 최중보고서인 『투자서비스법을 향하여』가 제출되고, 초안 작업을 거쳐 2006년 3월에 증권거래법과 그 외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단계에서 투자서비스법이라는 명칭은 금융상품거래법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금융상품거래법은 증권거래법의 증권을 금융상품에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투자상품』을 의미한다.

## ② 동법의 내용

### (가) 기본 방향

일본 정부는 2006년 3월 『증권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과 『증권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전자는 종래의 증권거래법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종래 금융상품별로 존재해왔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금융통합법이 마련된 것이다. 그 내용은 투자업무규제, 거래소, 벌칙 및 과징금, 공시제도로 구성되

었다. 더불어 공개매수제도의 개선, 대량보유신고제도 등의 개선도 이루어졌으며, 일본판 Sarbanes-Oxley법이라고 하는 기업공시제도의 개선도 함께 마련되었다.

나아가 후자의 입법에 따라 기존의 금융선물거래법과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고문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저당증권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증권업자에 관한 법률 등은 폐지되었다.

또한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에도 금융상품거래법 상의 규제와 동일한 투자자보호규제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하에서는 중요한 내용만을 살펴본다.

#### (나) 목 적

동법 제1조에 의하면, “· · · 기업 내용 등의 공시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금융상품거래업을 하는 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금융상품거래소의 적절한 운용을 확보함으로써 유가증권의 발행 및 금융상품의 거래 등을 공정하게 하고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자본시장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함으로서 금융상품 등의 공정한 가격형성 등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에 기여한다”고 하고 있다.

#### (다) 적용범위

동법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유가증권과 예금계약에 기초한 채권 기타 권리 및 이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통화, 장내·외 파생상품거래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이 등장하는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이용자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여 유가증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라) 업무행위규제

행위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증권거래법과 증권투자고문업법상의 규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정을 대폭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금융상품거래업자 및 그 임원, 사용인의 고객에 대한 성실하고 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의무, 투자운용업과 투자고문업의 경우 충실의무와 주의의무, 유가증권관리업(보호예수업무)의 경우 주의의무,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시의 서면교부의무, 적합성원칙과 최선집행의무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변액보험과 외화예금 등 투자성이 높은 예금과 보험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 상의 판매권유규제가 준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마) 공시제도

공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관한 확인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둘째, 유가증권보고서의 기재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서에도 물론 내부통제시스템이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구해지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내부 통제시스템의 강화를 위하여 특히 재무계산에 관한 서류 기타 정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의 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셋째, 분기보고서제도도 정비하여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회사중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발행자인 회사 기타 정령에서 정한 회사는 그 사업연도가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3개월로 구분한 기간별로 당해 회사에 속하는 기업집단의 경리 상황 기타 사항을 기재한 분기보고서를 당해 각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에서 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바) 기 타

이 외에도 금융상품거래업과 금융상품중개업의 정의,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진입규제, 금융상품거래업자의 경우 금융상품거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신고후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정한 행위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투자자에 관한 규정, 거래소 및 금융상품거래업협회의 자율규제에 관한 규정, 규제 및 집행에 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 M&A에 관한 규정 등이 존재한다.

#### 4. 소 결

향후 보험규제의 방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 모두 공통적으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의 자율성 강화, 금융 상품 판매제도의 선진화 겸영업무의 확대, 소비자보호 장치의 강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중점을 두고 보험규제와 관련한 국내의 자본시장통합법과 개정 중에 있는 보험업법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일본의 금융제도 및 향후 개정 동향도 살펴보았다. 물론 각국마다 자국의 법제도와 경제적 여건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제도가 일률적으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큰 흐름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부터 출발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금융규제에 대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으므로, 미국의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각국의 입장도 미국의 경우와 유사한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규제 제도의 변화는 다른 나라 금융규제 제도 변화의 모델이 되고 있다. 주요 20개국이 참여한 G20 금융정상회담 및 유럽연합에서도 미국의 금융규제 제도의 변화에 뜻을 같이 하였다. 다만, 유럽의 각국은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금융규제 제도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제 4 장 보험규제 관련법의 입법평가

### 1. 서 설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국내외의 금융위기와 그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통한 개선해야 할 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평가, 제3장에서의 국내외의 법제도의 현황 및 향후 개선책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 규범적 평가를 통하여 향후 개선하여야 할 보험관련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평가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도적 대안을 중심으로 보험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입법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첫 번째 항목으로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인지도, 인지 경로 및 관심도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 2. 금융규제 통합의 방향성 평가

#### (1) 평가의 배경

우리 정부는 2004년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여 금융규제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통합 금융규제의 체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은행업과 더불어 보험업은 제외되었다. 이는 아마 보험업의 경우 그 특성상 은행업과 증권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통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노후보장과 관련한 민간보험의 역할 증대 경제의 디지털화와 보험 전자거래의 활성화, 경제의 개방화와 보험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의 심화 및 금융 겸영화 등 보험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또한 미래 금융의 모습은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금

용시스템의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과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의 역할이 확대되며 검업화에 따른 대형 복합금융그룹 중심의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개방화에 대응한 금융의 국제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 등에 대응한 개인의 리스크 관리 경제활동과 관련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 강화 등 보험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금융규제의 통합기구는 과연 어떠한 형태가 이상적인 것일까에 대한 평가를 하여 볼 필요가 있다.

## (2) 금융규제기관에 대한 국내 및 각국의 비교 평가

### 1) 금융규제의 국제적 추세

금융규제의 통합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시작하여 영국 호주 등을 거쳐 계속하여 확산되는 경향이다. 또한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들도 비록 부분적이지만 규제를 통합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북유럽 국가들이 금융규제를 하게 된 동인은 그들은 정치, 문화 및 경제적 시스템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상대적으로 작고 고도로 집중된 금융시스템 하에서 희소한 규제 자원의 사용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유사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통합의 범위와 관련 영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건전성 규제의 통합에 주력하였던 것에 반하여 영국, 호주 및 일본 등의 경우에는 건전성 규제뿐만 아니라 업무행위규제까지를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국은 대부분의 금융행위를 규제대상 행위로 인가받도록 하였으며, 호주의 경우는 업무행위 규제에 관한 규정을 CLERP(Corporate Law Economic Reform Program) Paper6에서 하

나의 원칙을 내세워 통합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을 제정하여 금융상품이 거래시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였다.

2) 업무행위규제에 따른 장단점

|      | 기관별 감독                | 목적별 감독   | 기능별 감독   | 단일한 감독  |
|------|-----------------------|--|--|---|
| 장점   | 고도의 전문성               | 고도로 통합된 시장, 여러 업종을 포괄하는 금융기관 존재시 효과적이며 균일한 규제 가능 | 동일한 업무를 한 금융기관에 대해 동일한 규제 적용, 전문화의 경제 효과                     | 범위의 경제효과, 규제 차익의 여지 축소  |
| 단점   | 검열 및 개방된 금융 환경에 대응 곤란 | 통제가 급격히 증가하나 특정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                  | 너무 많은 감독기관 설립 우려, 감독기관 간 월권행위의 리스크 존재, 금융기관 전체의 실패에 대한 대응 곤란 | 의사결정과정 지연, 감독 당국과 사업자 간의 결탁관계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일 우려, 상반된 규제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경우 자기모순적 상황 발생 우려 |
| 감독비용 | 상당 부분 감소              | 지출 과다  | 지출 과다  | 비용 감소   |

3) 유럽 각국의 금융규제기관의 형태

| 국 가 | 은행업  | 증권업                       | 보험업  |
|-----|------|---------------------------|--|
| 그리스 | 중앙은행 | Capital Market Commission | Directorate of Insurance Enterprises and Actuaries |



제 4 장 보험규제 관련법의 입법평가

| 국 가   | 은 행 업   | 증 권 업   | 보 험 업   |
|-------|---|---|---|
| 네덜란드  | 중앙은행  | 중앙은행,<br>Authority for the<br>Financial Markets | Pension and 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                               |
| 덴마크   | 단일감독기관(Danish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   |   |
| 독일    | 단일감독기관(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   |   |
| 라트비아  | 단일감독기관(Finance and Capital Market Commission)         |   |   |
| 룩셈부르크 | Financial Sector Supervisory Commission               |   | Insurance Commission  |
| 리투아니아 | 중앙은행  | Lithuanian Securities Commission                | State 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                                     |
| 몰타    | 단일감독기관(Malt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   |
| 벨기에   | 단일감독기관(Banking, Financial and Insurance Commission)   |   |   |
| 사이프러스 | 중앙은행  | Cypr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Insurance Companies Control Service                                       |
| 스웨덴   | 단일감독기관(Swedish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   |   |
| 스페인   | 중앙은행  | National Securities Market Commission           | Ministry of the Economy's Directorate-General Insurance and Pension Funds |
| 슬로바키아 | 중앙은행  | Slovakian Financial Market Authority            |   |
| 슬로베니아 | 중앙은행  | Securities Market Agency                        | Insurance Supervisory Agency  |
| 아일랜드  | 단일감독기관(Irish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 |   |   |
|       |   |   |   |

2. 금융규제 통합의 방향성 평가

| 국 가   | 은 행 업   | 증 권 업   | 보 험 업   |
|-------|---|---|---|
| 에스토니아 | 단일감독기관(Estonia Financial Supervision Authority)   |   |   |
| 영국    | 단일감독기관(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   |
| 오스트리아 | 단일감독기관(Financial Market Authority)                |   |   |
| 이탈리아  | 중앙은행  | 중앙은행 Securities Commission  | Insurance Supervisory Institute                                 |
| 체코    | 중앙은행  | Securities Commission   | Czech Office of Insurance                                       |
| 포르투갈  | 중앙은행  | 중앙은행 Securities Commission  | Insurance Institute   |
| 폴란드   | Commission of Banking Supervision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Insurance and Pension Funds Supervisory Commission              |
| 프랑스   | Banking Commission <sup>45)</sup>                 | Securities Commission, Financial Market Council, Financial Discipline Council | Insurance Supervision Commission,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
| 핀란드   | Finnish Financial Supervision Authority           |   | Insurance Supervision Authority                                 |
| 헝가리   | 단일감독기관(Hungari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   |   |

4) 금융규제기관의 통합과 분리

|         |             |        |
|---------|-------------|--------|
| 금융규제 통합 | 단일한 금융규제기관  | 영국, 일본 |
|         | 이원화된 금융규제기관 | 호주     |
| 금융규제 분리 | 단일한 금융규제기관  | 한국     |

45)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Credit Institutions and Investment Companies, Committee on Banking and Financial Regulation 등이 은행업 감독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음.

### (3) 입법평가의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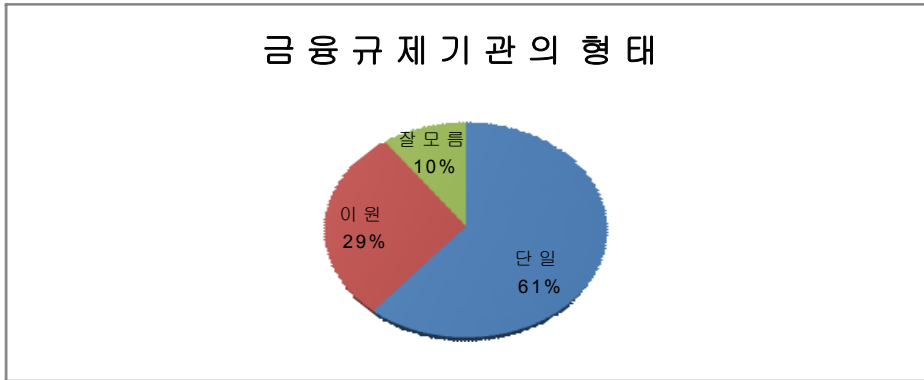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여 금융규제를 통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은행업이나 보험업의 경우는 제외되고 있어 완전한 금융규제를 통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금융감독기구와 관련해서는 단일한 금융감독기구를 갖고 있는 특색을 띠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완전한 금융규제의 통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기구의 통합을 통한 감독자원의 이용에 대한 규모의 경제 추구는 적절한가, 방카슈랑스가 시행 중이고 금융지주회사를 활용한 금융그룹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한다면 금융규제 법률체계의 단일한 통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능별 통합을 할 것인가도 결정하여야 하며, 나아가 통합시 개별 금융업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4)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성 확보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금융감독기구를 둔다면 어떤 형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결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바람직한 금융감독기구의 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단일의 통합기구’라는 응답이 61.0%로 ‘이원화된 감독기구’라는 응답 29.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기타 잘 모르겠다는 10%로 나타났다.



보험학회원의 경우, ‘단일의 통합기구’ 70.0%, ‘이원화된 감독기구’ 18.0%였으며, 보험업 종사자는 ‘단일의 통합기구’ 58.0%, ‘이원화된 감독기구’ 32.7%로 조사되어 두 집단 모두 통계상의 차이는 있지만 단일의 통합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단일의 통합기구’라는 응답은 3년 미만 및 7~10년 경력자에서 특히 높았고, ‘이원화된 통합기구’라는 응답은 3~7년 및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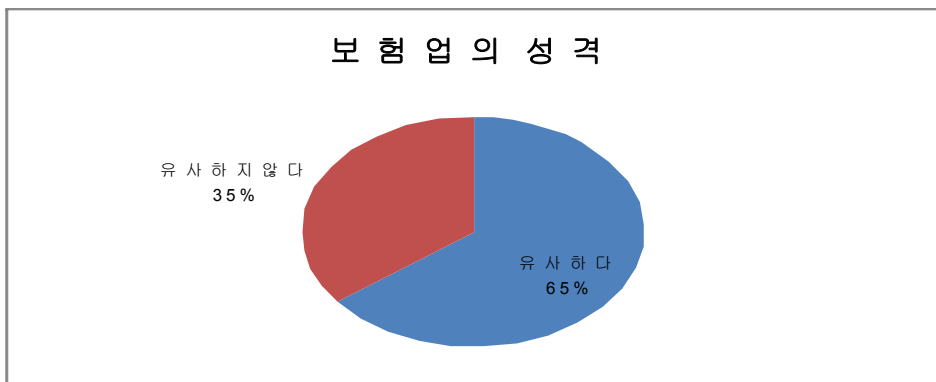
| 구 분 |          | 단일의 통합된 감독기구 | 이원화된 감독기구 | 잘 모르겠다 |
|-----|----------|--------------|-----------|--------|
| 경 력 | 3년 미만    | 68.6         | 13.7      | 17.6   |
|     | 3~7년 미만  | 54.4         | 38.0      | 7.6    |
|     | 7~10년 미만 | 67.9         | 25.0      | 7.1    |
|     | 10년 이상   | 59.5         | 33.3      | 7.1    |

또한 보험업은 다른 금융업에 비하여 그 성질이 유사한가의 여부에 대하여도 설문조사를 하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일반 금융업에 비하여 보험업이 그 성질상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보험업의 성격에 대한 조사는 보험 또한 금융업의 한 부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시 보험업을 제외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보험의 특성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과연 보험을 다른 금융 부문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여 본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사하지 않다’는 응답이 60.0%로 ‘유사하다’는 응답 33.0%의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설문조사 대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험회원의 경우, ‘유사하지 않다’ 66.0%, ‘유사하다’ 32.0%로 보험업의 성격이 다른 금융업에 비하여 구별되는 특색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 종사자도 ‘유사하지 않다’가 58.0%로 ‘유사하다’ 33.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즉, 보험학회 회원이나 보험업 종사자 모두 통계상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금융업에 비하여 보험업만의 특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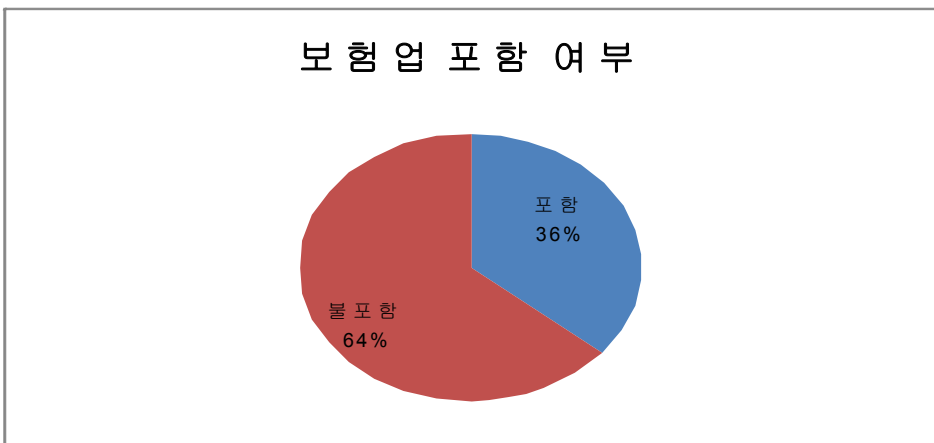
2. 금융규제 통합의 방향성 평가

| 설문조사 대상 | 설문 내용   | 비 율   |
|---------|---------|-------|
| 보험학회 회원 | 유사하지 않다 | 66.0% |
|         | 유사하다    | 32.0% |
| 보험업 종사자 | 유사하지 않다 | 58.0% |
|         | 유사하다    | 33.3% |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내에 보험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가의 여부에 대하여도 설문조사를 하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대상으로 보험업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결과 보험업도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1.5%,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가 56.0%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가 포함시켜야 한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큰 차이를 보였다. 즉, 보험학회원의 경우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0.0%로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응답 38.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62.0%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 25.3%보다 월등히 높았다.

| 설문조사 대상 | 설문 내용       | 비 율   |
|---------|-------------|-------|
| 보험학회 회원 | 포함되어야 한다    | 50%   |
|         |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38%   |
| 보험업 종사자 | 포함되어야 한다    | 25.3% |
|         |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62.0% |

이처럼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 내에 보험업의 포함을 반대하는 것은 보험업의 개정과 관련된 배경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즉, 현행 보험업법의 개정은 자본시장통합에 따른 조치로 보여지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보험규제를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융 부문간 상호 이해관계를 잘 조절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보험업을 자본시장통합법에 포함시킬 경우 그 시기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여 보았다. 그 결과 단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가 73%로 즉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23.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한 연구를 한 다음 단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5) 평가 결과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규제를 분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규제를 통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험업을 비롯한 은행업까지도 통합하여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규제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일의 금융규제기관을 둔 경우도 있고 이원화된 금융규제기관을 둔 경우도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단일화된 금융규제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단일화된 금융규제기관을 두고 있으므로 통합과 관련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의 경우도 단일화된 금융규제기관을 두는 것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업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는 설문조사의 경우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업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학회 회원의 입장에서는 통합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설문조사의 경우도 일단 금융규제의 통합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보험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고 단계적인 절차를 통하여 통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3. 금융회사간 겸영 허용 여부에 대한 평가

### (1) 평가의 배경

현행 보험업법의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업무 영역의 확대로 겸영업무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보험업을 사람



의 생사나 사고로 인한 위험의 인수로 정의하되,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상해, 질병, 장기간병 등)으로 구분하여 겸영을 금지하였었다. 하지만, 최근 방카슈랑스 허용,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 및 카드 겸업, 유가증권의 인수 등 일부 증권업의 허용(보험은 제한), 변액보험의 투신영역 편입 등 업무영역의 조정은 금융산업에 대한 비중이나 영향력이 큰 은행이나 증권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보험권은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아왔다는 의식이 팽배하였다.

나아가, 현재 보험회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 및 소유가능 자회사를 제한적으로 열거, 은행에 비하여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보험모집(방카슈랑스), 수익증권의 판매 및 투자 자문업의 금융권간 제한 폐지로 은행은 프라이빗 뱅크, 증권은 종합자산관리사 제도 등을 통하여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경우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될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 판매 조직을 통한 수익증권 판매와 투자자문업무 수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보험회사의 경우도 겸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평가하여 보고자 한다.

## (2) 겸영화의 이점

각국에서 겸업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금융회사들이 이익을 내고 시장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게 겸업화는 경쟁이 격화되는 금융 환경에서 나타나는 저성장, 저효율, 저수익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금융권으로 업무를 확대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이것이 겸업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금융산업이 성장하고 성숙단계로 진행되면 규모가 커진 금융회사들은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규모에 비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없게 된다. 회사들은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으로 타금융권역에 관심을 갖게 되고, 타금

증권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타금융권 회사를 인수·합병한다. 겸업회가 진행된 다른 많은 원인들 중에서 금융시장에서 금융회사들의 경쟁격화가 주요 원인이라는데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외국의 예를 볼 때, 경쟁격화로 금융회사, 특히 은행의 수익이 적어진 것이 겸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겸업화는 1980년대 이후 인구분포의 변화, 저축성향의 변화,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수요의 증대, 은행 수익성 저하와 경쟁의 증대 및 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진입장벽의 완화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러한 요인중 수익성 감소와 경쟁증대로 인한 은행의 종합금융그룹화 움직임, 자유화 및 규제 완화 추세가 겸업화를 유도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겸업화는 효율성 증진을 통한 수익성 제고, 고객들에 대한 통합금융서비스 제공, 리스크 분산을 통한 안정성 강화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금융상품의 상호보완성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은행들은 보험자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하면서 은행과 보험회사의 결합은 상호의존적 관계가 아니라 경쟁관계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국내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겸업화 진행 상황은 이미 겸업화를 경험한 외국의 겸업화 진행상황과 유사하다. 국내의 경우도 1997년 12월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겸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공정자금을 투입하고 은행간 대규모 합병을 유도하였다. 규모가 커진 은행들은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타금융권회사를 인수하였다. 정책적으로 은행의 수익성 확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겸업화가 진행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였다. 최근에는 자본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투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여 대응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겸업화 환경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금융시장도 자체 산업 내에서는 포

화상태가 되면서 금융기관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은행 등 금융권은 새로운 다른 금융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3)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 현황

#### 1) 경영 여부

금융업은 크게 은행업, 보험업, 증권 및 파생상품업을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경영업무, 승인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개방화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           |                           | 금융관련 업무의 구분                       |                                 |                                |
|-----------|---------------------------|-----------------------------------|---------------------------------|--------------------------------|
|           |                           | 통합금융법상 금융업무로 명시된 업무(금융업무)         |                                 | 통합금융법상 금융업무로 명시되지 않는 업무(비금융업무) |
|           |                           | 해당 금융업에 대해 경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금융업무 | 해당 금융업에 대해 경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금융업무   |                                |
| 추가요건 존재여부 | 자본금 규제 등 추가요건의 충족이 필요     | 경영업무                              | 경영금지                            | 승인업무                           |
|           | 충족되어야 하는 추가요건 없이 수행가능한 업무 | 부수업무                              | 경영금지(단, 현행법에서 허용된 금융업무는 예외로 인정) |                                |

2) 금융겸영화 현황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은행, 증권, 보험 등 이업종의 겸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01년 1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업종간 제휴의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2003년 9월부터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를 허용하였다. 그 방식으로는 자회사 방식 또는 지주회사 방식의 금융겸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46)</sup>

|        | 신한금융지주회사   | 우리금융지주회사                                 |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
|--------|--|--|---------------------------------------|
| 회사수    | 24   | 22                                       | 7                                     |
| - 자회사  | 12   | 10                                       | 3                                     |
| - 손자회사 | 12   | 12                                       | 4                                     |
| 자회사 등  | 신한은행, 조흥은행, 굿모닝신한증권, 신한캐피탈, 신한카드, 신한비엔피바피바투신, 제주은행, SH&C생명 등 |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증권, 우리투신운용, LG투자증권 등 | 동원증권, 동원창업투자, 동원저축은행, 동원캐피탈, 동원투신운용 등 |
| 기 타    | 은행업이 총자산의 90% 이상 차지  | 은행업이 총자산의 90% 이상 차지                      | 증권업이 총자산의 90% 이상 차지                   |

46) 2004년 12월 말 기준

또한 금융업종을 뛰어 넘는 상품개발이 이어지고 금융그룹화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겸업화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은행, 증권, 보험 업무를 통합 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주가지수 연동 예금의 경우 고객의 투자자금을 정기에금을 적립하고 그 이자를 옵션 등 파생상품으로 운용하여 추가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투자재상인 파생상품도 주가지수에서부터 외환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도 기존의 보장기능과 투자기능 또는 입출입기능을 복합시킨 상품으로 변액보험과 유니버설 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주식이나 국채, 공채, 사채 등에 투자하여 그 투자 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 및 지급보험금에 반영하는 상품이며 유니버설보험은 금리 변동형 보험으로 보험의 기능에 은행의 자유로운 입·출금 기능을 접목시킨 상품이다.

더불어 판매채널의 통합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이미 금융지주회사 내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CRM기법을 적용하여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는 은행의 PB영업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는데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에서도 개인에게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거액 자산가를 한정하고 있지만, 점차 중산층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4) 겸업화 수준의 각국과의 비교

우리나라의 겸업화 수준은 금융산업의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권역별 업무영역의 정도에 따라 겸업화의 수준을 국가별로 산출 평가한 후 우리나라의 겸업화 수준을 금융선진국

### 3. 금융회사간 경영 허용 여부에 대한 평가

들과 비교 분석 평가한 한국응용경제학회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47)</sup> 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겸업화 수준은 금융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동 자료는 PriMark사의 Company Analysis(CA)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겸업화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미국(2.66), 호주(2.08), 이탈리아(2.17), 독일(2.14) 등은 겸업화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국이 영국, 일본과 같이 금융전업주의 전통을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겸업화 지수가 높은 이유는 전업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할지라도 금융기업은 여러 가지의 규제상의 허점을 노려 규제를 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 국 가   | 금융기관 | Fiv* |      | Div4* |      |
|-------|------|------|------|-------|------|
|       |      | 평균   | 분산   | 평균    | 분산   |
| 호 주   | 143  | 1.80 | 1.24 | 2.06  | 1.55 |
| 캐 나 다 | 40   | 2.21 | 0.98 | 2.36  | 1.53 |
| 프 랑 스 | 103  | 1.81 | 0.90 | 1.96  | 1.20 |
| 독 일   | 57   | 1.88 | 1.04 | 2.14  | 0.92 |
| 이탈리아  | 51   | 2.01 | 1.93 | 2.17  | 2.58 |
| 일 본   | 109  | 1.75 | 1.06 | 1.85  | 1.49 |
| 한 국   | 41   | 1.52 | 0.36 | 1.52  | 0.36 |
| 미 국   | 452  | 2.46 | 1.24 | 2.66  | 1.70 |
| 영 국   | 501  | 1.50 | 0.97 | 1.71  | 1.63 |

\* Fiv는 금융업 내에서 참여업종 수를 계측해서 지수화한 것이고, Div 4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코드 번호에서 금융업무를 구분할 수 있는 4자리수를 중심으로 계측해서 지수화한 것임.

47) 이인실, 『금융 겸업화와 금융산업 조직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2005. 12, p. 13.

반면 우리나라(1.52), 일본(1.85), 영국(1.71) 등은 겸업화지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현재 겸업화 방향으로 각종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금융권역간 또는 보험권역 내의 겸업화 수준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방카슈랑스의 확대 시행, 교차판매의 허용, 기타 법률의 개정 등으로 겸업확대를 유지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권역간 업무영역 측면에 겸업화 수준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5) 각국의 겸업화 현황

### 1) 영 국

영국에서는 은행업무 및 보험업무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친 관습에 의하여 행하여져 왔으며, 이를 감독관청이 추후에 인정하는 형태로 금융업무 행하여져 왔다. 이에 따라 Trustee Savings Bank가 1967년에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 영국 최초로 방카슈랑스 업무를 개사하는 등, 1960년대 후반부터 특정분야의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 타금융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겸업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 2) 프랑스

프랑스의 거의 모든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사업에 진출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생명보험상품이 은행의 정지저축 또는 MMF와 같은 저축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판매가 용이한 상품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은행과 관련이 없는 프랑스의 보험회사들은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에 있는 반면에 은행의 보험회사들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프랑스의 방카슈랑스는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되

고 그에 따라 금융회사 간의 겸업업무도 허용되고 있다.

### 3) 미 국

종래 미국은 금융회사 간 겸업업무를 금지하여 오던 것을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함으로써 허용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1999년 11월에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Non-bank Bank 등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방식으로 타금융업에 상호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현대화법(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t of 1999)인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 :GLBA)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의 제정으로 1933년부터 글래스-스티걸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왔던 금융기관간의 상호 진출이 허용되었다.

### 4) 일 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금융분업주의를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일본의 금융산업이 부자유, 불투명, 불채산으로 대표되는 일본적 금융관행으로 인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버블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로 불량채권이 대량으로 발생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도산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이탈이 가속화되어 금융시장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환경하에서 일본은 금융제도개혁의 일환으로 1991년 3월 금융제도개혁관련법에 관해 공표하고, 1993년 4월부터 ‘금융제도개혁법’을 시행하였다. 이 금융제도개혁관련법에서는 은행과 증권회사가 자회사방식으로 상호간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일본에서도 금융겸업화가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96년 4월에는 ‘신보험업법’이 시행되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간에 자회사방식에 의한 상호진출 및 제3분야보험에의 상호진출이



허용되게 되었다.

그 후 1996년 11월에는 하시모토 총리가 자유화, 경쟁의 공정·투명화, 국제화라는 3대 원칙 하에 은행·증권·보험회사간의 상호진출 허용,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허용, 회계 및 세제의 국제표준화, 범세계적 금융감독체제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제도개혁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는 일본판 금융빅뱅을 선언함으로써 일본의 금융제도개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3월에는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하고 있던 ‘독점금지법’이 폐지되어 은행·증권·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등 자회사방식으로 타금융업에 상호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8년 12월 1일에는 보험업법 등 24개의 금융관련 법안이 일괄적으로 입법화된 ‘금융시스템개혁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금융시스템개혁법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보험자회사와 보험지주회사에 관련된 규정이 정비, 제정됨으로써 보험회사와 은행, 증권회사간의 자회사방식에 의한 상호진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1999년 10월에는 보험회사의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어 보험회사가 은행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은행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와 타금융업 진출이 허용되어 동시에, 은행과 증권회사 등 타 금융기관의 보험업 진출도 전면적으로 허용되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은행에 대하여 파산한 보험회사에 한해서만 허용하였던 보험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은행의 보험자회사 소유를 완전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간의 상호진출의 틀이 완성되게 되었다.

2001년 4월부터는 은행이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은행의 보험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은행이 직접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창구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은행이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생명보험의 경우는 신용생명보험 1개 상품, 손해보험의 경우는 주택대출관련 장기화재보험과 장기상해보험 및 해외여행상해보험 등 3개 상품으로 한정하였다.

현재 일본 국내에는 은행의 보험자회사나 계열보험회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의 신용생명보험의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12월 개최된 정부의 종합규제개혁회의에서 보험상품의 은행 창구판매 확대를 금융감독당국에 건의하게 되었다. 이에 금융청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손해보험상품 위주로 운용되어 온 은행의 보험상품 창구판매를 생명보험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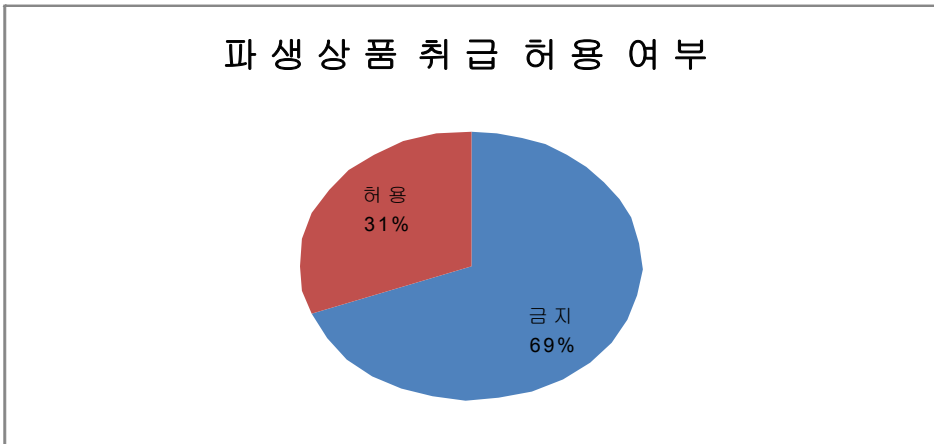
그리고 종전에 은행이 보험자회사나 계열보험회사에서 개발한 생명보험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던 규정을 폐지하여 은행이 모든 생명보험회사에서 개발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규제가 없는 손해보험상품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 (6)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성 확보

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겸업의 허용 여부를 조사하여 보았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선생님께서서는 금융기관에서 보험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이러한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보험과생상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본 결과, ‘금지하여야 한다’가 66.0%, ‘허용해야 한다’가 29.5%로 나타나 검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분야별 조사를 해 본 결과, 보험학회의 회원의 경우 ‘허용해야 한다’가 62.0%, ‘금지해야 한다’가 36.0%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금지’가 76.0%, ‘허용’이 18.7%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설문조사 대상 | 설문 내용    | 비율    |
|---------|----------|-------|
| 보험학회 회원 | 금지되어야 한다 | 62.0% |
|         | 허용되어야 한다 | 36.0% |
| 보험업 종사자 | 금지되어야 한다 | 76.0% |
|         | 허용되어야 한다 | 18.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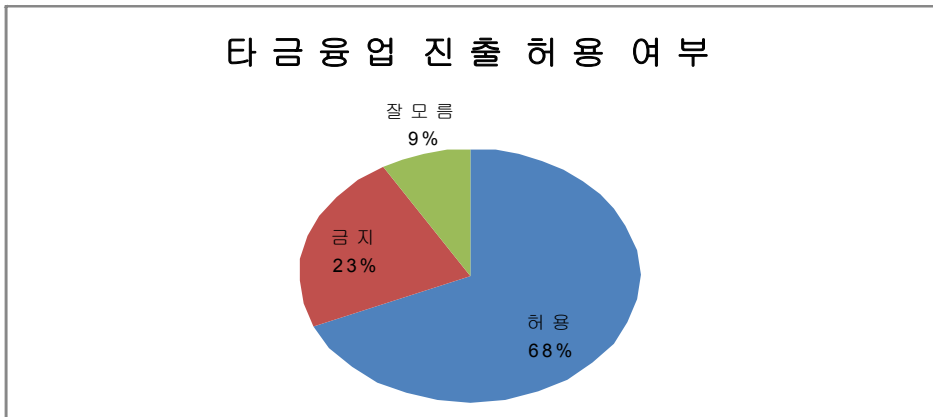
### 3. 금융회사간 겸영 허용 여부에 대한 평가

이러한 결과는 보험학회의 회원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내용 및 국제적인 추세를 알고 있으며 보험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동 현상을 살펴본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업과는 구별되는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겸업을 허용할 경우 그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자회사 방식으로 타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선생님께서서는 보험회사가 자회사 방식으로 타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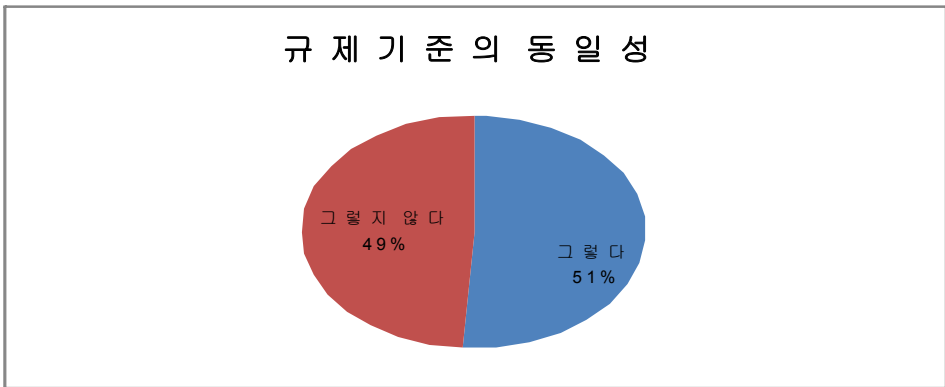
그 결과 보험회사가 자회사 방식으로 타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68.5%, 허용해서는 안 된다가 23.0%로 나타났다. 이를 분류별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비율상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그렇지 않다는 견해보다 훨씬 많았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취급을 허용할 경우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보았다.

선생님께서서는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이 보험의 특성을 가진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47.0%,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5%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학회 회원이나 보험업 종사자 모두 위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겸업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보험과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견해는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반면 동일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보험시장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 (7) 평가 결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금융회사 간의 겸업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미 국내에서도 방카슈랑스 등에 의하여 이미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고, 국제적인 추세도 대부분

겸업을 허용하는 추세이다. 다만,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보험업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 겸업 허용에 대하여 부정적이나, 이는 보험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당사자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보험학회의 회원의 경우에는 겸업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경향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4. 보험업의 고객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

### (1) 평가의 배경

자본시장통합법은 고객 보호의 수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의 개정에서도 고객 보호의 수준을 이와 유사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금융투자업과 기능적 공통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법의 강화된 영업행위규제를 과감히,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신의성실의 의무(제37조), 이해상충의 관리(제44조), 정보교류의 차단(제45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적합성의 원칙(제46조), 설명의무(제47조),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 투자권유준칙의 제정(제50조),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지행위(제52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제54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55조), 약관(제56조), 투자광고(제57조), 수수료(제58조) 등이 적용된다.

### (2) 국내 및 각국의 입법 동향 평가

최근 동법의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업무영역 및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이로 인한 고객 피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고객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지향점이 같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신의성실의 의무의 도입

신의성실의 의무와 관련하여 영국은 FSMA2000 제138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영업행위 규제의 원칙 규범인 “Principle for Business”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금융상품거래법 제36조에서 성실공정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금융거래계약에 취약한 고객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투자업법 제37조에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의무가 있다(제1조).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 이는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36조와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보험업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보험상품은 금융투자상품과는 달리 그 위험성은 크지 않으므로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전문성이나 복잡성 면에서는 보험상품도 금융투자상품에 못지 않으므로 고객 보호 필요성은 크고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2) 금융고객의 분류제도의 도입

고객을 일반고객과 전문고객으로 구분하여 영업행위규제의 적용 수준을 달리하는 것을 고객분류제도라고 한다. 일반고객과 전문고객은 경험, 지식, 목적, 재력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필요한 보호의 수준도 달리하는 것이 기능별 규제정신에 부합한다.

영국에서는 투자와 관련하여 고객이 일반소비자(private customer), 중급소비자(intermediate customer), 시장상대방(market counterparty) 등 세 종류로 구분되고(COB 4.1.), 보험과 관련하여 고객이 소매소비자(retail customer), 기업소비자(commercial customer) 등 두 종류로 구분된다(ICOB 1.2.5).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업법 제46조와 제47조에 의하면,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즉,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는 일반투자자를 위하여만 적용된다. 이를 위해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제46조 제12항). 이를 위반하면 금융투자업자 또는 판매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업 또는 판매권유대행의 등록취소 등의 공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제420조 제1항 제6호, 제420조 제3항, 제42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4호, 별표 제46호).

현행 보험업법에는 고객분류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상법 제663조를 보면 가계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포함)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계보험의 보험계약자를 더 보호하고 있는 점을 보면 고객분류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법적 효력을 규정할 뿐이고 공법적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객분류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현행 보험업법의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보험업자의 설명의무는 전문고객을 제외하고 일반고객을 위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 것이다. 다만, 보험고객 분류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는 설명의무의 경우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여 고객을 분류하지 않아도 금융업자가 그것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를 권유할 수 없으므로 적합성의 원칙은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영국의 경우에는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분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ICOB 4.3.).

### 3) 적합성의 원칙의 도입

적합성의 원칙이란 금융업자가 고객의 특성(거래 목적, 재산 상태, 거래 경험 등)에 적합하게 금융거래를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업자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의무로 선진적 고객보호제도이다. 영국의 경우적합성의 원칙은 투자는 물론이고 보험거래에도 적용되는 주의의무이다(cob 5.3., icob 4.4.).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법 제9조는 동 규정을 권유 방침을 통한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 반면, 금융상품거래법 제40조 제1호는 투자권유에서 적합성의 원칙을 법적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통합법 제46조에 규정하고 있다. 즉,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항).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 기타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그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제2항). 그리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그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제3항).

다만, 현행 보험업법이나 개정 중에 있는 보험업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고객분류에 소요되는 부담을 상쇄할 정도로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할 실익이 현저하다는 공감대가 보험의 거래 실무 및 하계에 아직 형성되지 않는 듯하다. 현 단계에서 보면, 자본시장통합법에 적합성의 원칙이 도입된 주요 이유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보험상품의 경우 이러한 위험

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장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4) 설명의무의 도입

금융업자가 고객에 대해 거래할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면 고객은 거래 여부에 대하여 정보에 기초한 판단(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5조, 제6조). 영국의 COB 4.2. 그리고 ICOB 4.1., 4.2 및 5.1도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통합법에서도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항).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확인을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제2항). 그리고 금융투자업자는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제3항). 이상의 설명의무는 자본시장통합법 제4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며, 전문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48조 제1항). 그리고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고객이 회수한 또는 회수할 금전 등의 총액을 공제한 것으로 추정한다(동법 제2항).

이와 관련 기존의 보험업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개정 중의 보험업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반시 책임에 대하여는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5) 부당권유의 금지의 도입

금융투자업자의 부당한 권유를 금지하는 것은 고객의 보호에 기여한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 영국 COB2.1, ICOB 2.1. 등도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통합법도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49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①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②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니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③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해우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④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⑤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험업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금융투자업법 제49조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보험의 전통적 모집 관행을 고려하면 금융투자업자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직은 다소 무리라고 한다.

### 6) 보험공시제도의 개선

보험업 부문에서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경영공시제도와 상품공시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경영정보의 공시는 모든 금융권에 적

용되는 원칙과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경우와 동일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또한 상품공시의 경우도 상품 특성별로 각 금융권역별 비교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상품 전체를 포괄하는 공시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러한 취지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우 기업공시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보험업법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각종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 (3)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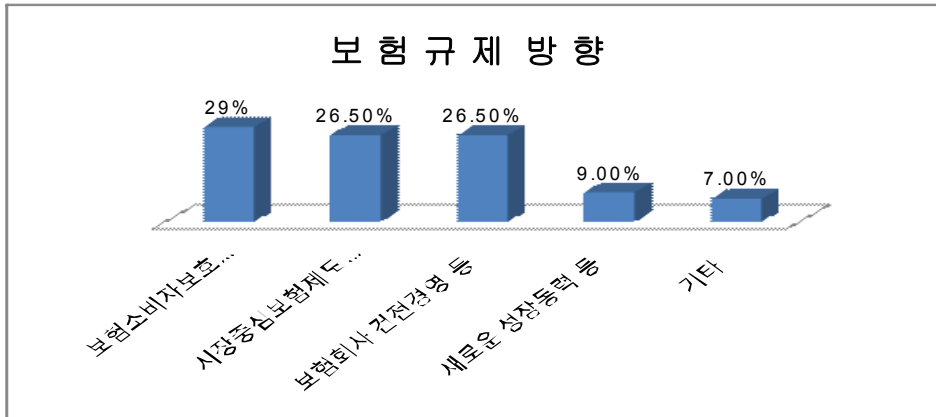
비록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험학회 회원과 보험업 종사자를 상대로 새로운 보험업 규제를 위한 방향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았다.

새로운 보험업 규제를 위하여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장중심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의 조성
- ②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
- ③ 보험회사의 건전 경영과 충분한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
- ④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⑤ 퇴출의 원활화
- ⑥ 기타

그 결과에 의하면 1순위 응답을 살펴 본 결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라는 응답이 29.0%, ‘시장중심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 조성’과 ‘보험회사의 건전경영과 충분한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가 26.5%로

나타났다. 그 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라는 응답은 9.0%, ‘기타’ 7.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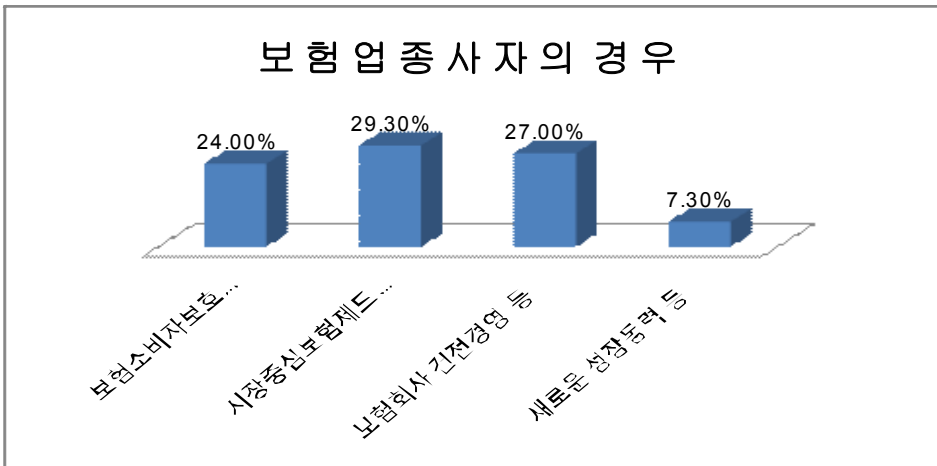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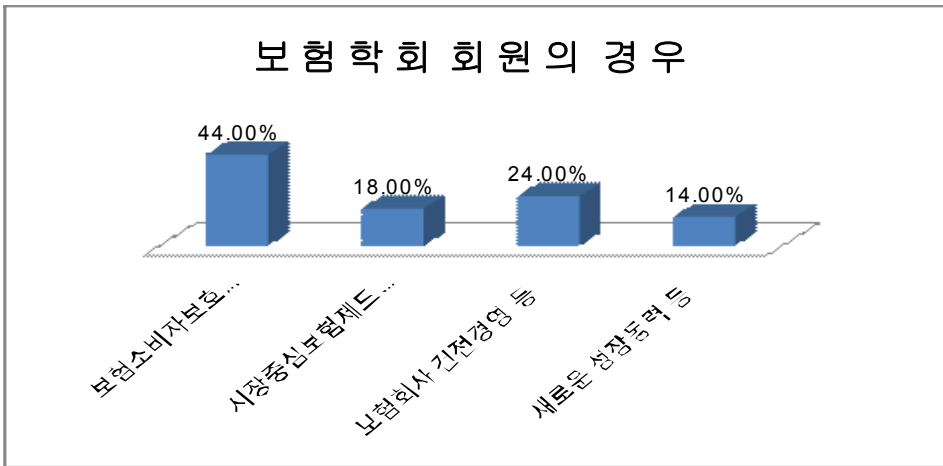


이러한 조사 자료를 보면 새로운 보험업 규제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지만, 그 중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가장 핵심 사안으로 들고 있다. 물론 시장중심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의 조성 및 보험회사의 건전 경영과 충분한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보험소비자 보호와 전혀 관련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규제를 강화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회원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면, 보험학회 회원의 경우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다음은 보험회사의 건전 경영과 충분한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 시장 중심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의 조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시장중심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

4. 보험업의 고객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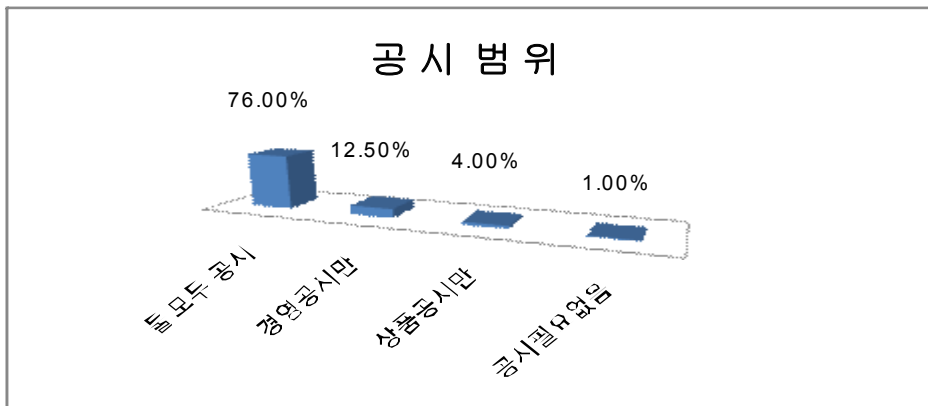
적인 보험장 조성, 보험회사의 건전 경영과 충분한 재무 자원의 확보 강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양자를 비교하여 보면,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보험시장 중심의 보험제도 구축에 매우 중요시하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보험업 종사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학회 회원의 경우에는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관련하여 공시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았다.

선생님께서서는 보험업의 경우 공시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결과 경영공시와 상품공시 모두 공시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76.0%, 상품공시만이라는 응답은 12.5%, 경영공시만이라는 응답은 4.0%,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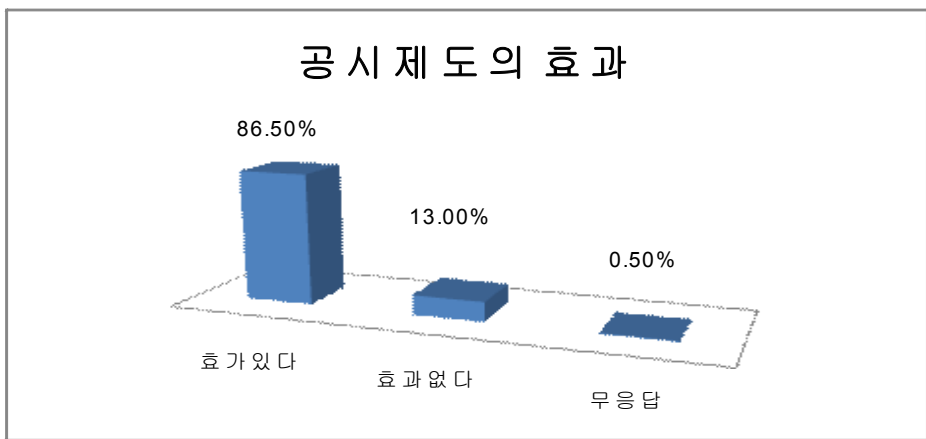


더불어 보험업의 경우 공시의 이행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도 설문조사를 하였다.

선생님께서서는 보험업의 경우 공시제도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4. 보험업의 고객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

그 결과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86.5%(매우 효과가 있다 16.0%, 효과가 있는 편 70.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13%(효과가 없는 편 12.0, 전혀 효과가 없다 1.0%)였다. 회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아도 그 결과는 유사하였다. 즉, 보험학회 회원의 경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90.0%, 보험업 종사자도 84.7%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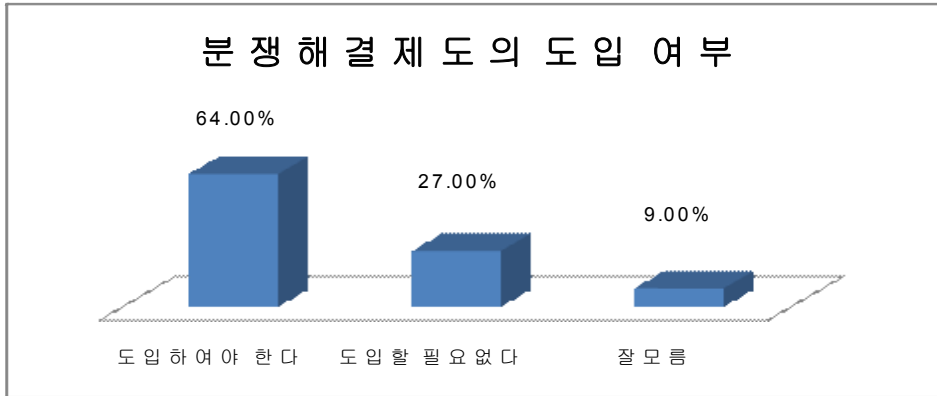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 상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였다.

만일 선생님께서는 보험업에서도 금융업 분야와 같은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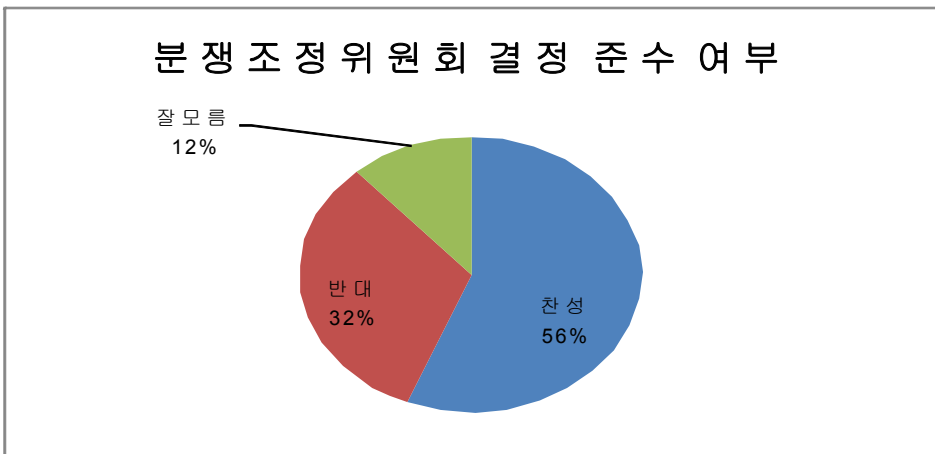
그 결과를 보면,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64.0%,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7.0%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험학회의



회원의 경우 도입해야 한다가 90.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55.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만약 이러한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준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는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56.0%, 반대 의견이 32.5%로, 의무를 부여하여야 함에 대하여 다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학회의 회원의 경우 찬성 76%, 반대 20%이며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찬성 49.3%, 반대 36.7%로 나타났다.

#### (4) 평가 결과

이상으로 보험업 고객보호의 수준에 대한 검토를 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국내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중의 보험업법 등도 보험업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선진국들의 입장에서는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비교적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보험학회 회원의 경우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중에 있는 보험업법의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자본시장통합법에 포함시켜 규제를 할 경우에는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 5 장 입법평가의 대안과 한계

이상으로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의 입법평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험규제는 최근의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연 어떻게 규제를 하여야 할 것인지 보험업법의 개정과 더불어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

특히, 2008년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부터 발생한 금융위기에 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들, 일본 등에서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문제점 분석과 더불어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금융시장의 한 부문인 보험시장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현 정부가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등 금융 선진 각국들과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보험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에 대하여, 아직 제도가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개정 중에 있거나 향후 개정해야 할 제도가 이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전적 입법평가를 해보고자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규율대안의 예상가능한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고, 예상되는 부담과 면제를 지적하며, 최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법형식의 윤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입법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규제의 국제적인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시장 중심의 보험제도를 구축하여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② 업무행위의 규제를 강화하여 공정거래를 확보함으로써 보험소비자보호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③ 보험회사의 건전 경영과 재무자원의 확보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규제 법제의 입법평

가의 한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경우 국내 보험규제 법제의 경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입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문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보험업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보험학회 회원의 경우보다 주관성이 좀 더 강한 것으로 보이거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하여 보험도 동 범주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한 그에 대한 감독 규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하여 본 결과, 국제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그러한 방향이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감독 제도와 관련해서도 단일의 금융감독규제기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었다.

셋째, 금융규제의 통합과 관련하여 겸업 내 겸영의 허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도 방카슈랑스 등으로 인하여 개방된 열거주의를 취함으로써 겸업 내지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이러한 겸영을 허용하는 추세로 보인다. 나아가, 설문조사의 경우도 동일한 견해로 보인다. 다만, 보험업 종사자들은 이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그것은 보험업 종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겸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보험업은 다른 금융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신중한 고려를 한 다음 단계적으로 겸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제도의 강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회사의 건전 경영과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추세 및 개정 중에 있는 보험업법의 경우도 이러한 취지로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의 경우도 동일한 입장을 따르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에서 소개를 하였다. 따라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제도의 강화의 방향은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자본시장통합법에 포함시켜 규제를 할 경우에는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험규제 법제의 개정 방향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국제적인 추세를 잘 반영하여 법률의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직까지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 범위 내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통합시에는 보험업의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좋을 것을 판단된다.

다만, 본 보고서상의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에 대한 이러한 입법평가는 한계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입법평가방식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조사방법을 체계화한 계층화법(AHP기법)을 적용한 종합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보고서의 입법평가 방식은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조사방법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동 주제에 대한 분석은 단지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을 계량화하여 비용-편익 분석의 틀 속에 포함시키는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법 제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인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만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법평가는 규율 대안에 대한 결과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그에 따른 시행착오의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예상되는 비용의 부담 또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김갑래, “미국 금융규제개혁안의 내용과 평가”, 자본시장 Weekly, 자본시장연구원, 2009. 6. 16
- 김동원, “점업은행제도의 특성과 주요 쟁점”, 금융연구, 제9권 2호, 1995
- 김민석/빈기범, “서브프라임 사태의 금융시장 파급경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이슈페이퍼, 증권연구원, 2007. 12
- 김병권, 『글로벌 금융위기 속의 한국영제 현실과 전망(1)』,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08. 11. 13
- 김선호, “점업은행제도의 도입에 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 보고서, 1997
- 김은경, 『EU의 금융시장통합과 금융감독』, 국제지역연구, 2005. 4. 30
- 남현주, “자본시장통합법의 특징과 향후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 우정경영연구원, 2007 여름
- 류건식/김석영/이상우/박정희/김동겸,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보험개발원, 2006. 7
-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서브프라임사태의 교훈과 투기자본 정책대응 방향』, 2008. 10
- 박재식, 보험업법 개정 의의와 내용 해설, 손해보험, 2003. 6
- 박현수, 『글로벌 금융위기의 향상』, CEO Information, 2008. 10. 5
- 보험연구원, 『FY2009 보험산업 수정 전망과 대응과제』, 2009. 2
- 안철경/신문식/이상우/조혜원,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보험개발원, 2003. 7

<참 고 문 헌>

- 이동걸,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 : 종합평가』, 주간 금융브리프, 2006.  
5. 19
- 이륜석, 『주요국 금융규제 개편논의와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2008.  
4. 12
- 이병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의 논리』, BFL, 서울대학교 금융  
업센터, 2006
- 이병윤/이건번/한상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바람직한 관계 정립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3
- 이서원,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화의 미래”, 『LG Business Insight』,  
2009. 3. 11
- 오영수, 『자본시장통합법 이후의 보험산업의 진로』, CEO Report, 보  
험개발원, 2007. 7
- 이종한/전창환/송원근/유종선, 『주요국 금융규제 개혁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12
- 재정경제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보  
도자료, 2004
-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2006. 10
- 전성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관한 제도적 검토 :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산업조직연구, Vol. 12. No. 2, 2004
- 정세창 · 권순일, 『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2001
- 정익준, “금융자율화에 따른 일반은행의 업무영역 확대와 위험성 -  
증권 · 보험업 진출을 가정한 모의실증분석-”,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2. 1

- 좌승희, □□내생적 금융제도론□□, 비봉출판사, 1995
- 최 혁,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한국경제포럼 제2집 1호
- 하홍윤,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쟁점』, 금융리스크리뷰, 2006. 봄
- 한기정, “금융투자업법의 제정이 보험업법 개정에 미칠 영향”, 보험개발연구, 2007. 7
- 한국금융연구원,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규제금융감독체제의 개선방향』, 주간금융브리프, 2009. 2. 28
-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07. 10. 2
- 吉川 満, 『今週のテーマ:□□総合金融規制改革□□の考え方を検証』, 資本市場調査本部, 2009. 7. 10
- 金融審議会金融分科会第二部会, “銀行等による保険販売規制の見直しについて”, 2004. 3. 31
- 金融庁, 保険に関する規制緩和について, 2007. 12. 5
- 金融庁金融研究研修センター ディスカッションペーパー No. 2007-3
- 杉田浩治, 『金融規制改革についての欧州の考え方』, 日本証券経済研究所, 2009. 4. 16
- 上柳敏郎, 『融規制・消費者保護法と規制影響評価』, 東京駿河台法律事務所, 2008. 11. 28
- 小立 敬, 米國における金融規制のあり方とプリンシプルの議論, 資本市場クォーターリー, 2008. spring
- 野村美明, “日本金融法の規制影響評価”, 『NBL』 900号, 2009



<참 고 문 헌>

奥山裕之, フランスの金融安全法, レファレンス, 2004. 2

村井陸男, “21世紀金融システムに向ける銀行規制とセーフティネット”,  
□□NUCB Journal of Economics and Information Science』 vol. 46  
No. 2, 2001


財政金融課, 『金融取引と消費者保護体制』, 調査と情報, 2008. 12. 4

田代一聡/白須洋子, 『欧州における新たな保険規制について—CEIOPS  
ソルベンシーIIの試み—』, 金融庁金融研究研修センター ディ  
スカッションペーパー. No.2007-3

McKinsey Global Institute, 『The New Power Brokers: How Oil, Asia,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are Shaping Global Capital  
Markets』, 2007.10

Mckinsey Global Institute, 『Mapping Global Capital Markets Fourth An-  
nual Report』, 2008. 1

# 부 록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도의 입법평가 <보고서>**

2009-07

# Contents

|                                    |     |
|------------------------------------|-----|
| <b>I. 조사 개요</b>                    |     |
|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 185 |
| 2. 조사 설계 .....                     | 185 |
| 3. 조사 내용 .....                     | 186 |
| 4. 응답자 특성 .....                    | 186 |
| <b>II. 조사결과 요약</b> .....           | 187 |
| <b>III. 조사결과 분석</b>                |     |
| 1. ‘자본시장 통합법’ 인지도 .....            | 203 |
| 2. ‘자본시장 통합법’ 인지경로 .....           | 204 |
| 3. ‘자본시장 통합법’ 관심도 .....            | 205 |
| 4. 금융감독기구 선호형태 .....               | 206 |
| 5. 보험업의 성격 .....                   | 207 |
| 6. ‘자본시장 통합법’ 규제대상에 보험업 포함 여부 ..   | 208 |
| 7. 보험업의 규제대상 포함 시기 .....           | 209 |
| 8. 금융기관의 보험파생상품 취급에 대한 의견 .....    | 210 |
| 9. 파생금융상품의 규제 기준 .....             | 211 |
| 10. 보험업의 공시의무 .....                | 212 |
| 11. 보험업 공시제도의 효과 .....             | 213 |
| 12. 보험업의 ‘분쟁조정제도’ 도입 여부 .....      | 214 |
| 13. 분쟁조정위 결정의 준수의무 부과 여부 .....     | 215 |
| 14. 보험사의 ‘자회사 방식 타금융업 진출’ 허용 여부 .. | 216 |
| 15. 보험사의 타금융업 진출요건의 법제화 필요성 .....  | 217 |
| 16. 보험업 규제 방안_1순위 .....            | 218 |
| 16. 보험업 규제 방안_1+2순위 .....          | 219 |
| 17. 제안사항 .....                     | 221 |
| <b>IV. 통계자료 : 설문지</b> .....        | 225 |

## » I. 조사 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응답자 특성

##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도의 입법에 대해 유관 전문가와 보험업 종사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입법평가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09년 7월 14~24일(11일)에 걸쳐 온라인, 팩스 및 대면면접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2. 조사 설계

| 항 목    | 세 부 내 용                          |
|--------|----------------------------------|
| 조사대상   | 보험학회원 및 보험업 종사자                  |
| 표본수    | 200명<br>(보험학회원 50명, 보험업 종사자150명) |
| 표본추출방법 | 리스트에 기반한 무작위추출                   |
| 표본오차   | 해당사항 없음(유의표집)                    |
| 조사방법   | 온라인, 팩스 및 대면면접을 이용한 조사           |
| 조사기간   | 2009년 7월 14~24일(11일간)            |
| 조사수행   | (주)디시알폴                          |

### 3. 조사 내용

#### >> 조사 항목

1. ‘자본시장 통합법’ 인지도
2. ‘자본시장 통합법’ 인지경로
3. ‘자본시장 통합법’ 관심도
4. 금융감독기구 선호형태
5. 보험업의 성격
6. ‘자본시장 통합법’ 규제대상에 보험업 포함 여부
7. 보험업의 규제대상 포함 시기
8. 금융기관의 보험과생상품 취급에 대한 의견
9. 파생금융상품의 규제 기준
10. 보험업의 공시의무
11. 보험업 공시제도의 효과
12. 보험업의 ‘분쟁조정제도’ 도입 여부
13. 분쟁조정위 결정의 준수의무 부과 여부
14. 보험사의 ‘자회사 방식 타금융업 진출’ 허용 여부
15. 보험사의 자회사 방식 타금융업 진출시, 요건의 법제화 필요성
16. 보험업 규제 방안
17. 제안

### 4.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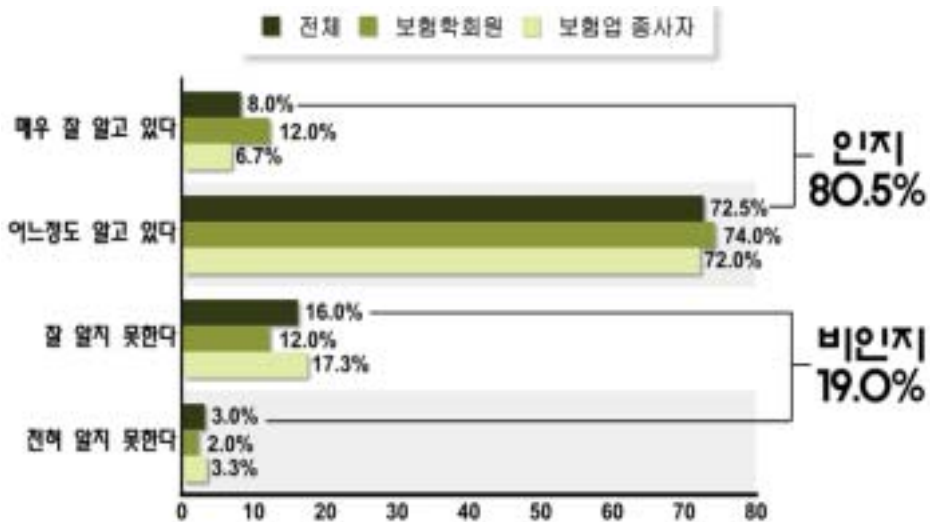
| 구 분 |          | 사례수<br>(명) | 비율<br>(%) |
|-----|----------|------------|-----------|
| 전 체 |          | 200        | 100.0     |
| 성 별 | 남 성      | 133        | 66.5      |
|     | 여 성      | 67         | 33.5      |
| 연 령 | 20 ~ 30대 | 89         | 44.5      |
|     | 40 대     | 90         | 45.0      |
|     | 50대 이상   | 21         | 10.5      |
| 분 야 | 보험학회원    | 50         | 25.0      |
|     | 보험업종사자   | 150        | 75.0      |
| 경 력 | 3년 미만    | 51         | 25.5      |
|     | 3~7년 미만  | 79         | 39.5      |
|     | 7~10년 미만 | 28         | 14.0      |
|     | 10년 이상   | 42         | 21.0      |

## » II. 조사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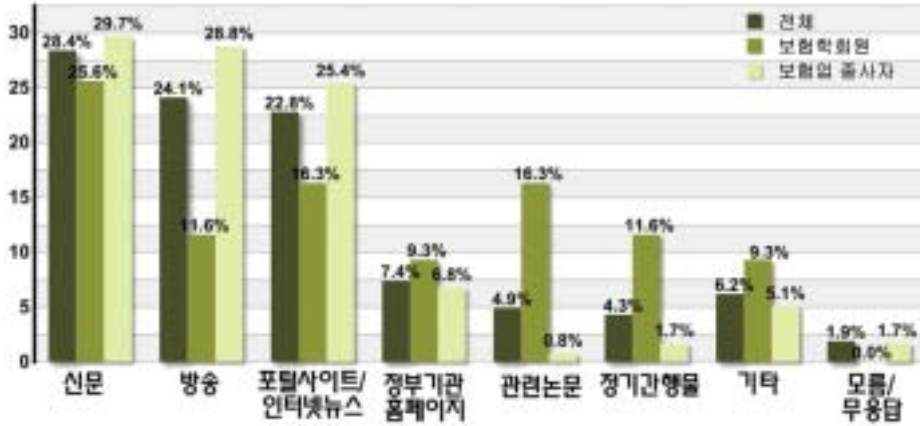
## 조사결과 요약

-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인지도는 80.5%로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인지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잘 알고 있다’ 8.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72.5% 였음. 보험학회원의 경우, 자통법 인지도는 86.0%(매우 잘 알고 있다 12.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74.0%)였으며, 보험업 종사자의 자통법 인지도는 78.7%(매우 잘 알고 있다 6.7%, 어느 정도 알고 있다 72.0%)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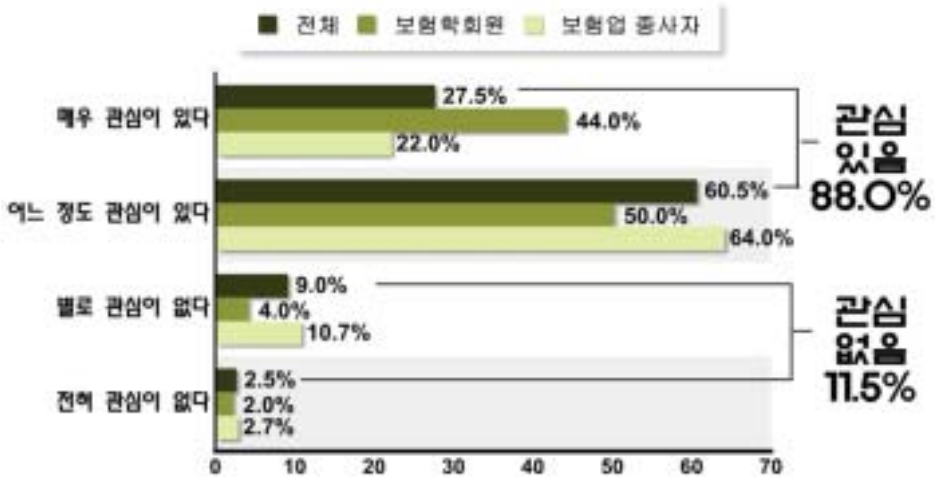


- ‘자본시장 통합법’ 인지층(162명)을 대상으로 인지경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신문’ 28.4%, ‘방송’ 24.1% ‘포털사이트/인터넷뉴스’ 2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 외, ‘정부기관 홈페이지’ 7.4%, ‘관련 논문’ 4.9%, ‘정기간행물’ 4.3%, ‘기타’ 6.2%의 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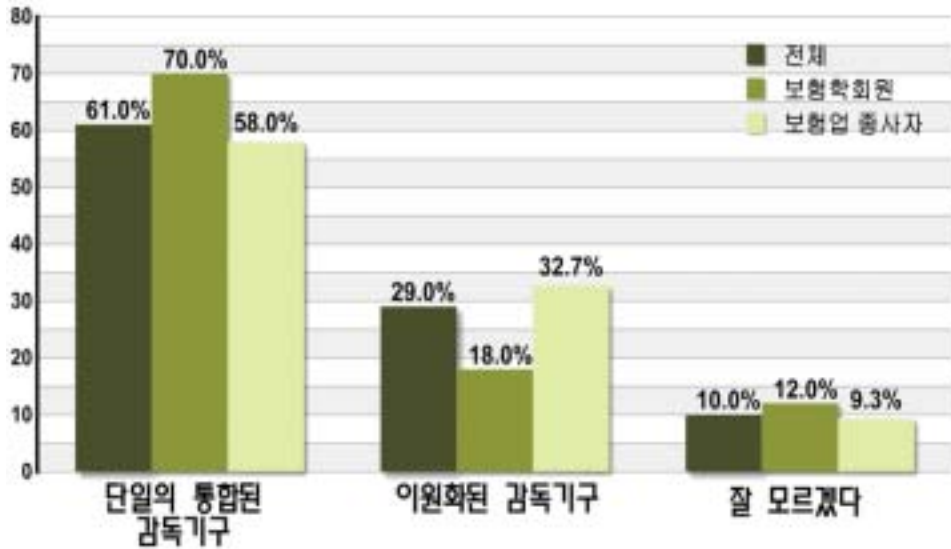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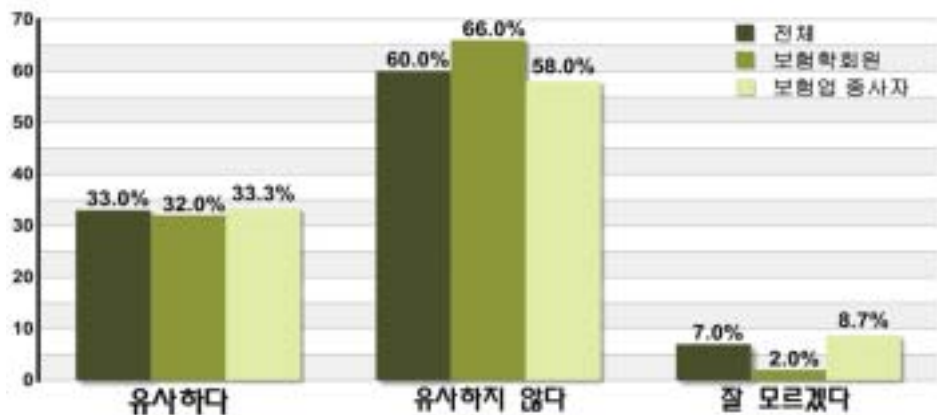
-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관심도는 88.0%로 매우 높게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매우 관심이 있다’ 27.5%,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60.5%였음. 보험학회원의 경우 관심도는 94.0%(매우 관심이 있다 44.0%, 어느정도 관심이 있다 50.0%)였음. 보험업 종사자의 관심도는 86.0%(매우 관심이 있다 22.0%,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64.0%)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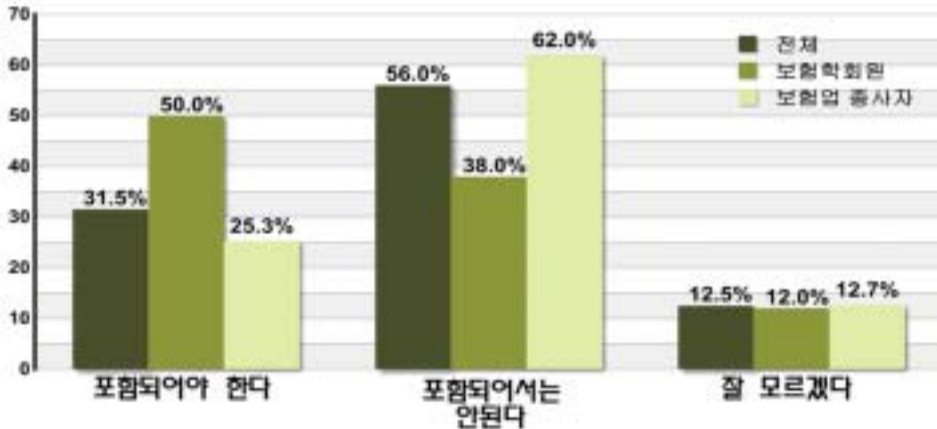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바람직한 금융감독기구의 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단일의 통합기구’라는 응답이 61.0%로 ‘이원화된 감독기구’라는 응답 29.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보험학회원의 경우, ‘단일의 통합기구’ 70.0% > ‘이원화된 감독기구’ 18.0%였으며, 보험업 종사자는 ‘단일의 통합기구’ 58.0% > ‘이원화된 감독기구’ 32.7%로 조사되어 두 집단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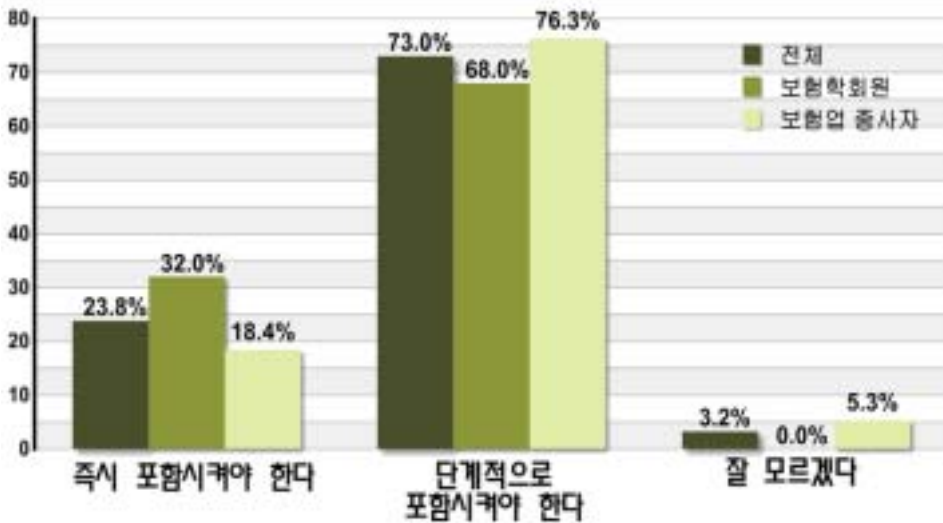
- 일반 금융업에 비해 보험업이 성질상 유사하다고 보는 지 질문한 결과, ‘유사하지 않다’는 응답이 60.0%로 ‘유사하다’는 응답 33.0%의 두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음. 보험학회원의 경우, ‘유사하지 않다’ 66.0% > ‘유사하다’ 32.0%였으며, 보험업 종사자는 ‘유사하지 않다’ 58.0% > ‘유사하다’ 33.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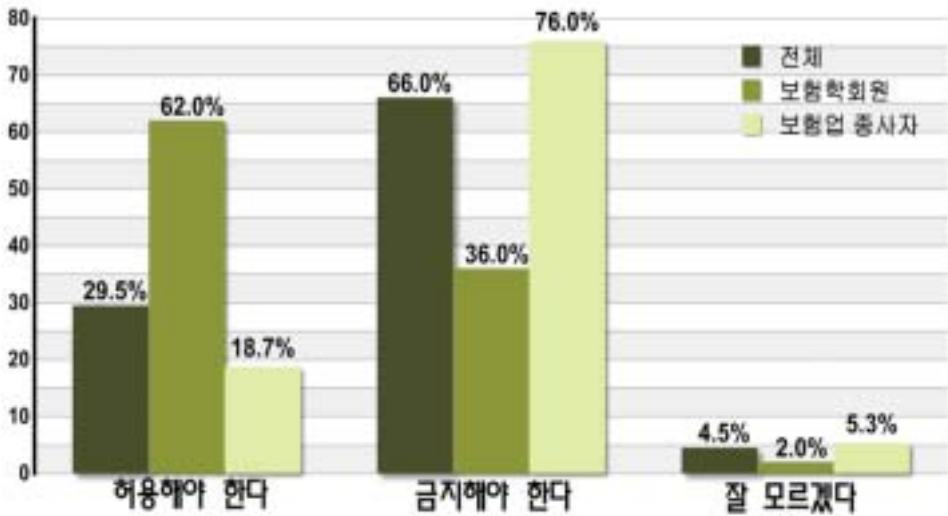
-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대상으로 보험업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지 질문한 결과,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56.0%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 31.5%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보험회원의 경우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0.0%로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응답 38.0%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반면,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62.0%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 25.3%보다 월등히 높았음



- 보험업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계층(63명)을 대상으로 그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단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73.0%로 ‘즉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응답 23.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보험회원의 경우, ‘단계적으로’ 68.0% > ‘즉시’ 32.0%로 나타났으며,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단계적으로’ 76.3% > ‘즉시’ 18.4%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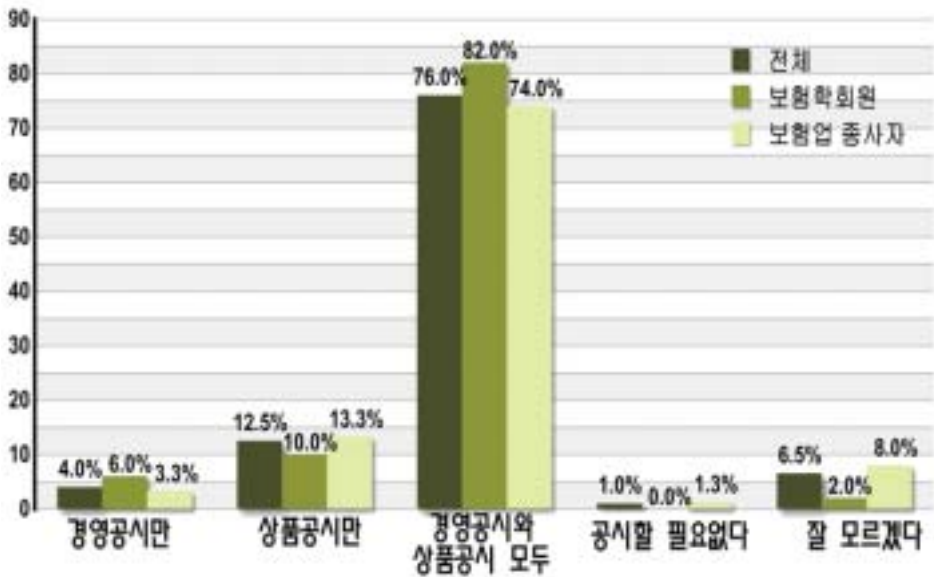
- 금융기관에서 보험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6.0%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 29.5%보다 더 높게 나타남. 하지만 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보험회원의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2.0%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 36.0%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반면,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금지’ 의견이 76.0%로 ‘허용’ 의견 18.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음



- 파생금융상품을 일반 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 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47.0%,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5.0%로 팽팽하게 나타남. 보험학회원의 경우, ‘그렇다’ 48.0%, ‘그렇지 않다’ 50.0%였으며, 보험업 종사자는 ‘그렇다’ 46.7%, ‘그렇지 않다’ 43.3%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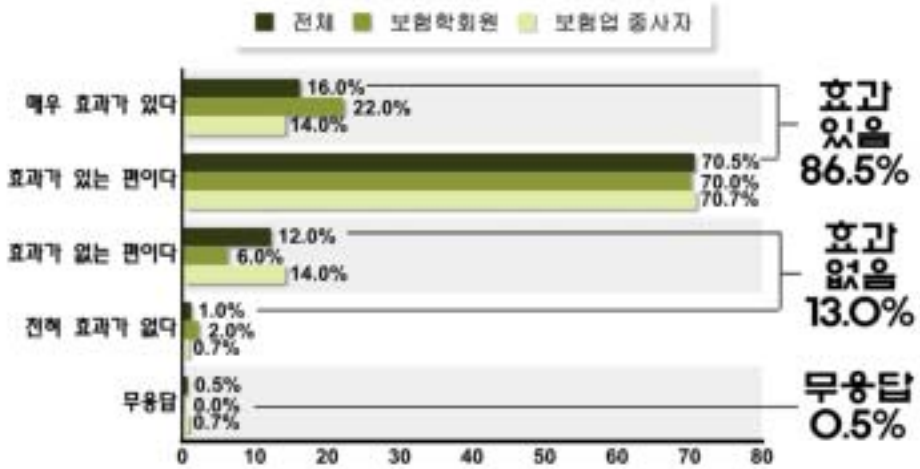


- 보험업의 경우 공시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경영공시와 상품공시 모두’라는 응답이 76.0%로 타 응답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상품공시만’이라는 응답은 12.5%, ‘경영공시만’이라는 응답은 4.0%, ‘공시할 필요없다’는 응답은 1.0%였음. 보험학회원과 보험업 종사자 모두 ‘경영공시와 상품공시 모두’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보험업의 경우 ‘공시제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 지 질문한 결과,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86.5% (매우 효과가 있다 16.0%, 효과가 있는 편 70.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13.0%(효과가 없는 편 12.0%, 전혀 효과가 없다 1.0%)였음. 보험학회원의 경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90.0%였으며, 보험업 종사자도 84.7%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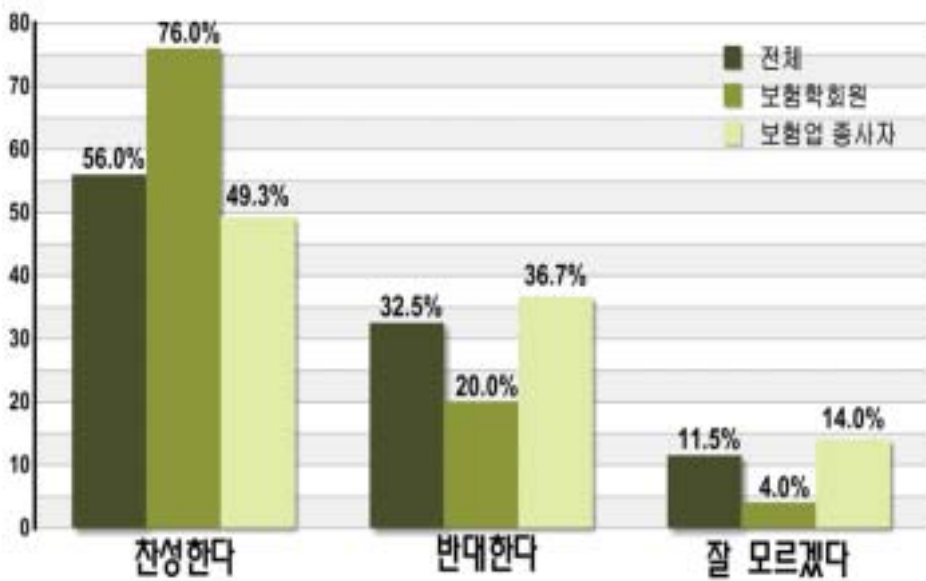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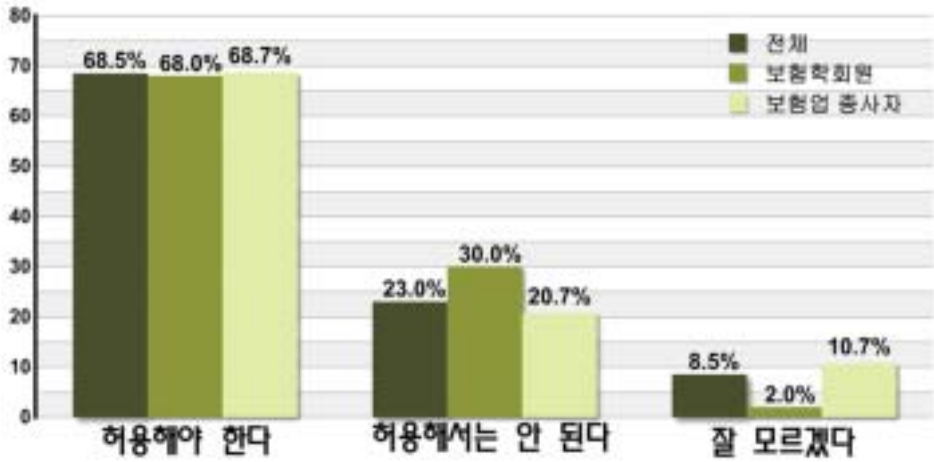
- 보험업에서도 금융업 분야와 같은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4.0%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 27.0%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분야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보험학회원의 경우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90.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도입해야 한다’ 55.3%, ‘도입할 필요가 없다’ 32.7%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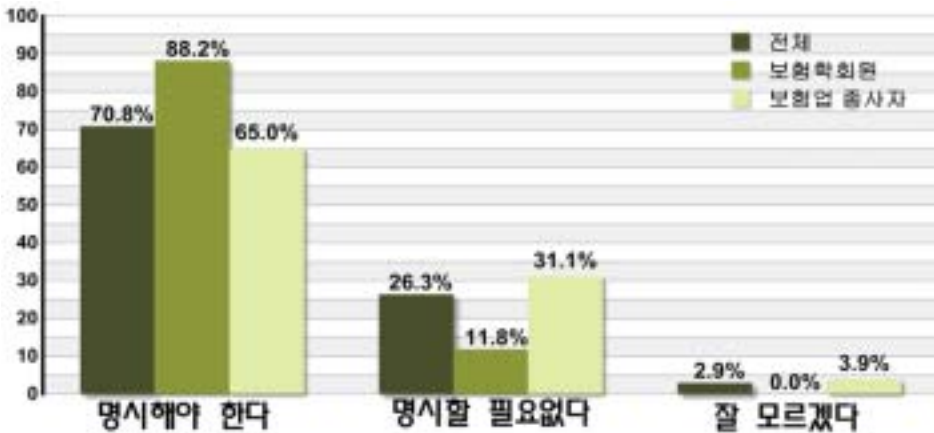
-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험회사가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의견이 56.0%로 ‘반대’ 의견 32.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보험학회원의 경우 ‘찬성’이 76.0%로 ‘반대’ 20.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찬성’ 49.3%, ‘반대’ 36.7%였음



- 보험회사가 자회사 방식으로 타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8.5%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응답 23.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보험학회원의 경우 ‘허용’ 68.0%, ‘금지’ 30.0%였으며,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허용’ 68.7%, ‘금지’ 20.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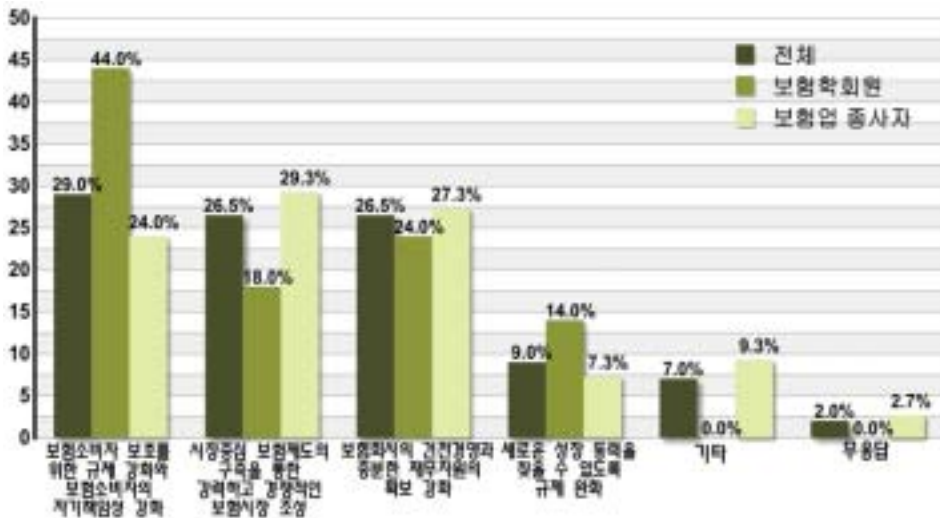
- 보험회사가 자회사 방식으로 타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계층(137명)을 대상으로, 그 요건을 법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는 지 질문하였음. 그 결과,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70.8%로 ‘명시할 필요없다’는 응답 26.3%보다 월등히 높았음. 보험학회원의 경우, ‘명시해야 한다’ 88.2%, ‘명시할 필요없다’ 11.8%였으며, 보험업 종사자는 ‘명시해야 한다’ 65.0%, ‘명시할 필요없다’ 31.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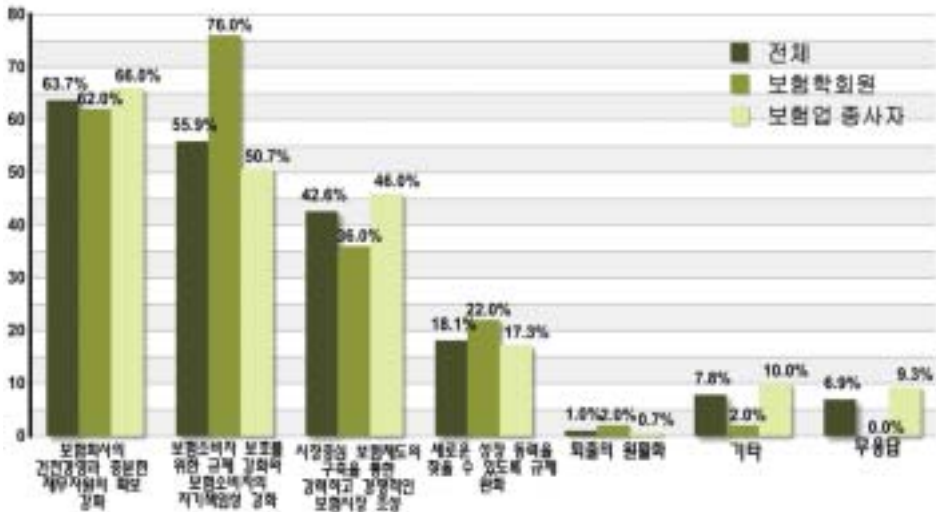
- 새로운 보험업 규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 1순위 응답을 살펴 본 결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라는 응답이 29.0%, ‘시장중심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 조성’과 ‘보험회사의 건전경영과 충분한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가 26.5%로 나타났음. 그 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라는 응답은 9.0%, ‘기타’ 7.0%였음

- 보험학회원의 경우,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보험회사의 건전경영과 충분한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 24.0%, ‘시장중심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 조성’ 18.0%,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 14.0% 등의 순이었음

-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시장중심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 조성’ 29.3%, ‘보험회사의 건전경영과 충분한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 27.3%,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 24.0% 등의 순이었음



- 새로운 보험업 규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 1, 2순위 응답을 함께 살펴 본 결과, ‘보험회사의 건전경영과 충분한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 63.7% >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 55.9% > ‘시장중심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 조성’ 42.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 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라는 응답은 18.1%, ‘퇴출의 원활화’ 1.0%, ‘기타’ 7.8%였음
- 보험학회원의 경우,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 76.0%, ‘보험회사의 건전경영과 충분한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 62.0%, ‘시장중심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 조성’ 36.0%,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 22.0% 등의 순이었음
-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경영과 충분한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 66.0%,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 50.7%, ‘시장중심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 조성’ 46.0%,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 17.3% 등의 순이었음



## 》 III. 조사결과 분석

1. ‘자본시장 통합법’ 인지도
2. ‘자본시장 통합법’ 인지경로
3. ‘자본시장 통합법’ 관심도
4. 금융감독기구 선호형태
5. 보험업의 성격
6. ‘자본시장 통합법’ 규제대상에 보험업 포함 여부
7. 보험업의 규제대상 포함 시기
8. 금융기관의 보험파생상품 취급에 대한 의견
9. 파생금융상품의 규제 기준
10. 보험업의 공시의무
11. 보험업 공시제도의 효과
12. 보험업의 ‘분쟁조정제도’ 도입 여부
13. 분쟁조정위 결정의 준수의무 부과 여부
14. 보험사의 ‘자회사 방식 타금융업 진출’ 허용 여부
15. 보험사의 타금융업 진출요건의 법제화 필요성
16. 보험업 규제 방안\_1순위
16. 보험업 규제 방안\_1+2순위
17.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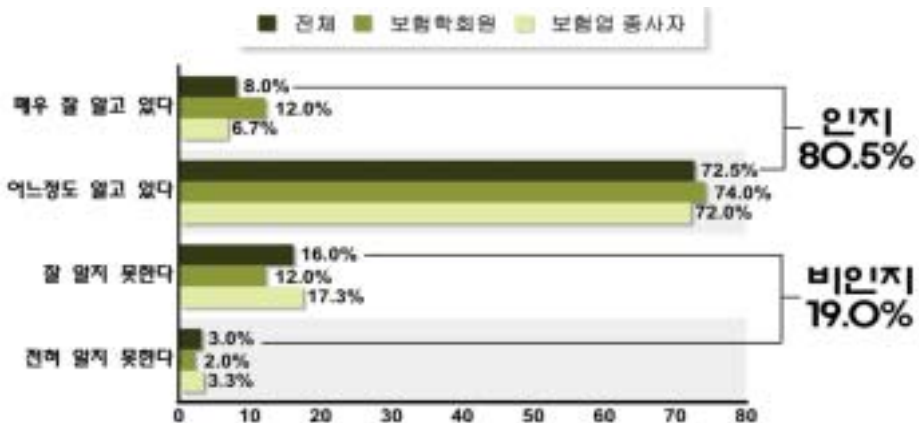
## 1. ‘자본시장 통합법’ 인지도



선생님께서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른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분석 결과

-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인지도는 80.5%로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잘 알고 있다’ 8.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72.5% 였음
- 보험학회원의 경우, 자통법 인지도는 86.0%(매우 잘 알고 있다 12.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74.0%)였으며, 보험업 종사자의 자통법 인지도는 78.7%(매우 잘 알고 있다 6.7%, 어느 정도 알고 있다 72.0%)였음
-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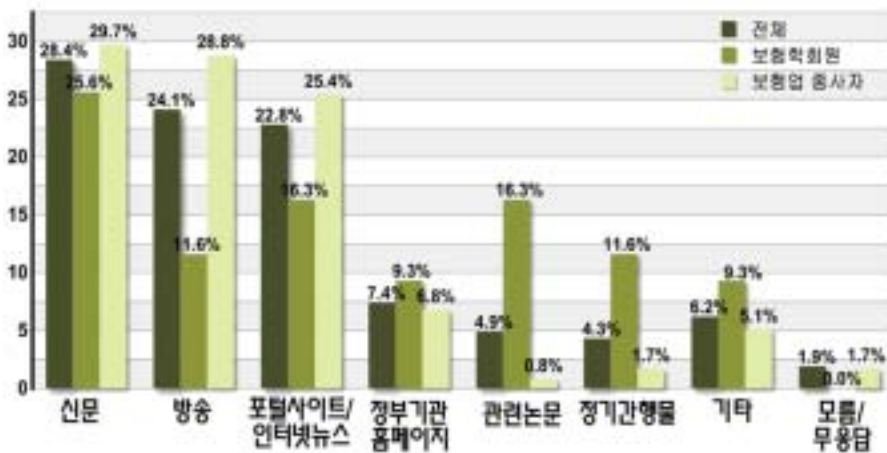
## 2. ‘자본시장 통합법’ 인지경로



(문1의 ①, ②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분석 결과

- ‘자본시장 통합법’ 인지층(162명)을 대상으로 인지경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신문’ 28.4%, ‘방송’ 24.1% ‘포털사이트/인터넷뉴스’ 2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 외, ‘정부기관 홈페이지’ 7.4%, ‘관련 논문’ 4.9%, ‘정기간행물’ 4.3%, ‘기타’ 6.2%의 순이었음
- 보험학회원의 경우, ‘신문’ 25.6%, ‘관련논문’과 ‘포털사이트/인터넷뉴스’ 16.3%, ‘방송’과 ‘정기간행물’ 11.6%,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기타’ 9.3%의 순이었음
-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신문’ 29.7%, ‘방송’ 28.8%, ‘포털사이트/인터넷뉴스’ 25.4% 등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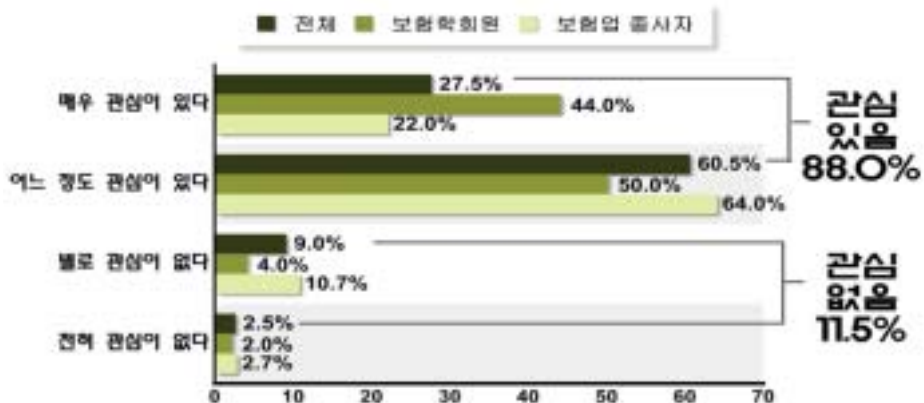
### 3. ‘자본시장 통합법’ 관심도



선생님께서서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분석 결과

-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관심도는 88.0%로 매우 높게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매우 관심이 있다’ 27.5%,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60.5%였음
- 보험학회원의 경우 관심도는 94.0%(매우 관심이 있다 44.0%, 어느정도 관심이 있다 50.0%)였음. 보험업 종사자의 관심도는 86.0%(매우 관심이 있다 22.0%, 어느정도 관심이 있다 64.0%)로 나타났음
-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관심도는 7~10년 경력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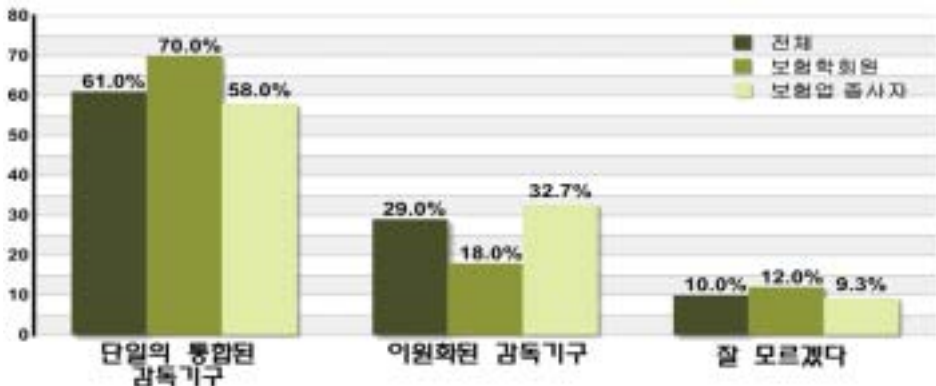
#### 4. 금융감독기구 선호형태



선생님께서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금융감독기구를 든다면 어떤 형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분석 결과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바람직한 금융감독기구의 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단일의 통합기구’라는 응답이 61.0%로 ‘이원화된 감독기구’라는 응답 29.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 보험회원의 경우, ‘단일의 통합기구’ 70.0% > ‘이원화된 감독기구’ 18.0%였으며, 보험업 종사자는 ‘단일의 통합기구’ 58.0% > ‘이원화된 감독기구’ 32.7%로 조사되어 두 집단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음
- ‘단일의 통합기구’라는 응답은 40대, 3년 미만 및 7~10년 경력자에서 특히 높았음
- ‘이원화된 통합기구’라는 응답은 3~7년 및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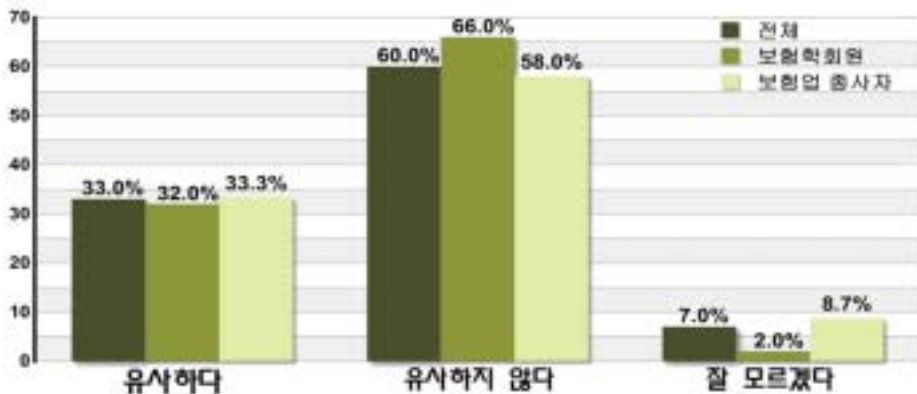
## 5. 보험업의 성격



선생님께서서는 일반 금융업에 비해 보험업이 그 성질상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 분석 결과

- 일반 금융업에 비해 보험업이 성질상 유사하다고 보는 지 질문한 결과, ‘유사하지 않다’는 응답이 60.0%로 ‘유사하다’는 응답 33.0%의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음
- 보험회원의 경우, ‘유사하지 않다’ 66.0% > ‘유사하다’ 32.0%였으며, 보험업 종사자는 ‘유사하지 않다’ 58.0% > ‘유사하다’ 33.3%로 나타남
- ‘유사하지 않다’는 응답은 50대 이상, 3년 이상 경력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음
- 반면 ‘유사하다’는 응답은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6. ‘자본시장 통합법’ 규제대상에 보험업 포함 여부



선생님께서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대상으로 보험업도 포함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분석 결과

-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대상으로 보험업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지 질문한 결과,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56.0%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 31.5%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 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보험회원의 경우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0.0%로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응답 38.0%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반면,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62.0%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 25.3%보다 월등히 높았음
-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여성, 7년 이상 경력자에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 3년 미만 경력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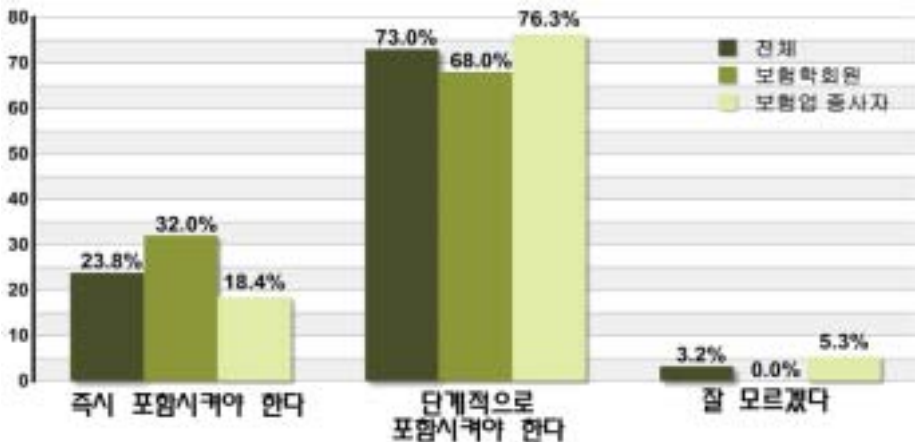
## 7. 보험업의 규제대상 포함 시기



(문6의 ①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보험업을 언제부터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십니까?

### 분석 결과

- 보험업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계층(63명)을 대상으로 그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단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73.0%로 ‘즉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응답 23.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 보험회원의 경우, ‘단계적으로’ 68.0% > ‘즉시’ 32.0%로 나타났으며,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단계적으로’ 76.3% > ‘즉시’ 18.4%였음
- ‘단계적으로’라는 응답은 40대, 3~7년 경력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즉시’라는 응답은 20~30대, 3년 미만 경력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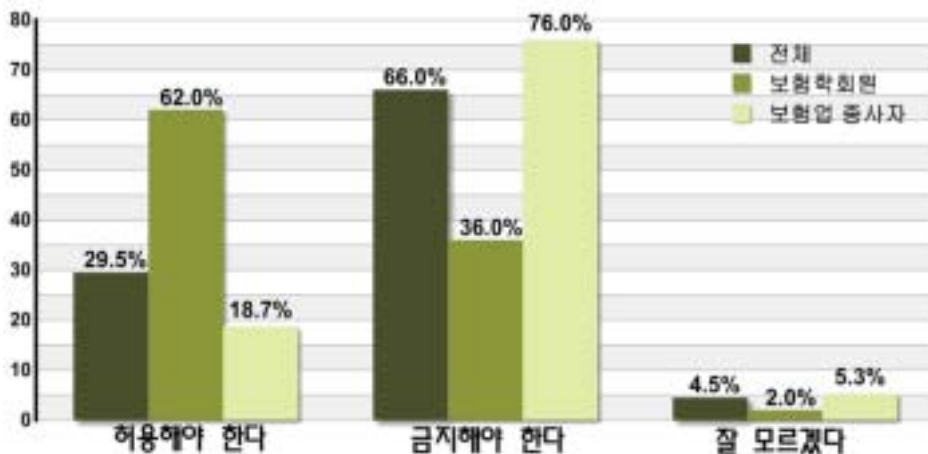
## 8. 금융기관의 보험파생상품 취급에 대한 의견



선생님께서서는 금융기관에서 보험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분석 결과

- 금융기관에서 보험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6.0%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 29.5%보다 더 높게 나타남
- 하지만 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보험회원의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2.0%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 36.0%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반면,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금지’ 의견이 76.0%로 ‘허용’ 의견 18.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음
- ‘금지’ 의견은 여성, 3~10년 경력자에서 특히 높았음
- 반면, ‘허용’ 의견은 남성, 3년 미만 및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비교적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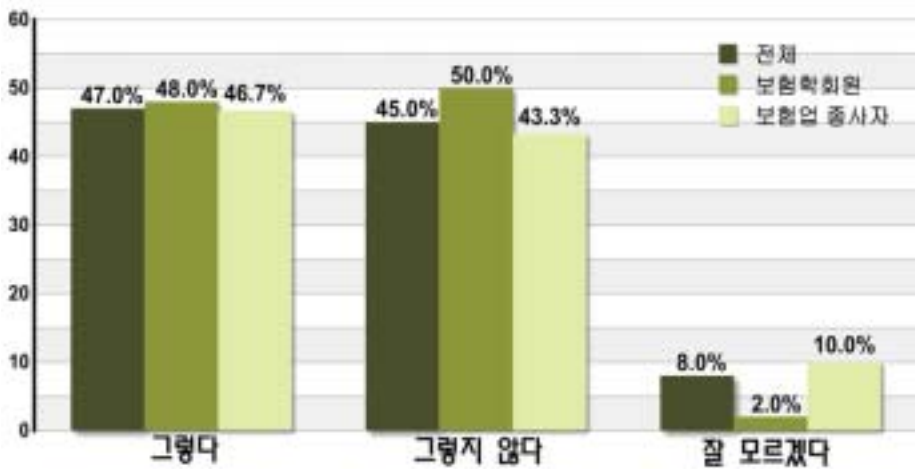
## 9. 파생금융상품의 규제 기준



선생님께서서는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이 보험의 특성을 가진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일반 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 분석 결과

- 파생금융상품을 일반 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47.0%,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5.0%로 팽팽하게 나타남
- 보험회원의 경우, ‘그렇다’ 48.0%, ‘그렇지 않다’ 50.0%였으며, 보험업 종사자는 ‘그렇다’ 46.7%, ‘그렇지 않다’ 43.3%로 나타났음
- ‘파생금융상품을 일반 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 20~30대,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여성, 3~10년 경력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10. 보험업의 공시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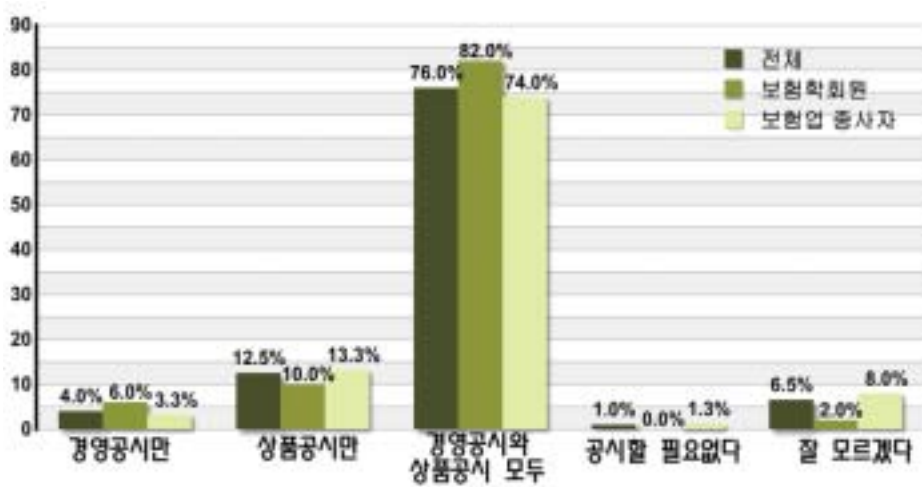


선생님께서서는 보험업의 경우 공시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분석 결과

- 보험업의 경우 공시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경영공시와 상품공시 모두’라는 응답이 76.0%로 타 응답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상품공시만’이라는 응답은 12.5%, ‘경영공시만’이라는 응답은 4.0%, ‘공시할 필요없다’는 응답은 1.0%였음
- 보험학회원과 보험업 종사자 모두 ‘경영공시와 상품공시 모두’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 ‘경영공시와 상품공시 모두’라는 응답은 남성, 40대 이상,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특히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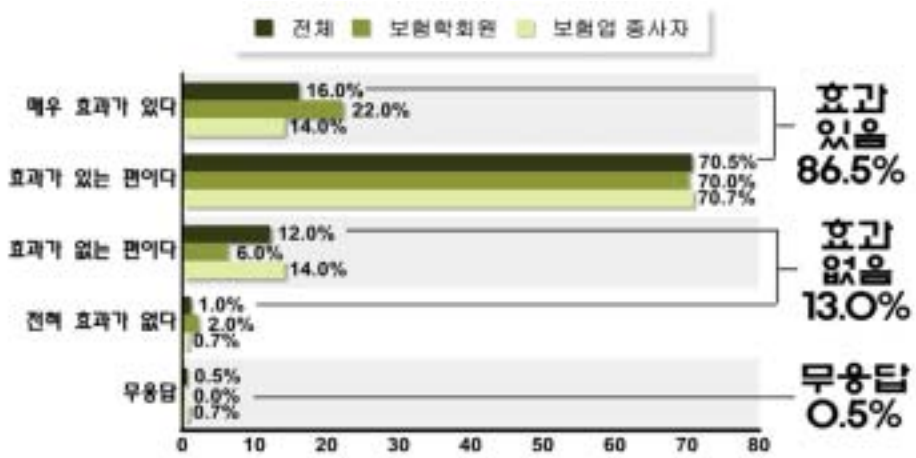
## 11. 보험업 공시제도의 효과



선생님께서서는 보험업의 경우 ‘공시제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분석 결과

- 보험업의 경우 ‘공시제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86.5% (매우 효과가 있다 16.0%, 효과가 있는 편 70.5%)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반면,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13.0%(효과가 없는 편 12.0%, 전혀 효과가 없다 1.0%)였음
- 보험학회원의 경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90.0%였으며, 보험업 종사자도 84.7%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계층을 막론하고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으며, 40대 이상,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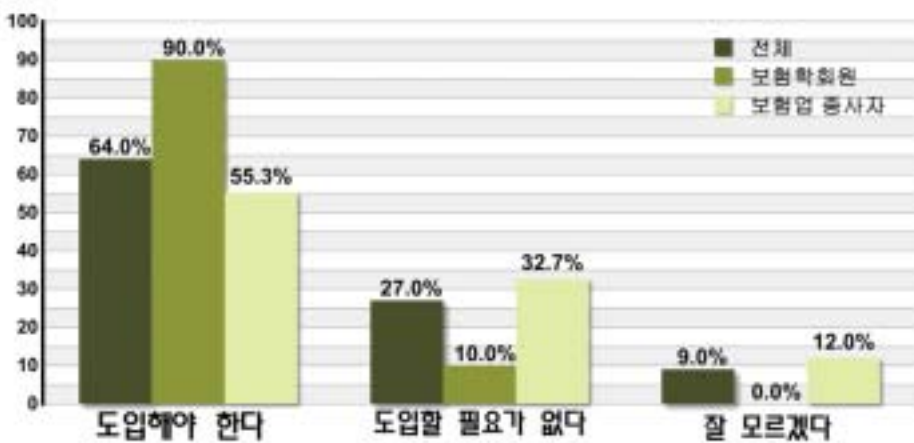
## 12. 보험업의 ‘분쟁조정제도’ 도입 여부



선생님께서서는 보험업에서도 금융업 분야과 같은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분석 결과

- 보험업에서도 금융업 분야과 같은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4.0%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 27.0%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 분야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보험학회원의 경우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90.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도입해야 한다’ 55.3%, ‘도입할 필요가 없다’ 32.7%였음
-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대 이상,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음
- 반면,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0~30대, 3~10년 미만 경력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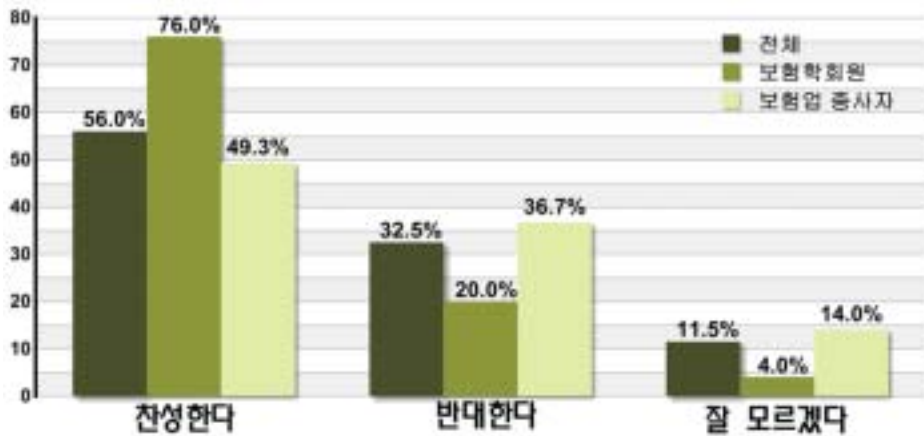
### 13. 분쟁조정위 결정의 준수 의무 부과 여부



만일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험회사가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분석 결과

-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험회사가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의견이 56.0%로 ‘반대’ 의견 32.5%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 보험학회원의 경우 ‘찬성’이 76.0%로 ‘반대’ 20.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찬성’ 49.3%, ‘반대’ 36.7%였음
- ‘찬성’ 의견은 50대 이상,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음
- 반면, ‘반대’ 의견은 20~30대, 3~7년 경력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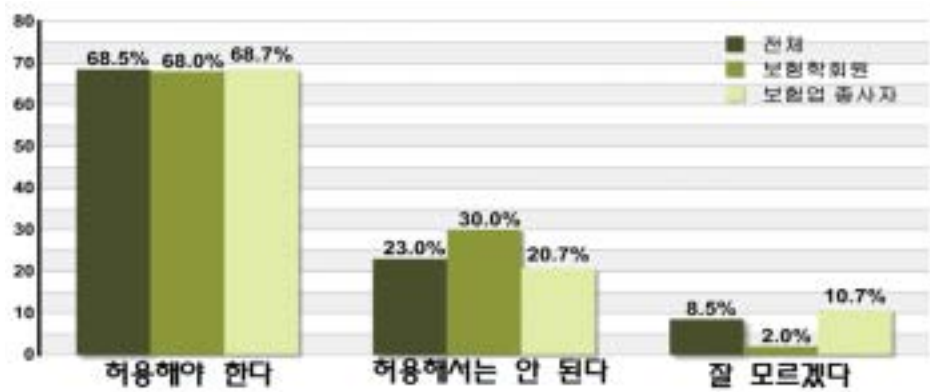
#### 14. 보험사의 ‘자회사 방식 타금융업 진출’ 허용 여부



선생님께서서는 보험회사가 자회사 방식으로 타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분석 결과

- 보험회사가 자회사 방식으로 타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8.5%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응답 23.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 보험학회원의 경우 ‘허용’ 68.0%, ‘금지’ 30.0%였으며,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허용’ 68.7%, ‘금지’ 20.7%로 나타났음
- ‘허용’ 의견은 남성, 3~7년 경력자에서 특히 높았으며, ‘금지’ 의견은 여성, 7~10년 경력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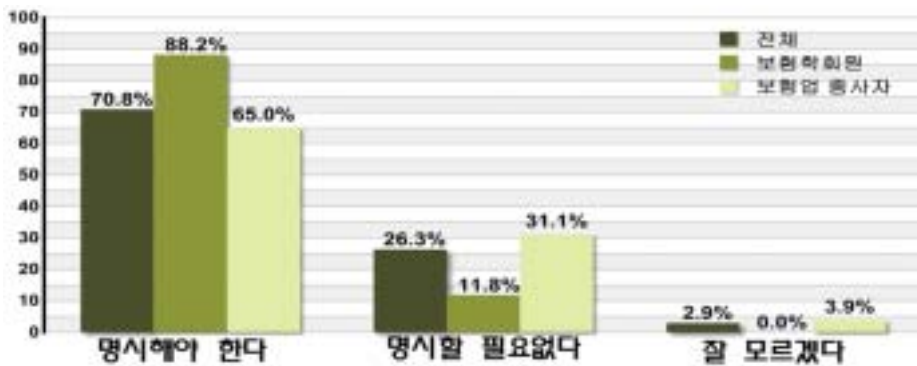
### 15. 보험사의 타금융업 진출요건의 법제화 필요성




(문14의 ①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자회사 방식으로 타금융업에 진출하는 경우, 그 요건을 법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 분석 결과

- 보험회사가 자회사 방식으로 타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계층(137명)을 대상으로, 그 요건을 법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는 지 질문하였음. 그 결과,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70.8%로 ‘명시할 필요없다’는 응답 26.3%보다 월등히 높았음
- 보험회원의 경우, ‘명시해야 한다’ 88.2%, ‘명시할 필요없다’ 11.8%였으며, 보험업 종사자는 ‘명시해야 한다’ 65.0%, ‘명시할 필요없다’ 31.1%로 나타났음
-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 3년 미만 경력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음
- 반면, ‘명시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20~30대, 7년 이상 경력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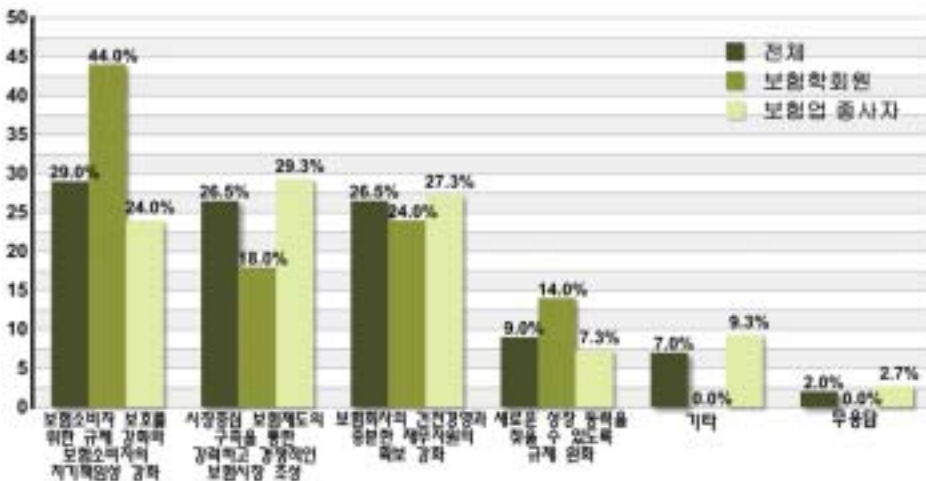
## 16. 보험업 규제 방안\_1순위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보험업 규제를 위하여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      2순위 : (                    )

분석 결과

- 새로운 보험업 규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 1순위 응답을 살펴 본 결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라는 응답이 29.0%, ‘시장중심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 조성’과 ‘보험회사의 건전경영과 충분한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가 26.5%로 나타났음. 그 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라는 응답은 9.0%, ‘기타’ 7.0%였음
- 보험학회원의 경우,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보험회사의 건전경영과 충분한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 24.0%, ‘시장중심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 조성’ 18.0%,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 14.0% 등의 순이었음
-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시장중심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 조성’ 29.3%, ‘보험회사의 건전경영과 충분한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 27.3%,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 24.0% 등의 순이었음



## 16. 보험업 규제 방안\_1+2순위



선생님께서서는 새로운 보험업 규제를 위하여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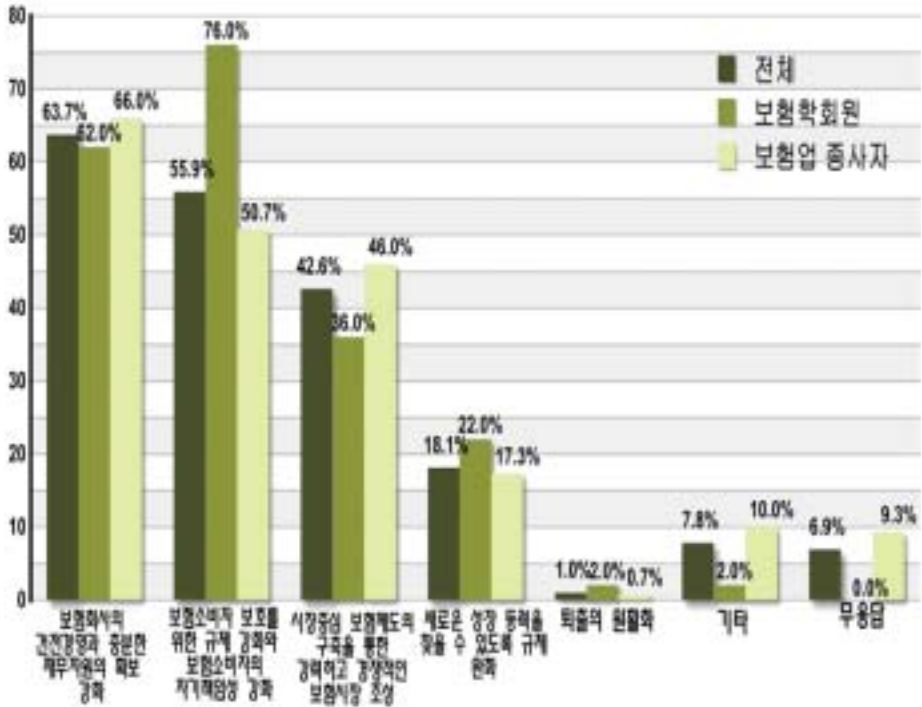
1순위 : (                    )                    2순위 : (                    )

---

### 분석 결과

- 새로운 보험업 규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 1, 2순위 응답을 함께 살펴 본 결과, ‘보험회사의 건전경영과 충분한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 63.7% >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 55.9% > ‘시장중심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 조성’ 42.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 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라는 응답은 18.1%, ‘퇴출의 원활화’ 1.0%, ‘기타’ 7.8%였음
- 보험학회원의 경우,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 76.0%, ‘보험회사의 건전경영과 충분한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 62.0%, ‘시장중심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 조성’ 36.0%,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 22.0% 등의 순이었음
-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경영과 충분한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 66.0%,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 50.7%, ‘시장중심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 조성’ 46.0%,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 17.3% 등의 순이었음





추가 분석

● ‘기타’ 의견으로는 보험업 종사자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재검토’, ‘실손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방카, 교차제도 재검토’,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보험판매전문인 재검토’ 등의 의견이 있었음

17. 제안사항



보험업 규제와 관련해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No. | 제 안 내 용   |
|-----|---|
| 1   | 초중고등학교 경제교과목에서 사회보험 및 민영보험제도의 내용 및 소비자로서 당연히 알아야하는 법규상의 내용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
| 2   | FTA 등으로 인하여 그 동안 폐쇄적이었던 자본시장이 점차개방화되어가고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단계적인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모든 시장을 개방하여야 한다고 본다. 보험시장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선진국의 보험규제의 동향을 잘 관찰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여 신중한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자동법 통합과 관련하여 비록 보험업 분야는 제외되어 있으나 향후 단계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본다. |
| 3   | 손해보험 분야의 정의 명확화가 필요함. 손해보험영업의 많은 부분이 생명보험 부분과 겹쳐있어 두 분야간 지나친 경쟁으로 낭비요소가 많이 발생함. 손해보험 산업이 점차 생명보험산업화 되고 있음.  |
| 4   | 보험계약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5   | 보험회사의 underwriting 기능의 강화를 통한 건전한 보험제도 유지   |
| 6   | 보험업은 여러 보험계약 관계자가 있으므로 산.학.연.보험소비자 모두 참여해서 보험업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제대로 규제를 해야 될 것이다.  |
| 7   | 보험업의 전문성을 무시한 통합적, 획일적 규제의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금융업 가운데 은행업의 우월적 위상 때문에 늘 보험업의 전문성과 독자성이 간과되어 왔다.  |
| 8   | 보험업은 특수성과 일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통상 금융업이라고 하면 보험이 포함될 때도 있고 제외되어 “금융 및 보험업”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완화 등 작업을 할 때도 특수성과 일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규제완화나 강화 시 불리한 것은 다 적용하고 유리한 것은 제외토록 하는 등 보험권에 불리한 내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 No. | 제 안 내 용  |
|-----|--|
| 9   | 너무 부실한 운용보고서   |
| 10  | 교육과 상품설명서를 강화하여 복잡한 상품의 불안진 판매를 줄이는 데 힘써야 함  |
| 11  | 보험은 타 금융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맞는 규제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규제는 반드시 관이나 법중심으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규제가 피로가 덜 오고, 장벽도 덜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모습으로는 일반인의 공감을 얻기 힘들고 관 주도의 강제적인 규제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 12  | 전통적인 보험업에 대해서는 별 의견 없으나, 금융투자업 요소가 강한 상품(변액보험 등) 혹은 금융투자상품에 보험사가 자기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
| 13  | 보험회사만 살아남기 위한 제도가 아닌 고객과 판매하는 설계사(판매채널)도 함께 살 수 있도록  |
| 14  | 시장 진출은 원하는 대로 하되, 시장에 대한 규제는 필요  |
| 15  | 보험업은 산업특성 상 별도의 법률로 규제함이 바람직   |
| 16  | 보험업의 특성(공익성, 장기리스크 등)을 고려, 독자적인 법률 통한 보호와 규제 필요할 것.  |
| 17  | 기본적인 상품형태가 보험의 기능이 들어가는 금융상품 or 서비스 등은 보험입법 영역 안에서 규제되어야 함.  |
| 18  | 보험상품은 공익적, 장기적 리스크 등 특성상 독자적인 법률 필요  |
| 19  | 보험업은 특성상 별도의 규율체계를 가져야 하고, 파생상품 중 보험성격은 보험상 법적용 대상이 되어야 함.   |
| 20  | 변액, 연금보험은 파생상품이 아닌 보험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입법 적용 대상.<br>보험업/보험상품은 공익적 성격, Risk 등 특성상 산업을 규율하는 독자적 법률 필요.<br>금융통합이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은 반대  |
| 21  | 자본시장통합업은 일반금융업이 항상 보험업에 비해 우선한다  |

부 록

| No. | 제 안 내 용        |
|-----|----------------|
| 22  | 대형금융 기관만 유리    |
| 23  | 자유경쟁체제로가야      |
| 24  | 환경관련상품이 있으면 한다 |

## >> IV. 통계자료

>> 설문지

DCR Poll **보험규제에 대한 인식조사** ID 

|  |  |  |  |
|--|--|--|--|
|  |  |  |  |
|--|--|--|--|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디시알폴입니다.  
저희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도의 입법 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보험규제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관련 입법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통계법 13조에 의거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적 목적으로만 이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구책임자 : 고재중 교수(선문대 법학과)  
담 당 : (주)디시알폴 윤영훈 연구실장 (Tel\_02-769-1066, Fax\_02-769-1092)  
2009년 7월

문1. 선생님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른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잘 알지 못한다        ④ 전혀 알지 못한다

문2. (문1의 ①, ②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① 신문   ② 방송   ③ 포털사이트나 인터넷뉴스
- ⑤ 정부기관 홈페이지   ⑥ 정기간행물   ⑦ 관련 논문   ⑧ 기타

문3. 선생님께서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문4. 선생님께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금융감독기구를 둔다면 어떤 형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단일의 통합된 감독기구 ② 이원화된 감독기구 ③ 잘 모르겠다

문5. 선생님께서는 일반 금융업에 비해 보험업이 그 성질상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 ① 유사하다 ② 유사하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문6. 선생님께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대상으로 보험업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포함되어야 한다 ②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③ 잘 모르겠다

문7. (문6의 ①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보험업을 언제부터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즉시 포함시켜야 한다 ② 단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8. 선생님께서는 금융기관에서 보험과생상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허용해야 한다 ② 금지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9. 선생님께서는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이 보험의 특성을 가진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일반 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문10. 선생님께서는 보험업의 경우 공시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경영공시만 ② 상품공시만 ③ 경영공시와 상품공시 모두
- ④ 공시할 필요없다 ⑤ 잘 모르겠다

문11. 선생님께서는 보험업의 경우 ‘공시제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효과가 있다 ② 효과가 있는 편이다
- ③ 효과가 없는 편이다 ④ 전혀 효과가 없다

문12. 선생님께서는 보험업에서도 금융업 분야와 같은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도입해야 한다 ② 도입할 필요가 없다
- ③ 잘 모르겠다

문13. 만일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험회사가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14. 선생님께서는 보험회사가 자회사 방식으로 타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허용해야 한다 ② 허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잘 모르겠다

문15. (문14의 ①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자회사 방식으로 타금융업에 진출하는 경우, 그 요건을 법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 ① 명시해야 한다      ② 명시할 필요없다
- ③ 잘 모르겠다

문16.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보험업 규제를 위하여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      2순위 : (                    )

- ① 시장중심 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 시장 조성
- ②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
- ③ 보험회사의 건전경영과 충분한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
- ④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⑤ 퇴출의 원활화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7. 마지막으로 보험업 규제와 관련해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BQ1.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BQ2. 선생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BQ3. 현재 선생님께서는 어느 분야에 속해 계십니까?

- ① 보험학회원 ② 보험업 종사

BQ4. 선생님께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 ① 3년 미만      ② 3~7년 미만      ③ 7~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도의 입법평가 <교차분석표>**

2009-07

DCRIPoll (주)디시알폴

## >> Contents

1. ‘자본시장 통합법’ 인지도
2. ‘자본시장 통합법’ 인지경로
3. ‘자본시장 통합법’ 관심도
4. 금융감독기구 선호형태
5. 보험업의 성격
6. ‘자본시장 통합법’ 규제대상에 보험업 포함 여부
7. 보험업의 규제대상 포함 시기
8. 금융기관의 보험파생상품 취급에 대한 의견
9. 파생금융상품의 규제 기준
10. 보험업의 공시의무
11. 보험업 공시제도의 효과
12. 보험업의 ‘분쟁조정제도’ 도입 여부
13. 분쟁조정위 결정의 준수의무 부과 여부
14. 보험사의 ‘자회사 방식 타금융업 진출’ 허용 여부
15. 보험사의 타금융업 진출요건의 법제화 필요성
16. 보험업 규제 방안\_1순위
16. 보험업 규제 방안\_1+2순위
17. 제안사항

## 1. ‘자본시장 통합법’ 인지도



선생님께서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른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교차분석표

(단위 : %)

| 구         | 분        | 사례수        | 매우 잘 알고있다  | 어느정도 알고있다   | 잘알지 못한다     | 전혀알지 못한다   | <input type="checkbox"/> 한계 | <input type="checkbox"/> 한계 | 무응답        |
|-----------|----------|------------|------------|-------------|-------------|------------|-----------------------------|-----------------------------|------------|
| <b>전체</b> |          | <b>200</b> | <b>8.0</b> | <b>72.5</b> | <b>16.0</b> | <b>3.0</b> | <b>80.5</b>                 | <b>19.0</b>                 | <b>0.5</b> |
| 성별        | 남자       | 133        | 11.3       | 72.2        | 14.3        | 1.5        | 83.5                        | 15.8                        | 0.8        |
|           | 여자       | 67         | 1.5        | 73.1        | 19.4        | 6.0        | 74.6                        | 25.4                        | 0.0        |
| 연령        | 20 ~ 30대 | 89         | 6.7        | 75.3        | 12.4        | 4.5        | 82.0                        | 16.9                        | 1.1        |
|           | 40 대     | 90         | 8.9        | 72.2        | 18.9        | 0.0        | 81.1                        | 18.9                        | 0.0        |
|           | 50 대 이상  | 21         | 9.5        | 61.9        | 19.0        | 9.5        | 71.4                        | 28.5                        | 0.0        |
| 분야        | 보험 학회    | 50         | 12.0       | 74.0        | 12.0        | 2.0        | 86.0                        | 14.0                        | 0.0        |
|           | 보험업 종사자  | 150        | 6.7        | 72.0        | 17.3        | 3.3        | 78.7                        | 20.6                        | 0.7        |
| 경력        | 3년 미만    | 51         | 3.9        | 68.6        | 21.6        | 5.9        | 72.5                        | 27.5                        | 0.0        |
|           | 3~7년미만   | 79         | 5.1        | 75.9        | 16.5        | 2.5        | 81.0                        | 19.0                        | 0.0        |
|           | 7~10년미만  | 28         | 7.1        | 75.0        | 17.9        | 0.0        | 82.1                        | 17.9                        | 0.0        |
|           | 10년 이상   | 42         | 19.0       | 69.0        | 7.1         | 2.4        | 88.0                        | 9.5                         | 2.4        |

## 2. ‘자본시장 통합법’ 인지경로



(문1의 ①, ②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교차분석표

(단위 : %)

| 구          | 분          | 사<br>례<br>수 | 신문          | 방송          | 포털<br>사이트/<br>인터넷<br>뉴스 | 정부<br>기관<br>홈페<br>이지 | 정기<br>간행물  | 관련<br>논문   | 기타         | 무응답        |
|------------|------------|-------------|-------------|-------------|-------------------------|----------------------|------------|------------|------------|------------|
| <b>전 체</b> |            | <b>162</b>  | <b>28.4</b> | <b>24.1</b> | <b>22.8</b>             | <b>7.4</b>           | <b>4.3</b> | <b>4.9</b> | <b>6.2</b> | <b>1.9</b> |
| 성<br>별     | 남 자        | 111         | 30.6        | 18.0        | 27.0                    | 9.0                  | 3.6        | 7.2        | 3.6        | 0.9        |
|            | 여 자        | 50          | 24.0        | 38.0        | 14.0                    | 4.0                  | 6.0        | 0.0        | 12.0       | 2.0        |
| 연<br>령     | 20 ~ 30대   | 73          | 26.0        | 26.0        | 31.5                    | 6.8                  | 1.4        | 1.4        | 4.1        | 2.7        |
|            | 40 대       | 73          | 34.2        | 21.9        | 15.1                    | 6.8                  | 5.5        | 6.8        | 9.6        | 0.0        |
|            | 50대 이상     | 15          | 13.3        | 26.7        | 20.0                    | 13.3                 | 13.3       | 13.3       | 0.0        | 0.0        |
| 분<br>야     | 보험 학회      | 43          | 25.6        | 11.6        | 16.3                    | 9.3                  | 11.6       | 16.3       | 9.3        | 0.0        |
|            | 보험업<br>종사자 | 118         | 29.7        | 28.8        | 25.4                    | 6.8                  | 1.7        | 0.8        | 5.1        | 1.7        |
| 경<br>력     | 3년 미만      | 37          | 37.8        | 29.7        | 21.6                    | 0.0                  | 2.7        | 0.0        | 8.1        | 0.0        |
|            | 3~7년미만     | 64          | 26.6        | 25.0        | 25.0                    | 9.4                  | 1.6        | 3.1        | 6.3        | 3.1        |
|            | 7~10년미만    | 23          | 21.7        | 34.8        | 26.1                    | 8.7                  | 4.3        | 4.3        | 0.0        | 0.0        |
|            | 10년 이상     | 37          | 27.0        | 10.8        | 18.9                    | 10.8                 | 10.8       | 13.5       | 8.1        | 0.0        |

### 3. ‘자본시장 통합법’ 관심도



선생님께서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차분석표

(단위 : %)

| 구          | 분          | 사례수        | 매우<br>관심이<br>있다 | 어느<br>정도<br>관심이<br>있다 | 별로<br>관심이<br>없다 | 전혀<br>관심이<br>없다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관심<br>있음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관심<br>없음 <input type="checkbox"/> | 무응답        |
|------------|------------|------------|-----------------|-----------------------|-----------------|-----------------|---|---|------------|
| <b>전 체</b> |            | <b>200</b> | <b>27.5</b>     | <b>60.5</b>           | <b>9.0</b>      | <b>2.5</b>      | <b>88.0</b>   | <b>11.5</b>   | <b>0.5</b> |
| 성<br>별     | 남 자        | 133        | 35.3            | 53.4                  | 9.0             | 1.5             | 88.7  | 10.5  | 0.8        |
|            | 여 자        | 67         | 11.9            | 74.6                  | 9.0             | 4.5             | 86.5  | 13.5  | 0.0        |
| 연<br>령     | 20 ~ 30대   | 89         | 24.7            | 64.0                  | 9.0             | 2.2             | 88.7  | 11.2  | 0.0        |
|            | 40 대       | 90         | 30.0            | 60.0                  | 7.8             | 1.1             | 90.0  | 8.9   | 1.1        |
|            | 50대 이상     | 21         | 28.6            | 47.6                  | 14.3            | 9.5             | 76.2  | 23.8  | 0.0        |
| 분<br>야     | 보험 학회      | 50         | 44.0            | 50.0                  | 4.0             | 2.0             | 94.0  | 6.0   | 0.0        |
|            | 보험업<br>종사자 | 150        | 22.0            | 64.0                  | 10.7            | 2.7             | 86.0  | 13.4  | 0.7        |
| 경<br>력     | 3년 미만      | 51         | 27.5            | 62.7                  | 9.8             | 0.0             | 90.2  | 9.8   | 0.0        |
|            | 3~7년미만     | 79         | 26.6            | 57.0                  | 11.4            | 3.8             | 83.6  | 15.2  | 1.3        |
|            | 7~10년미만    | 28         | 10.7            | 82.1                  | 7.1             | 0.0             | 92.8  | 7.1   | 0.0        |
|            | 10년 이상     | 42         | 40.5            | 50.0                  | 4.8             | 4.8             | 90.5  | 9.6   | 0.0        |

#### 4. 금융감독기구 선호형태



선생님께서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금융감독기구를 둔다면 어떤 형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차분석표

(단위 : %)

| 구 분 |          | 사례수 | 단일의 통합된<br>감독기구 | 이원화된<br>감독기구 | 잘 모르겠다 |
|-----|----------|-----|-----------------|--------------|--------|
| 전 체 |          | 200 | 61.0            | 29.0         | 10.0   |
| 성 별 | 남 자      | 133 | 60.9            | 28.6         | 10.5   |
|     | 여 자      | 67  | 61.2            | 29.9         | 9.0    |
| 연 령 | 20 ~ 30대 | 89  | 55.1            | 30.3         | 14.6   |
|     | 40 대     | 90  | 67.8            | 28.9         | 3.3    |
|     | 50 대 이상  | 21  | 57.1            | 23.8         | 19.0   |
| 분 야 | 보 험 학 회  | 50  | 70.0            | 18.0         | 12.0   |
|     | 보험업종사자   | 150 | 58.0            | 32.7         | 9.3    |
| 경 력 | 3년 미만    | 51  | 68.6            | 13.7         | 17.6   |
|     | 3~7년 미만  | 79  | 54.4            | 38.0         | 7.6    |
|     | 7~10년 미만 | 28  | 67.9            | 25.0         | 7.1    |
|     | 10년 이상   | 42  | 59.5            | 33.3         | 7.1    |



## 5. 보험업의 성격



선생님께서서는 일반 금융업에 비해 보험업이 그 성질상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 교차분석표

(단위 : %)

| 구 분 |          | 사례수 | 유사하다 | 유사하지 않다 | 잘 모르겠다 |
|-----|----------|-----|------|---------|--------|
| 전 체 |          | 200 | 33.0 | 60.0    | 7.0    |
| 성 별 | 남 자      | 133 | 32.3 | 62.4    | 5.3    |
|     | 여 자      | 67  | 34.3 | 55.2    | 10.4   |
| 연 령 | 20 ~ 30대 | 89  | 37.1 | 57.3    | 5.6    |
|     | 40 대     | 90  | 31.1 | 61.1    | 7.8    |
|     | 50 대 이상  | 21  | 23.8 | 66.7    | 9.5    |
| 분 야 | 보 험 학 회  | 50  | 32.0 | 66.0    | 2.0    |
|     | 보험업종사자   | 150 | 33.3 | 58.0    | 8.7    |
| 경 력 | 3년 미만    | 51  | 52.9 | 33.3    | 13.7   |
|     | 3~7년 미만  | 79  | 27.8 | 67.1    | 5.1    |
|     | 7~10년 미만 | 28  | 17.9 | 75.0    | 7.1    |
|     | 10년 이상   | 42  | 28.6 | 69.0    | 2.4    |

## 6. ‘자본시장 통합법’ 규제대상에 보험업 포함 여부



선생님께서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대상으로 보험업도 포함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교차분석표

(단위 : %)

| 구 분 |          | 사례수 | 포함되어야 한다 |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잘 모르겠다 |
|-----|----------|-----|----------|------------|--------|
| 전 체 |          | 200 | 31.5     | 56.0       | 12.5   |
| 성 별 | 남 자      | 133 | 38.3     | 51.1       | 10.5   |
|     | 여 자      | 67  | 17.9     | 65.7       | 16.4   |
| 연 령 | 20 ~ 30대 | 89  | 28.1     | 55.1       | 16.9   |
|     | 40 대     | 90  | 33.3     | 57.8       | 8.9    |
|     | 50 대 이상  | 21  | 38.1     | 52.4       | 9.5    |
| 분 야 | 보 험 학 회  | 50  | 50.0     | 38.0       | 12.0   |
|     | 보험업종사자   | 150 | 25.3     | 62.0       | 12.7   |
| 경 력 | 3년 미만    | 51  | 37.3     | 45.1       | 17.6   |
|     | 3~7년 미만  | 79  | 30.4     | 58.2       | 11.4   |
|     | 7~10년 미만 | 28  | 21.4     | 60.7       | 17.9   |
|     | 10년 이상   | 42  | 33.3     | 61.9       | 4.8    |

## 7. 보험업의 규제대상 포함 시기



(문6의 ①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보험업을 언제부터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십니까?

### 교차분석표

(단위 : %)

| 구 분 |          | 사례수 | 즉시 포함<br>시켜야 한다 | 단계적으로<br>포함시켜야<br>한다 | 잘 모르겠다 |
|-----|----------|-----|-----------------|----------------------|--------|
| 전 체 |          | 63  | 23.8            | 73.0                 | 3.2    |
| 성 별 | 남 자      | 51  | 23.5            | 74.5                 | 2.0    |
|     | 여 자      | 12  | 25.0            | 66.7                 | 8.3    |
| 연 령 | 20 ~ 30대 | 25  | 32.0            | 64.0                 | 4.0    |
|     | 40 대     | 30  | 16.7            | 83.3                 | 0.0    |
|     | 50 대 이상  | 8   | 25.0            | 62.5                 | 12.5   |
| 분 야 | 보 험 학 회  | 25  | 32.0            | 68.0                 | 0.0    |
|     | 보험업종사자   | 38  | 18.4            | 76.3                 | 5.3    |
| 경 력 | 3년 미만    | 19  | 36.8            | 63.2                 | 0.0    |
|     | 3~7년 미만  | 24  | 4.2             | 87.5                 | 8.3    |
|     | 7~10년 미만 | 6   | 33.3            | 66.7                 | 0.0    |
|     | 10년 이상   | 14  | 35.7            | 64.3                 | 0.0    |

## 8. 금융기관의 보험파생상품 취급에 대한 의견



선생님께서서는 금융기관에서 보험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차분석표

(단위 : %)

| 구 분 |          | 사례수 | 허용해야 한다 | 금지해야 한다 | 잘 모르겠다 |
|-----|----------|-----|---------|---------|--------|
| 전 체 |          | 200 | 29.5    | 66.0    | 4.5    |
| 성 별 | 남 자      | 133 | 36.1    | 60.9    | 3.0    |
|     | 여 자      | 67  | 16.4    | 76.1    | 7.5    |
| 연 령 | 20 ~ 30대 | 89  | 29.2    | 66.3    | 4.5    |
|     | 40 대     | 90  | 27.8    | 68.9    | 3.3    |
|     | 50 대 이상  | 21  | 38.1    | 52.4    | 9.5    |
| 분 야 | 보 험 학 회  | 50  | 62.0    | 36.0    | 2.0    |
|     | 보험업종사자   | 150 | 18.7    | 76.0    | 5.3    |
| 경 력 | 3년 미만    | 51  | 33.3    | 56.9    | 9.8    |
|     | 3~7년 미만  | 79  | 24.1    | 74.7    | 1.3    |
|     | 7~10년 미만 | 28  | 17.9    | 82.1    | 0.0    |
|     | 10년 이상   | 42  | 42.9    | 50.0    | 7.1    |

## 9. 파생금융상품의 규제 기준



선생님께서서는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이 보험의 특성을 가진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일반 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 교차분석표

(단위 : %)

| 구 분 |          | 사례수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잘 모르겠다 |
|-----|----------|-----|------|--------|--------|
| 전 체 |          | 200 | 47.0 | 45.0   | 8.0    |
| 성 별 | 남 자      | 133 | 53.4 | 41.4   | 5.3    |
|     | 여 자      | 67  | 34.3 | 52.2   | 13.4   |
| 연 령 | 20 ~ 30대 | 89  | 50.6 | 40.4   | 9.0    |
|     | 40 대     | 90  | 44.4 | 47.8   | 7.8    |
|     | 50 대 이상  | 21  | 42.9 | 52.4   | 4.8    |
| 분 야 | 보 험 학 회  | 50  | 48.0 | 50.0   | 2.0    |
|     | 보험업종사자   | 150 | 46.7 | 43.3   | 10.0   |
| 경 력 | 3년 미만    | 51  | 47.1 | 35.3   | 17.6   |
|     | 3~7년 미만  | 79  | 45.6 | 48.1   | 6.3    |
|     | 7~10년 미만 | 28  | 42.9 | 57.1   | 0.0    |
|     | 10년 이상   | 42  | 52.4 | 42.9   | 4.8    |

## 10. 보험업의 공시의무



선생님께서서는 보험업의 경우 공시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교차분석표

(단위 : %)

| 구          | 분        | 사례수        | 경영<br>공시만  | 상품<br>공시만   | 경영<br>공시와<br>상품공시<br>모두 | 공시할<br>필요없다 | 잘<br>모르겠다  |
|------------|----------|------------|------------|-------------|-------------------------|-------------|------------|
| <b>전 체</b> |          | <b>200</b> | <b>4.0</b> | <b>12.5</b> | <b>76.0</b>             | <b>1.0</b>  | <b>6.5</b> |
| 성<br>별     | 남 자      | 133        | 4.5        | 8.3         | 82.0                    | 0.0         | 5.3        |
|            | 여 자      | 67         | 3.0        | 20.9        | 64.2                    | 3.0         | 9.0        |
| 연<br>령     | 20 ~ 30대 | 89         | 4.5        | 16.9        | 67.4                    | 2.2         | 9.0        |
|            | 40 대     | 90         | 4.4        | 11.1        | 81.1                    | 0.0         | 3.3        |
|            | 50 대 이상  | 21         | 0.0        | 0.0         | 90.5                    | 0.0         | 9.5        |
| 분<br>야     | 보 험 학 회  | 50         | 6.0        | 10.0        | 82.0                    | 0.0         | 2.0        |
|            | 보험업종사자   | 150        | 3.3        | 13.3        | 74.0                    | 1.3         | 8.0        |
| 경<br>력     | 3년 미만    | 51         | 2.0        | 15.7        | 64.7                    | 2.0         | 15.7       |
|            | 3~7년 미만  | 79         | 6.3        | 11.4        | 78.5                    | 1.3         | 2.5        |
|            | 7~10년 미만 | 28         | 7.1        | 21.4        | 67.9                    | 0.0         | 3.6        |
|            | 10년 이상   | 42         | 0.0        | 4.8         | 90.5                    | 0.0         | 4.8        |

## 11. 보험업 공시제도의 효과



선생님께서서는 보험업의 경우 ‘공시제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교차분석표

(단위 : %)

| 구          | 분       | 사례 수       | 매우 효과가 있다   | 효과가 있는 편이다  | 효과가 없는 편이다  | 전혀 효과가 없다  | <input type="checkbox"/> 효과 있음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효과 없음 <input type="checkbox"/> | 무응답        |
|------------|---------|------------|-------------|-------------|-------------|------------|---|---|------------|
| <b>전 체</b> |         | <b>200</b> | <b>16.0</b> | <b>70.5</b> | <b>12.0</b> | <b>1.0</b> | <b>86.5</b>   | <b>13.0</b>   | <b>0.5</b> |
| 성 별        | 남 자     | 133        | 19.5        | 68.4        | 11.3        | 0.0        | 87.9  | 11.3  | 0.8        |
|            | 여 자     | 67         | 9.0         | 74.6        | 13.4        | 3.0        | 83.6  | 16.4  | 0.0        |
| 연 령        | 20~30대  | 89         | 14.6        | 66.3        | 16.9        | 1.1        | 80.9  | 18.0  | 1.1        |
|            | 40 대    | 90         | 15.6        | 75.6        | 8.9         | 0.0        | 91.2  | 8.9   | 0.0        |
|            | 50대 이상  | 21         | 23.8        | 66.7        | 4.8         | 4.8        | 90.5  | 9.6   | 0.0        |
| 분 야        | 보험학회    | 50         | 22.0        | 70.0        | 6.0         | 2.0        | 92.0  | 8.0   | 0.0        |
|            | 보험업 종사자 | 150        | 14.0        | 70.7        | 14.0        | 0.7        | 84.7  | 14.7  | 0.7        |
| 경 력        | 3년 미만   | 51         | 11.8        | 72.5        | 13.7        | 0.0        | 84.3  | 13.7  | 2.0        |
|            | 3~7년미만  | 79         | 12.7        | 73.4        | 13.9        | 0.0        | 86.1  | 13.9  | 0.0        |
|            | 7~10년미만 | 28         | 21.4        | 57.1        | 17.9        | 3.6        | 78.5  | 21.5  | 0.0        |
|            | 10년 이상  | 42         | 23.8        | 71.4        | 2.4         | 2.4        | 95.2  | 4.8   | 0.0        |

## 12. 보험업의 ‘분쟁조정제도’ 도입 여부



선생님께서서는 보험업에서도 금융업 분야와 같은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교차분석표

(단위 : %)

| 구 분 |          | 사례수 | 도입해야 한다 | 도입할 필요가 없다 | 잘 모르겠다 |
|-----|----------|-----|---------|------------|--------|
| 전 체 |          | 200 | 64.0    | 27.0       | 9.0    |
| 성 별 | 남 자      | 133 | 66.2    | 29.3       | 4.5    |
|     | 여 자      | 67  | 59.7    | 22.4       | 17.9   |
| 연 령 | 20 ~ 30대 | 89  | 53.9    | 34.8       | 11.2   |
|     | 40 대     | 90  | 67.8    | 24.4       | 7.8    |
|     | 50 대 이상  | 21  | 90.5    | 4.8        | 4.8    |
| 분 야 | 보 험 학 회  | 50  | 90.0    | 10.0       | 0.0    |
|     | 보험업종사자   | 150 | 55.3    | 32.7       | 12.0   |
| 경 력 | 3년 미만    | 51  | 60.8    | 17.6       | 21.6   |
|     | 3~7년 미만  | 79  | 63.3    | 31.6       | 5.1    |
|     | 7~10년 미만 | 28  | 60.7    | 35.7       | 3.6    |
|     | 10년 이상   | 42  | 71.4    | 23.8       | 4.8    |



### 13. 분쟁조정위 결정의 준수 의무 부과 여부



만일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험회사가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차분석표

(단위 : %)

| 구 분 |          | 사례수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잘 모르겠다 |
|-----|----------|-----|------|------|--------|
| 전 체 |          | 200 | 56.0 | 32.5 | 11.5   |
| 성 별 | 남 자      | 133 | 57.1 | 34.6 | 8.3    |
|     | 여 자      | 67  | 53.7 | 28.4 | 17.9   |
| 연 령 | 20 ~ 30대 | 89  | 50.6 | 37.1 | 12.4   |
|     | 40 대     | 90  | 58.9 | 32.2 | 8.9    |
|     | 50 대 이상  | 21  | 66.7 | 14.3 | 19.0   |
| 분 야 | 보 험 학 회  | 50  | 76.0 | 20.0 | 4.0    |
|     | 보험업종사자   | 150 | 49.3 | 36.7 | 14.0   |
| 경 력 | 3년 미만    | 51  | 54.9 | 23.5 | 21.6   |
|     | 3~7년 미만  | 79  | 51.9 | 36.7 | 11.4   |
|     | 7~10년 미만 | 28  | 57.1 | 39.3 | 3.6    |
|     | 10년 이상   | 42  | 64.3 | 31.0 | 4.8    |

## 14. 보험사의 ‘자회사 방식 타금융업 진출’ 허용 여부



선생님께서서는 보험회사가 자회사 방식으로 타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차분석표

(단위 : %)

| 구 분 |          | 사례수 | 허용해야 한다 |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잘 모르겠다 |
|-----|----------|-----|---------|------------|--------|
| 전 체 |          | 200 | 68.5    | 23.0       | 8.5    |
| 성 별 | 남 자      | 133 | 74.4    | 19.5       | 6.0    |
|     | 여 자      | 67  | 56.7    | 29.9       | 13.4   |
| 연 령 | 20 ~ 30대 | 89  | 69.7    | 21.3       | 9.0    |
|     | 40 대     | 90  | 68.9    | 24.4       | 6.7    |
|     | 50 대 이상  | 21  | 61.9    | 23.8       | 14.3   |
| 분 야 | 보 험 학 회  | 50  | 68.0    | 30.0       | 2.0    |
|     | 보험업종사자   | 150 | 68.7    | 20.7       | 10.7   |
| 경 령 | 3년 미만    | 51  | 58.8    | 25.5       | 15.7   |
|     | 3~7년 미만  | 79  | 74.7    | 19.0       | 6.3    |
|     | 7~10년 미만 | 28  | 64.3    | 32.1       | 3.6    |
|     | 10년 이상   | 42  | 71.4    | 21.4       | 7.1    |

### 15. 보험사의 타금융업 진출요건의 법제화 필요성



(문14의 ①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자회사 방식으로 타금융업에 진출하는 경우, 그 요건을 법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 교차분석표

(단위 : %)

| 구 분 |          | 사례수 | 명시해야 한다 | 명시할 필요없다 | 잘 모르겠다 |
|-----|----------|-----|---------|----------|--------|
| 전 체 |          | 137 | 70.8    | 26.3     | 2.9    |
| 성 별 | 남 자      | 99  | 68.7    | 27.3     | 4.0    |
|     | 여 자      | 38  | 76.3    | 23.7     | 0.0    |
| 연 령 | 20 ~ 30대 | 62  | 62.9    | 35.5     | 1.6    |
|     | 40 대     | 62  | 72.6    | 22.6     | 4.8    |
|     | 50 대 이상  | 13  | 100.0   | 0.0      | 0.0    |
| 분 야 | 보 험 학 회  | 34  | 88.2    | 11.8     | 0.0    |
|     | 보험업종사자   | 103 | 65.0    | 31.1     | 3.9    |
| 경 력 | 3년 미만    | 30  | 80.0    | 13.3     | 6.7    |
|     | 3~7년 미만  | 59  | 71.2    | 25.4     | 3.4    |
|     | 7~10년 미만 | 18  | 66.7    | 33.3     | 0.0    |
|     | 10년 이상   | 30  | 63.3    | 36.7     | 0.0    |

## 16. 보험업 규제 방안\_1순위



선생님께서서는 새로운 보험업 규제를 위하여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                    2순위 : (                    )

### 교차분석표

(단위 : %)

| 구분        |             | 사례수        | 시장중심<br>보험제도의<br>구축을<br>통한 강력<br>하고 경쟁<br>적인 보험<br>시장 조성 | 보험소비자<br>보호를<br>위한 규제<br>강화와 보험<br>소비자의<br>자기책임성<br>강화 | 보험회사의<br>건진경영과<br>충분한<br>재무자원의<br>확보 강화 | 새로운<br>성장을<br>동력을<br>찾을 수<br>있도록<br>규제 완화 | 기타         | 무응답        |
|-----------|-------------|------------|--|--|---|---|------------|------------|
| <b>전체</b> |             | <b>200</b> | <b>26.5</b>  | <b>29.0</b>  | <b>26.5</b>                             | <b>9.0</b>                                | <b>7.0</b> | <b>2.0</b> |
| 성별        | 남자          | 133        | 26.3   | 29.3   | 21.8                                    | 11.3                                      | 8.3        | 3.0        |
|           | 여자          | 67         | 26.9   | 28.4   | 35.8                                    | 4.5                                       | 4.5        | 0.0        |
| 연령        | 20~30대      | 89         | 19.1   | 32.6   | 25.8                                    | 9.0                                       | 10.1       | 3.4        |
|           | 40대         | 90         | 30.0   | 25.6   | 28.9                                    | 10.0                                      | 5.6        | 0.0        |
|           | 50대이상       | 21         | 42.9   | 28.6   | 19.0                                    | 4.8                                       | 0.0        | 4.8        |
| 분야        | 보험학회        | 50         | 18.0   | 44.0   | 24.0                                    | 14.0                                      | 0.0        | 0.0        |
|           | 보험업<br>종사자  | 150        | 29.3   | 24.0   | 27.3                                    | 7.3                                       | 9.3        | 2.7        |
| 경력        | 3년 미만       | 51         | 23.5   | 31.4   | 31.4                                    | 5.9                                       | 2.0        | 5.9        |
|           | 3~7년미만      | 79         | 24.1   | 26.6   | 30.4                                    | 8.9                                       | 8.9        | 1.3        |
|           | 7~10년<br>미만 | 28         | 17.9   | 39.3   | 28.6                                    | 3.6                                       | 10.7       | 0.0        |
|           | 10년이상       | 42         | 40.5   | 23.8   | 11.9                                    | 16.7                                      | 7.1        | 0.0        |

## 16. 보험업 규제 방안\_1+2순위



선생님께서서는 새로운 보험업 규제를 위하여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                      2순위 : (                      )

### 교차분석표

(단위 : %)

| 구분 | 사례 수     | 시장중심 보험 제도의 구축을 통한 강력하고 경쟁적인 보험시장 조성 |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험 소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 | 보험 회사의 건전 경영과 충분한 재무자원의 확보 강화 | 새로운 성장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퇴출의 원활화 | 기타  | 무응답  |      |
|----|----------|--------------------------------------|---------------------------------------|-------------------------------|----------------------------|---------|-----|------|------|
|    |          |                                      |                                       |                               |                            |         |     | 전체   | 응답   |
| 성별 | 204      | 42.6                                 | 55.9                                  | 63.7                          | 18.1                       | 1.0     | 7.8 | 6.9  | 6.9  |
| 연령 | 남자       | 133                                  | 38.3                                  | 54.1                          | 64.7                       | 21.8    | 1.5 | 9.8  | 9.8  |
|    | 여자       | 67                                   | 53.7                                  | 62.7                          | 65.7                       | 11.9    | 0.0 | 4.5  | 1.5  |
|    | 20~30대   | 89                                   | 32.6                                  | 56.2                          | 71.9                       | 15.7    | 1.1 | 11.2 | 11.2 |
| 연령 | 40대      | 90                                   | 53.3                                  | 56.7                          | 58.9                       | 22.2    | 1.1 | 5.6  | 2.2  |
|    | 50대이상    | 21                                   | 47.6                                  | 61.9                          | 61.9                       | 14.3    | 0.0 | 4.8  | 9.5  |
| 분야 | 보험학회     | 50                                   | 36.0                                  | 76.0                          | 62.0                       | 22.0    | 2.0 | 2.0  | 0.0  |
|    | 보험업 종사자  | 150                                  | 46.0                                  | 50.7                          | 66.0                       | 17.3    | 0.7 | 10.0 | 9.3  |
| 경력 | 3년 미만    | 51                                   | 35.3                                  | 60.8                          | 62.7                       | 19.6    | 2.0 | 3.9  | 15.7 |
|    | 3~7년미만   | 79                                   | 43.0                                  | 51.9                          | 75.9                       | 13.9    | 0.0 | 8.9  | 6.3  |
|    | 7~10년 미만 | 28                                   | 53.6                                  | 67.9                          | 60.7                       | 3.6     | 3.6 | 10.7 | 0.0  |
|    | 10년이상    | 42                                   | 47.6                                  | 54.8                          | 50.0                       | 35.7    | 0.0 | 9.5  | 2.4  |

## 17. 제안사항



보험업 규제와 관련해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No. | 제 안 내 용  |
|-----|--|
| 1   | 초중고등학교 경제교과목에서 사회보험 및 민영보험제도의 내용 및 소비자로서 당연히 알아야하는 법규상의 내용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
| 2   | FTA 등으로 인하여 그 동안 폐쇄적이었던 자본시장이 점차개방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단계적인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모든 시장을 개방하여야 한다고 본다. 보험시장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선진국의 보험규제의 동향을 잘 관찰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여 신중한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자동법 통합과 관련하여 비록 보험업 분야는 제외되어 있으나 향후 단계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본다. |
| 3   | 손해보험 분야의 정의 명확화가 필요함. 손해보험영업의 많은 부분이 생명보험 부분과 겹쳐있어 두 분야간 지나친 경쟁으로 낭비요소가 많이 발생함. 손해보험 산업이 점차 생명보험산업화 되고 있음.   |
| 4   | 보험계약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5   | 보험회사의 underwriting 기능의 강화를 통한 건전한 보험제도 유지  |
| 6   | 보험업은 여러 보험계약 관계자가 있으므로 산.학.연.보험소비자 모두 참여해서 보험업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제대로 규제를 해야 될 것이다.   |
| 7   | 보험업의 전문성을 무시한 통합적, 획일적 규제의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금융업 가운데 은행업의 우월적 위상 때문에 늘 보험업의 전문성과 독자성이 간과되어 왔다.   |
| 8   | 보험업은 특수성과 일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통상 금융업이라고 하면 보험이 포함될 때도 있고 제외되어 “금융 및 보험업”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완화 등 작업을 할 때도 특수성과 일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규제완화나 강화 시 불리한 것은 다 적용하고 유리한 것은 제외토록 하는 등 보험권에 불리한 내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 No. | 제 안 내 용  |
|-----|--|
| 9   | 너무 부실한 운용보고서   |
| 10  | 교육과 상품설명서를 강화하여 복잡한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는 데 힘써야 함  |
| 11  | 보험은 타 금융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맞는 규제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규제는 반드시 관이나 법중심으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규제가 피로가 덜 오고, 장벽도 덜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모습으로는 일반인의 공감을 얻기 힘들고 관 주도의 강제적인 규제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 12  | 전통적인 보험업에 대해서는 별 의견 없으나, 금융투자업 요소가 강한 상품(변액보험 등) 혹은 금융투자상품에 보험사가 자기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
| 13  | 보험회사만 살아남기 위한 제도가 아닌 고객과 판매하는 설계사(판매채널)도 함께 살 수 있도록  |
| 14  | 시장 진출은 원하는 대로 하되, 시장에 대한 규제는 필요  |
| 15  | 보험업은 산업특성 상 별도의 법률로 규제함이 바람직   |
| 16  | 보험업의 특성(공익성, 장기리스크 등)을 고려, 독자적인 법률 통한 보호와 규제 필요할 것.  |
| 17  | 기본적인 상품형태가 보험의 기능이 들어가는 금융상품 or 서비스 등은 보험입법 영역 안에서 규제되어야 함.  |
| 18  | 보험상품은 공익적, 장기적 리스크 등 특성상 독자적인 법률 필요  |
| 19  | 보험업은 특성상 별도의 규율체계를 가져야 하고, 파생상품 중 보험성격은 보험상 법적용 대상이 되어야 함.   |
| 20  | 변액, 연금보험은 파생상품이 아닌 보험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입법 적용 대상.   |
| 21  | 보험업/보험상품은 공익적 성격, Risk 등 특성상 산업을 규율하는 독자적 법률 필요.   |
| 22  | 금융통합이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은 반대  |
| 23  | 자본시장통합업은 일반금융업이 항상 보험업에 비해 우선한다  |
| 24  | 대형금융 기관만 유리  |
| 25  | 자유경쟁체제로가야  |
| 26  | 환경관련상품이 있으면 한다   |